

열린 時代의 關稅率政策: 輸入構造의 變化와 우리나라 關稅率體系의 評價

1997. 12

張 槿 鎬

序 言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앞으로는 補助金政策이 금지 내지는 규제되고 각종 비관세장벽도 점차 철폐될 전망이다. 그러나 WTO체제 하에서는 평균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협약국은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고 3년마다 관세양허의 수정이나 철회도 가능하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도 향후에는 '例外 없는 關稅化'로 이행될 예정이어서 관세정책의 비중은 증대될 전망이다. 관세정책은 調整關稅나 反덤핑關稅 등 彈力關稅制度和 原產地表示規定과 關稅評價制度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소유하고 있어 산업정책으로서의 관세정책은 그 중요성이 강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서 국제무역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輸出中心의, 그리고 選別的 輸入制限政策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內需産業의 競爭力을 향상시키고 市場機能에 의한 資源配分을 이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1983년과 1988년 第1, 2次 關稅率引下豫示制를 단행하여 關稅率을 引下하고 均等關稅率體制를 도입한 바 있다. 이제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변화가 국내자원의 유인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관세율체계와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關稅率政策의 基本方向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關稅率引下豫示制의 시행으로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1983년 당시 약 24%에 달하던 평균 관세율이 1994년 이후 7.9%로 대폭 인하되었고 중간재와 완제품사

이의 加工度別 關稅率 隔差가 크게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동일한 加工段階內에서는 차별없는 관세율이 적용되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均等關稅率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경공업제품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불공정한 반덤핑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彈力關稅制度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탈바꿈하면서 주요 수출품이 선진국의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WTO協定 발효 이후 국가간 각종 무역장벽의 철폐로 수입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이와 함께 수출증대도 가능하다. 이러한 무역질서의 변화에 부응하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국내자원이 성장산업에 투입되고 내수산업은 수입품과의 경쟁을 통하여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언하면 바람직한 산업정책이란 제한된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제의 균살을 제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本 報告書는 產業政策으로서의 關稅率政策의 基本方向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성장과 관련한 관세정책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관세율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공도별 그리고 같은 가공단계 내에서의 관세율 변화와 산업간 관세율 격차를 검토한다. 이후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나라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특히 關稅率引下豫示制를 輸入構造의 變化에 비추어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實效關稅率의 推定을 통하여 資源移動의 誘引體系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을 평가한다.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관세율정책의 역할을 조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 關稅率政策의 運營方向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本院의 張槿鎬 博士의 집필로 완성되었다. 著者는 자료제공을 포함하여 많은 도움을 준 財政經濟院 鄭炳台 課長, 陳良

茲, 鄭在完 事務官 그리고 韓國銀行 關係者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자료수집, 전산처리 및 원고정리에 수고한 金龍大·徐庭珠 研究
員과 卞敬淑·趙明熙 研究助員, 그리고 출판과 직원들께도 고마운 마
음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個人的인 意
見이며 本 研究원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7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金 仲 秀

目 次

I. 序 論	13
II. 關稅 및 關稅率政策의 理論	17
1. 概要	17
2. 關稅의 經濟的 效果	19
3. 關稅率政策의 理論的 根據	25
4. 要約	33
III. 關稅率構造의 改編原則과 運用現況	36
1. 概要	36
2. 關稅率構造 改編原則과 UR協商	37
3. 彈力關稅의 運用現況	48
4. 關稅率構造의 運用現況	59
5. 關稅率構造의 國際比較	82
6. 關稅率引下豫示制의 評價	89
IV. 輸入構造의 變化와 關稅率政策	101
1. 概要	101
2. 輸入依存度: 概念 및 現況	102
3. 輸入依存度の 年度別 變化: 資料分析	112
4. 輸入依存도와 關稅率政策	126
V. 實效關稅率(1994年)과 關稅率政策	142

1. 概要	142
2. 實效關稅率의 概念: 理論的 檢討	144
3. 實效關稅率 推定時의 問題點	150
4. 實效關稅率 推定結果	153
5. 實效關稅率로 본 關稅率政策	164
VI. 要約 및 結論	174
1.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174
2. 結論	182
參考文獻	186

表 目 次

<表 Ⅲ- 1> 關稅率構造 改編原則	39
<表 Ⅲ- 2> 農產物 關稅率의 變化	40
<表 Ⅲ- 3> 우리나라 關稅率構造와 年度別 變化推移 (名目關稅率)	41
<表 Ⅲ- 4> 韓國의 關稅部門 讓許現況	42
<表 Ⅲ- 5> 關稅無稅化 및 關稅調和 讓許內容(Quad 合意品目)	44
<表 Ⅲ- 6> 美國·EC合意 및 APEC合意에 관한 우리나라 參與內容	45
<表 Ⅲ- 7> 主要 關稅無稅化 品目の 輸入比重과 展望	46
<表 Ⅲ- 8> 農產物의 主要 市場接近品目	47
<表 Ⅲ- 9> 調整關稅 運用現況	49
<表 Ⅲ-10> 割當關稅 運用現況	51
<表 Ⅲ-11> 덤핑防止關稅 賦課 및 調査中인 品目	54
<表 Ⅲ-12> 彈力關稅 適用現況	58
<表 Ⅲ-13> 우리나라 平均關稅率의 變化推移	60
<表 Ⅲ-14> 우리나라 關稅率의 變化推移	61
<表 Ⅲ-15> 產業別 單純平均 및 加重平均 關稅率의 變化推移 (1990~1994)	62
<表 Ⅲ-16> 產業別 實行關稅率 平均과 標準偏差의 變化推移 (1990~1994)	72
<表 Ⅲ-17> 產業別 實行關稅率의 單純平均과 標準偏差의 變化推移(1990~1994)	75

<表 III-18> IO25產業 實行關稅率의 單純平均과 標準偏差의 變化推移(1990~1994).....	76
<表 III-19> 主要 交易財產業 關稅率, 還給率, 關稅負擔率의 變化推移(輸入品 基準)	80
<表 III-20> 關稅(負擔)率과 還給率 變化의 平均 및 標準偏差 (1990~1993)	81
<表 III-21> 加工段階別 關稅率構造의 國際比較 (單純名目平均)	83
<表 III-22> 平均 實行關稅率과 還給比率의 國際比較	84
<表 III-23> 主要 產業 名目關稅率의 國際比較	86
<表 III-24> 美國 主要 工產品 平均關稅率과 適用範圍(1989)...	87
<表 III-25> 主要 先進國 工產品 關稅率(1988年 基準).....	88
<表 IV- 1> 產業構造와 貿易特化指數의 變化推移 (1980~1993)	103
<表 IV- 2> 1993年 主要 交易財產業 輸入依存度 및 輸出, 生産 自立度(國內需要 對比).....	108
<表 IV- 3> 國內需要 輸入依存度의 年度別 變化.....	115
<表 IV- 4> 主要 交易財 產業 中間材 輸入依存度의 變化推移	118
<表 IV- 5> 消費財 輸入依存度의 年度別 變化.....	123
<表 IV- 6> 投資財 輸入依存度의 年度別 變化.....	125
<表 IV- 7> 臺灣과 우리나라의 KSIC商品別 輸入依存度 比較	134
<表 IV- 8> 日本의 產業別 輸入依存度 및 輸出, 生産自立度 (1993)	137
<表 IV- 9> 日本의 輸入依存度 變化推移(1990~1993)	138
<表 V- 1> 1994年 IO75部門 實效關稅率: Corden	155
<表 V- 2> IO75 交易財產業의 實效關稅率 分布.....	161

<表 V-3> 1994年 IO75部門 實效關稅率: Balassa	162
<表 V-4> 1次産業・輕工業・重工業의 實效關稅率 分布.....	165
<表 V-5> 實行・實效關稅率과 輸出入構造.....	168
<表 V-6> 1994年 關稅率과 1993年 輸入用途 및 直・間接 輸出	172

圖 目 次

[圖 II-1] 關稅의 經濟的 效果(小國)	20
[圖 II-2] 關稅의 經濟的 效果(大國)	22
[圖 II-3] 補助金의 經濟的 效果	24
[圖 II-4] 動態的 比較優位論에서의 關稅效果	27

附 表 目 次

<附表 1> IO75 交易財產業 加重平均 關稅率 變化推移 (1990~1994)	190
<附表 2> IO75 交易財產業 實行關稅率의 單純平均과 標準偏差의 變化推移	192
<附表 3> IO75 交易財產業 關稅率, 還給率, 實質關稅負擔率의 變化推定	194
<附表 4> 日本의 關稅率構造(1989)	196
<附表 5> IO75 交易財產業 總內需 輸入依存度 推移	198
<附表 6> IO75 交易財產業 中間材 輸入依存度 推移	200
<附表 7> IO75 交易財產業 消費財 輸入依存度 推移	202
<附表 8> IO75 交易財產業 投資財 輸入依存度 推移	204

I. 序 論

지난 1983년과 1988년에 우리나라는 第1, 2次 關稅率引下豫示制를 시행하여 관세율을 인하하고 均等關稅率體制를 도입하는 등 관세율정책에 있어서 대폭적인 改編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종료된 1994년 우리나라 平均關稅率은 1983년 당시 23.7%에서 7.9%로 상당히 인하되었고 產業間 關稅率 隔差도 많이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WTO협정이 발효되어 兩者間 혹은 多者間 관세율협상이 진행되면서 상당수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讓許되었다. 이러한 國內外的 경제여건의 변화는 貿易政策으로서의 관세의 중요성을 약화시켰고 關稅政策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產業政策으로서의 관세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우선 우루과이라운드 關稅協商이 關稅引下 요청품목에 대한 양허형식으로 전개되고 平均關稅率을 제한함에 따라서 讓許國의 재량이 보존되었고 3년마다 양허의 수정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平均關稅率이 UR협상으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產業別 또는 加工度別로 세율을 달리할 경우 특정산업에 대한 보호도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WTO협약이 特定的인 補助金政策을 금지하고 있고 앞으로 WTO협상 결과에 따라 각종 非關稅障壁이 점차 철폐된다면 對產業政策으로서의 관세정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될 여지가 높다.

또한 關稅政策은 調整關稅나 반덤핑관세 등 彈力關稅制度和 原產地表示規定과 關稅評價制度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소유하고 있어 이들 정책수단의 탄력적 운용에 따라 국제무역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UR협상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각종 輸入規制가 예외 없는 關稅化(tariffication without exception)로 이행된다면 農·林業에서 관세정책이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WTO체제의 출범으로 補助金과 각종 非關稅障壁이 폐지 또는 약화되는 등 국제무역에 있어서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WTO체제가 인정하고 있는 관세정책에 대하여 종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 이후 第1, 2次 關稅率引下豫示制를 시행하여 平均關稅率을 인하하고 均等關稅率體制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수입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통하여 內需産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정부주도의 산업보호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이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平均名目關稅率은 7.9%로 인하되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均等關稅率體制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아직 加工度에 따라서 差別的인 관세율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동일한 加工段階에서는 産業間 關稅率 隔差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關稅率의 引下幅이 상당하였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세율체제의 改編은 매우 획기적인 정책선회였다. 따라서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이로 인한 우리나라 관세율구조의 특징을 고찰하고 그 실제 운용현황을 검토함으로써 豫示制의 정책목표가 얼마나 잘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對內外 環境은 관세율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轉機에 도달해 있다는 판단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인 貿易政策과 選別的인 輸入制限政策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세율구조는 輸入財 性格과 國產化 可能性에 따라 加工度別로 差等化되어 있었

고 關稅還給制度도 상당히 크게 활용되어 왔으므로 완제품의 輸入 依存度는 낮고 原資材와 수출산업의 中間材 輸入依存度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점차 중공업 위주의 수출국으로 전환하면서 선진국제품과의 무역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成長段階로 볼 때 당분간 資本集約的인 산업의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관세정책이란 제한된 국내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우리 경제의 첨단산업이 先進諸國 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실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命題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이러한 當爲性이 看過되고 恢復不能의 斜陽産業을 지원함으로써 生産要素가 斜陽産業에 지속적으로 묶여 있도록 하는 被動的인 保護政策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保護政策의 當爲性은 제한된 국가자원이 成長潛在力이 뛰어난 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따라서 성장정책으로서의 관세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추구하고 있는 국내자원의 效率的 配分은 올바른 政策目標의 設定이었다는 판단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本稿에서는 우선 第Ⅱ章에서 關稅率政策의 經濟的 效果를 논의하고 그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한다. 第Ⅲ章에서는 關稅引下豫示制의 改編原則과 그 구체적인 改編內容을 살펴보고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그 실제 운용상황과 관세율 개편원칙과의 괴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彈力關稅制度가 얼마나 기본관세율체계를 毀損하고 있는지와 關稅還給制度로 인하여 산업별 관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정책을 포함한 관세정책의 발전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관세율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增減시켜 수입을 촉진 또는 제한함으로써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정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입구조 변화는 관세율정책의 中間目標라고 할 수 있는데 第Ⅳ章에서는 지난 1980년부터 1993년까지의 우리나라 輸入依存度の變化를 살펴보고 輸入依存도와 關稅率政策의 連繫性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第Ⅴ章에서는 1994年度 우리나라 實效關稅率을 추산함으로써 關稅率引下豫示制의 종료에 따른 실질적 보호의 産業別 隔差를 추정하고자 한다.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을 고려한 실효관세율을 파악해야 국내자원의 이동을 가능할 수 있고 또한 의도하지 않은 逆關稅現象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기의 논의를 종합하여 第Ⅵ章에서 關稅率引下豫示制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다.

II. 關稅 및 關稅率政策의 理論

1. 概要

1948년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발효된 이후 국제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상당히 인하되어 왔다. 특히 1967년 케네디라운드 교섭결과 협상국간의 관세율이 평균 35% 인하됨으로써 선진국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10%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렇듯 관세의 輸入規制機能이 약화되자 선진국들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非關稅障壁(NTB; 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동경라운드 이후 국제협상에서는 非關稅障壁이 주된 논의대상으로 대두되었다. 自由貿易 확대를 위한 관세장벽의 점진적 철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關稅引下豫示制가 실행되었던 1983년 당시 우리나라 平均關稅率이 23.7%였으나 豫示制가 종료된 1994년에는 평균관세율이 7.9%로 대폭 인하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는 무역정책으로서의 관세의 중요성을 약화시켰고 관세정책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수입품에 대한 국내외 平均關稅率이 점차 인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정책으로서의 관세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상존하고 있다. 우선 우루과이라운드(이하 UR) 협상이 품목別 關稅引下가 아닌 관세인하 요청품목에 대한 讓許形式으로 전개됨에 따라서 양허국의 재량이 보존되었고 3년마다 양허의 수정이나 철회가 가능하여 관세율의 產業別 差等化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록 평균관세율이 UR협상으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產業別 또는 加工度別로 稅率을 달리할 경우 特定產業에 대한 보호도

差別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國內資源의 配分이 相對的 保護水準에 따라 변화한다면 이러한 關稅政策의 差別性을 무시할 수 없겠다.

이에 비하여 WTO協約國에서의 특정산업에 대한 補助金支給은 앞으로 금지된다¹⁾. 따라서 特定補助金이 금지되고 비관세장벽이 점차 철폐된다면 對產業政策으로서의 관세정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될 여지가 높다. 그리고 조정관세나 반덤핑관세 등 彈力關稅制度和 原產地表示規定과 關稅評價制度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관세제도상 관세정책의 탄력적 운용에 따라 국제무역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UR협상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각종 수입규제가 예외 없는 관세화로 이행된다면 農·林業에서 관세정책이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²⁾.

이와 같이 WTO체제의 출범으로 補助金과 각종 非關稅障壁이 폐지 또는 약화되는 등 국제무역에 있어서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WTO체제가 인정하고 있는 관세정책에 대하여 종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론과 관련하여 본장에서는 우선 완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논의하고 對產業政策 또는 성장정책으로서의 관세제도의 역할을 논한다.

-
- 1) 開發途上國을 제외한 일반회원국은 輸出補助金과 輸入代替補助金を WTO협약 발효일(1995년)로부터 3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하고(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第28條 第1項) 개도국은 輸出補助金의 경우 8년, 수입대체보조금은 5년내에 폐지하여야 한다(동 협정 第27條 第2, 3項).
 - 2) 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2004년까지 關稅化의 猶豫를 확보하고 그 대신 당해연도에 국내소비의 4%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쇠고기는 수입제한기간을 2000년까지 연장하고 관세율은 20%에서 43.6%로 인상하는 등 輸入自由化와 關稅化(關稅率引上)를 병행하기로 약속하였다.

2. 關稅의 經濟的 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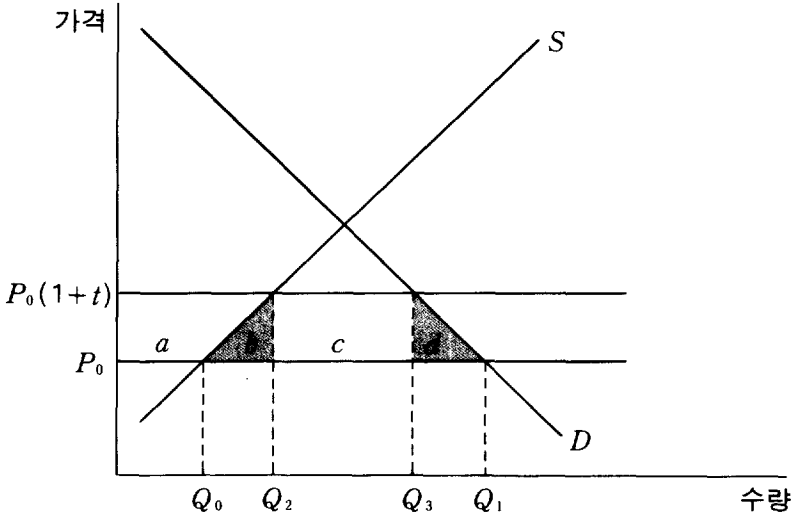
가. 一般理論的 考察

관세는 수입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나 徵收金(levy)을 의미한다. 관세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從價稅(ad valorem duties)와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從量稅(specific duties)가 있는데 종가세는 상품가격에 비례하므로 과세부담이 공평하여 많은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從價稅에서 FOB(free on board)가격을 관세가격으로 할 경우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가격에 비하여 그 부담이 작는데 미국이 예외적으로 FOB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있다. 完全競爭下에 관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部分均衡分析(partial equilibrium analysis)으로 살펴보면 [圖 II-1]과 같다. 수입국이 小國이라는 가정하에 수입재의 國際價格이 P_0 라면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의 總需要는 Q_1 에서 결정된다. 해당 국가의 수입규모가 대단하지 않다면 국제가격이 P_0 에서 유지되면서 공급이 해외로부터 무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내생산은 Q_0 에서 그치고 수입이 $Q_1 - Q_0$ 에 달하게 된다. 이제 單位當 關稅率 t 가 수입품에 적용된다면 수입재의 國內價格은 $P_0(1+t)$ 로 상승하여 총수요는 Q_3 로 감소하는 반면 국내생산은 Q_2 로 증가하고 수입은 $Q_3 - Q_2$ 로 감소한다.

관세로 인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효과는 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국내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해당제품의 국내소비를 감소시키고(消費效果) 수입경쟁재의 국내생산을 촉진하는 데 있다(保護效果). 따라서 관세는 소비자의 희생하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國際收支效果). 즉, 관세부과로 消費者剩餘는 $a + b + c + d$ 만큼 감소하는데 여기서 a 는 生産者剩餘로, 그리고 c 는 關稅收入으로 환원된다(財政效果)³⁾.

3) 消費者剩餘는 소비자가 제품구매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가격(수요곡선

[圖 Ⅱ-1] 關稅의 經濟的 效果(小國)



그러나 국내생산이 증가하여 수입을 대체하는 부분, $Q_2 - Q_0$ 는 수입비용 P_0 를 증가하는 생산비용을 유발하므로 이는 사회적 死重損失(deadweight loss)이며 위의 그림에서 b 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가격의 상승으로 소비가 감소한 부분에서도 소비자잉여가 실제 수입비용보다 크므로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純損失이며 d 가 이에 해당한다(厚生效果).

이 밖에도 관세부과로 소득이 소비자로부터 생산요소의 소유자와 정부로 이전하고 관세가 부과된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생산요소의 相對價格은 감소하는 所得再分配 效果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社會的 厚生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b+d$ 만큼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純損失의 규모는 물론 관세율 크기와 국내공급 및 수요곡선의 탄력성에 의하여

D)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그리고 生産者剩餘는 시장가격과 생산비용(한계비용곡선 S)의 차액을 의미한다.

결정되는데 고정된 관세율하에서는 이들 곡선이 非彈力的일수록 후생감소의 폭이 작다. 그러나 이 경우 관세부과가 애초에 의도한 정책목표, 즉 국내생산의 증가나 소비의 감소도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다⁴⁾.

지금까지는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였는데 이는 물론 교과서적인 일반이론이다. 만약 관세로 인하여 關稅賦課國의 交易條件(terms of trade)이 향상된다면 당해국의 후생은 증대한다. 最適關稅論(optimal tariff theory)에 의하면 특정제품을 대 규모로 수입하는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제품의 國內外 總需要는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제가격이 인하된다. 따라서 관세부담의 일부가 해외로 이전되고 轉嫁된 재정수입이 관세로 인한 厚生損失을 능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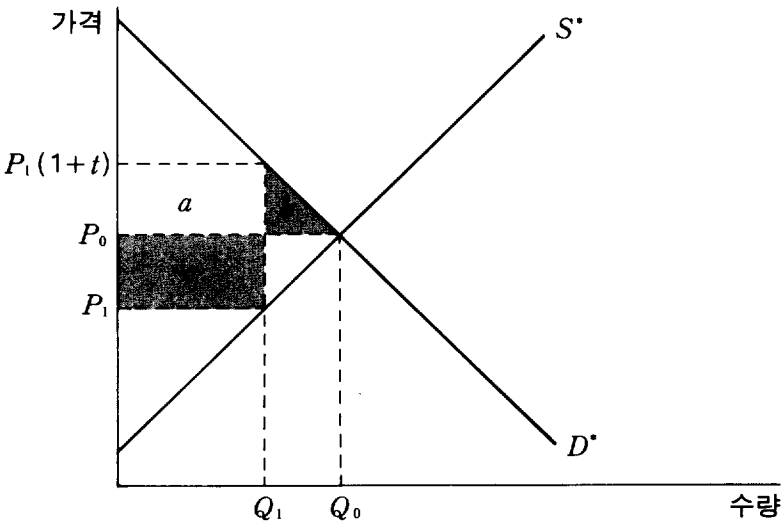
[圖 II-2]는 관세로 인하여 수입품의 국제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를 수입수요곡선(D^*)과 국내생산을 제외한 해외공급곡선(S^*)으로 설명한 그림이다. 만약 관세부과국이 小國이라면 해외로부터의 공급곡선 S^* 는 국제가격 P_0 에서 평행선을 그릴 것이다. 그러나 관세부과국이 세계수요의 상당량을 수입한다면 공급곡선은 그림에서처럼 右上向하게 되어 輸入國의 수요가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만약 t 의 관세율이 부과된다면 輸入需要가 Q_1 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국제가격은 P_0 에서 P 으로 하락한다. 그러므로 관세를 포함한 국내가격은 P_0 에서 $P(1+t)$ 까지만 상승하여 그 인상폭이 單位當 관세액보다 작게 된다.

[圖 II-2]에서 보듯이 국내 消費者의 純損失은 $a+b$ 와 같으므로 관세수입 $a+c$ 와 비교하면 관세수입 a 는 후생손실 a 와 서로 상쇄된

4) 最適租稅論(optimal taxation theory)에서는 후생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책목표가 산업보호에 있을 경우도 그러하다(Panagariya, 1990).

다. 따라서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해외생산자가 부담하는 관세수입 c 가 b 보다 크다면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의 복지는 증대될 수 있다. 부과된 관세율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純厚生損失 b 가 財政移轉額 c 에 비하여 무시할 정도가 되므로 低率의 관세는 항상 국가의 후생을 증진한다. 만약 수출국으로부터의 보복을 피할 수 있다면 大國의 입장에서는 관세가 항상 바람직하다. EC와 같은 關稅同盟은 이러한 最適關稅論에 입각하여 동맹국가들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交易條件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圖 II-2] 關稅의 經濟的 效果(大國)



나. 關稅政策과 補助金

上記의 논의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가격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관세부과국의 후생을 악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의 수입품에 부

과되고 있다. 관세로 인한 資源配分의 歪曲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관세정책을 유지하는 까닭은 우선 산업정책으로서의 관세정책이 有效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⁵⁾. 실제로 우리나라도 관세정책이 産業保護와 輸入抑制機能에 초점이 맞추어져 관세정책이 운영되어 왔다. 즉, 관세정책의 정당성이란 현재 比較優位가 없는 産業일지라도 그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幼稚産業(infant industry)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차 比較優位를 성취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정책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保護主義的 산업정책에 기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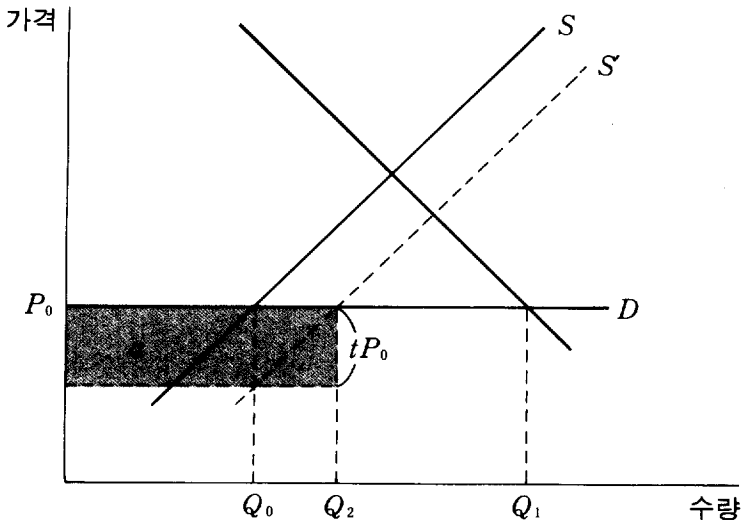
그러나 산업지원을 목표로 수행되는 관세정책은 補助金에 비하여 劣等한 정책수단이다. [圖 II-3]에서 보듯이 수입품 單位當 관세 tP_0 와 같은 비율의 보조금을 국산품 생산자에게 제공한다면 국내업체의 실제 생산비용은 tP_0 만큼 감소하여 공급곡선도 S에서 S'로 하향 이동한다. 따라서 生産支援效果는 관세와 동일하나 수입재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조금이 관세보다 우월하다⁶⁾.

그런데도 보조금이 실제 국가정책에서 관세를 代替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관세를 부과하면 租稅收入이 발생하는 반면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財政資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圖 II-3]의 a). 물론 관세의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가 a만큼의 비용을 국내가격 상승으로 지불한다. 하지만 이러한 費用移轉은 間接稅로 나타나는 데 비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려면 그 비용을 따로 조달하는 데 따른 行政 및 政治費用을 유발하게 된다. 둘째, 관세부과의 목적이 국내 생산의 증대보다는 수입을 제한하는 데 있을 수 있다. 특히 貿易收

5) 물론 실제로는 관세부과의 정치적 로비가 산업보호보다 더 중요한 동기일 수 있다(Krueger, 1974).

6) 보조금의 경우에도 국내생산 증대로 야기되는 資源配分의 왜곡은 관세 부과시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圖 II-3] 補助金の 經濟的 效果



支改善이 중요 정책목표라면 소비위축에 따른 후생손실에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이 선호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관세정책이 보조금보다는 행정적으로 훨씬彈力的일 수 있는데 관세정책에 의한 산업보호는 WTO협정이 발효되면서 그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WTO의 '보조금 및 相計措置에 關한 協定'에 의하면 輸出成果나 輸入代替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은 금지되고(第3, 4條) 農·林業을 제외한 특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他會員國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면 相計措置가 가능하다(第5條 내지 第7條). 그리고 特定성이 없거나 특정성이 있더라도 研究 또는 地域開發과 環境保存 支援金만 허용됨으로써(第8條) 앞으로 보조금이 특정산업을 위하여 선별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UR협상에서 關稅障壁은 WTO협정 발효 이후 5년까지 각국의 輸入額 加重平均關稅率을 UR협상 개시시점인 1986년 9월 수

준에서 3분의 1 이상 인하하도록 하고 讓許品目은 讓許稅率로 하는 등 품목별 관세율 철폐 또는 인하에 중점이 두어졌다. 關稅率 引下 및 同一化(關稅調和)는 각국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국가별 多者·兩者間協商에서 품목별로 협상이 이루어져 UR에서는 그 결과를 自國의 最終 關稅讓許表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1986년 당시 17.9%였던 수입가중 평균관세율을 8.2%까지 引下시킬 것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UR에서는 관세정책에 관한 한 협상이 제품별 또는 국가별로 진행되고 다만 평균관세율만 인하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협상국들은 자국의 관세율구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각국은 자국의 산업구조와 경제발전단계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업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關稅政策의 對產業政策으로서의 상대적 유효성은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다.

3. 關稅率政策의 理論的 根據

가. 動態的 比較優位論

上記의 대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소비자 잉여감소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社會費用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관세정책이 국가정책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세가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관세정책의 正當性에 대하여는 幼稚產業保護로 대표되는 保護貿易主義가 있다. 幼稚產業保護論은 과거 국제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이론적 위치가 흔들리다가 근래에는 動態的 比較優位論(dynamic comparative advantage)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Succar, 1987). 規模의 經濟(economy of scale) 또는 外部經濟效果(external economies)에 기초한 동태적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보호정책은 장기적으로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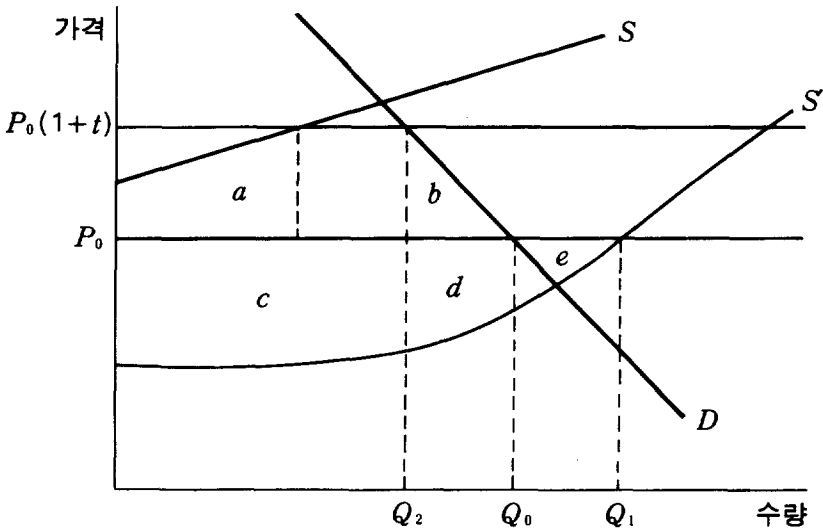
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하에서는 대부분의 세계시장을 이미 ‘확립’된 선진국기업이 점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은 생산기술의 우위로 또는 規模의 經濟를 先占함으로써 개도국 기업보다 값싸게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비록 개도국에서의 장기적 생산비용이 해외가격보다 저렴하더라도 현재의 생산비용은 국제가격보다 높으므로 당해산업이 영영 比較優位産業으로 전환될 수 없다(Krugman, 1994). 이 밖에도 보호론자들은 특정산업의 경우 성장과정에서 기술개발과 부품산업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이러한 外部經濟는 당해 산업의 私의 費用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기능이므로 정부가 이러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金珍洙·安鍾錫, 1994).

보조금이나 관세가 동태적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의 국내생산가능케 함으로써 어떻게 사회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지를 金珍洙·安鍾錫의 그림([圖 II-4])으로 재인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⁷⁾. [圖 II-4]에서 S와 D는 각각 단기적 국내공급과 수요곡선을 나타낸다. 만약 해외가격이 P_0 라면 자유무역하에서는 현재의 생산비용이 P_0 를 상회하므로 국내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제가격에서 자유무역이 이행된다면 이때 발생하는 수요 Q_0 는 그 전량이 수입에 의하여 충족된다.

하지만 단위당 관세 tP_0 로 인하여 국내생산이 시작되고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통한 경험축적과 기술개발로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면 長期的으로는 공급곡선이 S' 으로 이동하여 Q_1 에서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렇듯 관세부과는 輸入代替産業으로 시작한 국내산업이 궁극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Q_1 - Q_0$ 에 해당하는 제품을 해외로 공급하는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게 한다(무역수지개선효과). 따라서 생산비용 감소에 따른 생산자잉여의 규모(c+d+e)가 割引率

7) 産業內(企業間) 外部效果가 존재하는 경우도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묘사될 수 있다.

[圖 II-4] 動態的 比較優位論에서의 關稅效果



資料 : 金珍洙·安鍾錫,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구조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4. p. 124.

을 감안한 현재비용, 즉 관세부과로 인한 단기적 사회비용(a+b)보다 크다면 이러한 관세정책은 바람직한 국가정책일 수 있다⁸⁾.

나. 動態的 比較優位論의 問題點

그런데 潛在的으로 對外競爭力이 있는 幼稚産業일지라도 과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즉, 비용감소가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리하여 이때 발생하는 생산자 이윤이 단기적 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당해 산업에 진입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金珍洙·安鍾錫

8) 만약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출이 $Q_0 - Q_2$ 만큼 증가하겠지만 이는 국내소비 감소를 유발하여 소비자잉여 b에 상당한 사회적 후생손실을 동반한다. 또한 a와 과거 관세징수액에 상당한 소득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이전하게 된다(所得再分配效果).

(1994)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호정책의 정당성은 市場의 不完全性 (market imperfection)이나 非效率性이 전체되어야 한다. 일례로 자본시장이 잘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미래의 이윤을 담보로 기업이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성장을 도모하자면 해당산업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이윤을 보장하거나 혹은 金融支援이나 補助金 등 기타방법으로 해당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불완전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 금융시장의 왜곡을 직접 해소하는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제적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또 다른 왜곡의 도입은 항상 次善의 政策(the second best policy)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논의된 보호의 정당성은 금융시장의 왜곡을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제도적 요인이 있거나 관세정책에 의한 보호비용이 저렴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즉, 관세를 통한 정부지원이 비록 단기적인 이윤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가 아니더라도 信號效果(signaling effect)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지원 자체가 보호산업의 경쟁력을 정부가 '보증'하거나 또는 당해 산업을 정부가 꾸준히 육성하리라는 신호로 해석되어 관세부과 이후 민간투자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不完全한 시장의 또 다른 예는 金珍洙·安鍾錫(1994)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外部經濟의 存在이다. 중화학공업이나 첨단산업의 육성시 자주 인용되는 이 논리는 특정산업이 발달하면 관련기술이나 생산라인에서의 배움이 부품산업과 같은 관련산업에도 자연스럽게 파급되어 이들 산업도 동시에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특정산업 자체내에서도 배움의 효과(learning by doing)에 따른 기업간의 波及效果(spillover effect)로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런데 상기의 혜택은 이러한 효용을 유발하는 기업(산업)이 누리는 것이 아니다. 환언하면 기업입장에서 본 限界費用曲線은 [圖 II-4]에서 S이다. 그러므로 企業自律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결정된다면 社會的 限

界費用曲線인 S' 은 실현되지 않아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국가가 관세나 보조금 등을 동원하여 市場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外部經濟를 교정하기 위하여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맹점은 있다. 外部效果에 관한 財產權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재산권에 대한 去來費用(transaction cost)이 저렴하다면 시장에서도 효율적인 자원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⁹⁾. 위의 예에서 企業(產業)間의 外部效果에 대한 所有權이 어느 한쪽에 귀속되어 있으면 受惠者와 施惠者間의 합의나 합병을 통하여 外部經濟의 內在化(internalization of external economy)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關聯者들간의 합의나 합병이 여의치 않거나¹⁰⁾ 去來費用이 상당할 때만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技術的 또는 制度的 要因으로 재산권을 완전하게 정의할 수 없거나 受惠規模에 대한 非對稱的 情報(asymmetric information)로 합의나 합병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人的 資本(human capital)의 蓄積, 특히 직장에서의 배움(learning on the job)에서 발생하는 외부경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만약 고용계약을 통하여 波及效果를 內在化할 수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애초에 해당산업에 투자할 동기가 생기기 힘들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Succar(1987)나 金珍洙·安鍾錫(1994)이 제시하고 있는 보호정책의 정당성은 첫째, 배움의 효과 등 動態的인 經濟가 존재하여 장기적인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둘째, 이러한 경제를 유발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그 혜택을 직접 향유할 수 없는 外部效果가 발생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外部經濟를 內在化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립되어 있다면 정부개

9) Coase Theorm(1960) 참조.

10) 이 밖에도 합병 내지 합의로 인한 談合을 우려하여 합병에 의한 문제 해결을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허용하면 獨寡占에 따른 폐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관세는 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

입은 불필요하며 상기의 외부경제를 야기하는 시장의 不完全性이나 非效率性은 이를 직접 시정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술적 또는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이러한 비효율성을 직접 제거할 수 없거나 보조금 혹은 관세가 信號效果를 발휘하는 등 矯正費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보호정책도 정당화될 수 있다. 각종 경제 및 사회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저개발국가의 경우 특히 시장체제가 불완전할 수 있는데 이때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격의 보호정책이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¹¹⁾.

다. 經濟成長과 關稅政策

保護政策의 한시적 필요성은 성장론에서 戰略的 產業政策(strategic industrial policy)의 형태로 논의된다. 이 주장을 루카스(Lucas)의 발전론에 비추어 설명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노동인력을 해당 국가내에서 가장 첨단적인 산업에 집중투입하여 이러한 활동에서 얻어지는 빠른 배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더욱 새로운 제품생산에 파급될 때 축적되는 人的資本을 통하여 가능하다’(Lucas, 1994, p. 267). 즉, ‘어떠한 동기에 의하여(somehow, p. 269)’ 자국내 첨단산업으로 자원이 집중되면 직장에서의 배움을 통한 신기술 습득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생산성이 급증한다. 그런데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려면 또 다른 첨단산업이 끊임없이 국내에 소개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과거 새로운 상품을 생산할 때 축적된 인적자본이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성격의 성장은 國內產業의 特化(specialization)를 가져오고 따라서 국내생산과 소비는 큰 간격을 갖게 되어 대규모의 무역이 불가피해진다.

11) 실제로는 보호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斜陽產業이 成長產業에 비하여 정부개입을 더 성공적으로 유도한다. 이는 無賃乘車(free rider)의 문제로서 본고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Grossman and Helpman, 1996).

루카스는 무역규모가 큰 나라가 높은 성장률을 누려 왔다는 사실에서 지속적인 성장모형에서의 무역증대와 산업특화 그리고 이에 따른 인적자본의 축적과 파급효과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한국과 필리핀이 1960년대에 비슷한 소득수준을 유지하다가 한국이 왜 최근 빠른 성장을 이룩했는지를 위의 이론으로 설명하면서 輸入代替政策을 도입한 필리핀에 비하여 自由貿易을 강조한 한국이 인적자본의 축적과 산업특화, 이에 따른 필연적인 무역확대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단언한다.

그런데 루카스식의 세계에서 자유무역을 용인한다면 생산요소가 자동적으로 첨단산업에 집중투입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의 인위적 개입이 필요한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루카스는 단지 '어떠한 이유로(somehow)'라고만 이야기할 뿐 전략적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물론 루카스가 국제무역에 기초한 技術流入과 新技術開發 등의 인적자본 축적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輸入代替의 정책은 배제하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자유무역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국내자원이 첨단산업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른 특화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물론 선진국으로부터의 中間材 輸入과 이들 제품에 體化(embodied)되어 있는 기술습득을 통하여 저개발국가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Lee 1995, Lane 1996). 그리고 신기술 수입이나 모방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이 일정단계까지 필요불가결한 성장모형인 것도 분명하다. Lee(1995)에 의하면 國內投資에서 輸入資本財가 차지하는 比重이 클수록 성장률도 높고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이러한 相關關係가 강하다. 따라서 그는 자본재 수입을 가로막는 관세 등의 무역장벽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한다고 단언한다¹²⁾. De Long and

12) OECD 국가를 제외한 68개국의 1960~1985년 平均成長率을 분석한 Lee (1995)에 의하면 다른 요인이 일정할 경우 국내투자액에서 機械類 수

Summers(1991)도 構造物에 비하여 기계와 설비에 대한 투자야말로 경제성장의 根幹임을 강조하면서 자유무역은 저렴한 가격의 해외투자재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논한다¹³⁾.

그러나 전략적 산업정책론자들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요소와 제품 시장이 비효율적이므로 개도국 기업이 선진국 기업과 경쟁할 때 필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은 수입기술의 단순한 사용이 아닌 技術과 産業構造의 深化, 그리고 효율적 社會基盤體制의 운용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개도국이 전면적으로 자유무역체제를 도입하면 첨단산업으로의 特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자원이 현재 비교우위가 있으나 성장잠재력은 없는 비첨단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산업정책론자들은 논한다.

특히 內生的 發展論(endogenous growth theory)에 따르면 中間材 生産에서의 기술진보야말로 성장의 견인차이다. 그런데 자유무역하에서는 저개발국가가 중간재를 비교적 덜 사용하는 산업으로 특화하게 되고 成長의 陷穽(development trap)에 빠져들어 영구히 저성장을 감수하여야 한다(Grossman and Helpmann, 1991; Young, 1991; Ciccone and Matsuyama, 1996).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두꺼운 保護障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첨단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국내제도를 개선하는 비용이 고비용이거나 관세정책 등이 信號效果를 유발하는 기능을 발휘하므로 보호정책이 過渡期的 政策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후진국뿐만 아니라 일정한 성장단계에 도달한 국가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동반하지 않고 선진국 수준의 경제성장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Lee(1995)에서도 동일한

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0.1만큼 증가하면 성장률은 0.3~0.7% 증가한다.
13) Osang and Pereira(1996)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도 대개의 관세는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복지를 감소시키는데 이는 첨단산업이 유발할 수 있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분석을 OECD국가로 한정할 경우 수입자본재가 많을수록 이들 국가의 성장률은 統計的으로 有意하게 떨어진다. 그러므로 성장단계에 따라 자본재 수입이 경제성장과 負의 相關關係에 있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수입개방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거나 아닐 수도 있는데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과거 남미나 아시아諸國의 경험으로 볼 때 무조건적인 輸入代替政策은 성장을 감퇴시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選別的 保護政策이 갖는 정책의 유효성으로서 이에 관한 논의는 특히 성장을 주도할 산업이 선진국산업과 경쟁단계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세 등의 보호정책은 市場의 不完全性과 外部經濟가 동시에 존재할 때 이를 市場制度의 改善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보호정책을 사용할 때보다 社會的 費用 側面에서 高費用일 경우에만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장체제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정책이 결국 市場의 失敗를 복구하는 다양한 정책수단 중 한가지 수단이라는 시각에서 관세정책을 해석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관세정책이 여타 정책에 비하여 資源配分의 歪曲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費用과 實效性 側面에서 最適의 政策을 選擇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 要約

WTO체제 출범 이후 補助金과 非關稅障壁의 機能이 약화되면서 산업정책으로서의 관세정책은 관세인하에 대한 讓許形式으로 진행된 관세협상으로 인하여 그 相對的 重要性이 증대되고 있다. 關稅同盟을 통하여 회원국가들이 일정 수입제품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交易條件의 向上을 꾀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을 줄이고 국내생산을 촉진하는 대신 資源配分의 歪曲을 야기하여

國民厚生을 감퇴시킨다.

그러나 관세는 모든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다. 그 까닭은 우선 저개발국가에서는 관세가 財政收入의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産業保護의 명목이나 또는 地代追求를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관세가 유발되기도 한다. 사실 관세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간편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며 관세를 이용하면 특정산업에 대한 選別的인 惠澤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듯 관세정책은 특정산업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이 가능한 정책수단으로서 UR에서도 평균관세율의 인하 이외에는 회원국간의 통일된 관세율 조정을 원칙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였고 多者間 또는 兩者間 關稅讓許로서 관세율 인하가 진행되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일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調整關稅나 반덤핑관세를 제외한 관세정책의 정당성은 動態的 比較優位論에 입각한 산업보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저개발국의 경우 市場의 不完全性으로 인하여 外部經濟를 촉발하는 成長主導産業이 국내에 확립되지 못하면 이때의 社會的 厚生費用은 관세부과로 인한 資源配分の 歪曲費用을 능가할 수 있다. 즉, 市場과 制度의 非效率性으로 外部效果를 內在化할 수 있는 財產權 確立 등의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한 개도국에서는 관세를 포함한 보호정책이 잠재적인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보호정책이 信號效果를 동반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상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關稅障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非效率的인 시장체제를 개선함으로써 성장산업을 스스로 발전하도록 하는 경제정책이 고비용정책이거나 또는 제도적 요인으로 당분간 실현가능한 정책이 아니므로 보호정책이 과도기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보호정책은 저렴하고 품질 좋은 수입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資源利用의 效率性을 저해하여

성장을 감퇴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다만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오른 국가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國內 尖端産業을 육성하는 정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올
 바른 정책방향은 保護政策이 아닌 制度的 效率性을 보완하는 政策
 일 수도 있다. 이러한 뜻에서 關稅政策도 市場失敗를 개선하는 다양
 한 정책수단 중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보호정책은 여타
 市場制度的 不完全性을 改善하는 정책에 비하여 資源配分の 歪曲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특히 관세정책은 그 특성상
 소수의 이익집단에 대한 부당한 혜택을 공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제주체가 생산적인 경제활동보다는 비생산적인 정치적 로비에 몰
 두하는 동기를 부여할 여지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
 다(張槿鎬, 1997).

Ⅲ. 關稅率構造의 改編原則과 運用現況

1. 概要

第Ⅱ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체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外部效果를 內在化할 수 없는 開發國에서는 관세를 포함한 보호정책이 잠재적인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 보호정책이 信號效果를 동반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세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관세는 결국 過渡期的인 政策手段이며 어느 정도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된 成長國家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보호정책보다는 市場의 效率性을 증진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관세가 산업보호의 명목하에 後進國에서는 財政收入의 源泉으로, 先進國에서는 地代追求를 위한 政治的 動機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사실 특정산업에 대한 선별적인 혜택을 공여하려면 관세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간편한 정책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이 관세정책은 제도의 비효율성이 존재할 때 성장산업 보호를 위한 次善의 政策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관세가 남용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정책수단으로서 관세가 갖는 選別性和 便宜性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3년 당시 關稅引下豫示制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는 傾斜關稅率體制(tariff escalation system)를 중심으로 한 관세율정책이 시행되어 관세가 산업보호와 財政確保에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1983년 이후에는 關稅引下豫示制의 실시와 함께 관세정책의 對産業 中立性이 강조되고 UR에 따른 多者間協商으로 관세정책도 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 한편 WTO체제의 출범으로 특정보조금이 금지되는 반면 관세협상은 양허형식으로 진행되어 관세정책이 通商 내지는 산업정책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本章에서는 이러한 對內外的 상황변화에 비교적 적절히 부응해 왔던 우리나라 관세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關稅引下豫示制의 改編原則을 제시하고 이 밖에도 UR협상이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이후 關稅率引下豫示制와 彈力關稅制度의 運用으로 인하여 실제 관세율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第2次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실시중이던 1990~1994년 사이의 관세청자료를 이용하여 관세율구조와 산업별 關稅率 隔差의 變化 등을 검토함으로써 均等關稅率體制의 운용현황을 평가하고 關稅率引下豫示制의 기본정신과 실제운영과의 괴리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한다. 그후에 彈力關稅와 關稅還給을 감안한 産業別 關稅負擔率을 추정하고 第I章에서 논의된 관세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국제비교를 연계하여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關稅率構造 改編原則과 UR協商

가. 關稅率引下豫示制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과 1988년 두차례에 걸친 第1, 2次 關稅率引下豫示制(1984~1988년, 1989~1994년)를 통하여 평균관세율을 인하하고 산업별로는 均等關稅率體制(uniform tariff system)를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관세율정책의 개편 배경에는 우선 과거 우리 정부가 傾斜關稅率體制를 유지함으로써 組立加工型 산업구조의 발달을 촉진하고 정부주도의 산업보호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야기되

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 스스로도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내외적 공정경쟁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성장산업의 自律的 發展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관세율정책의 개편에 있어서는 수입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통하여 內需産業의 競爭力을 향상시키고 政府主導의 保護政策에서 脫皮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이룩함으로써 成長産業으로의 資源流入을 촉진하는 데 개편방향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제품별 개편내용은 <表 III-1>에 나타나 있듯이 第1次 關稅率 引下豫示制가 종료된 1988년까지는 高關稅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中心稅率을 20%로 하되 豫示制를 도입하여 구조개편에 따른 적용기간을 확보하고 差等關稅率體系도 점차 축소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第2次 關稅率引下豫示制에서도 산업간·품목간 관세율 격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기본관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中心關稅率을 1994년까지 8%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산화가 곤란한 非競爭 一次加工品은 관세율 5%를 적용하고 非競爭 輸入原材料는 1%, 競爭 輸入原材料는 3%의 관세율을 부과하도록 하였다¹⁾. 추후에 논의되지만 이러한 관세율 개편원칙의 도입으로 중간재보다는 완제품의 관세율이 대폭 하락하여 중간재와 완제품 사이의 관세율 격차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傾斜關稅率體系가 크게 緩和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밖에도 두차례에 걸친 우리나라의 獨自的인 關稅引下豫示制로 平均 名目關稅率은 1994년 이후 7.9%로 하락하게 되어 UR에서 양허한 輸入加重 平均關稅率 8.2%(農產物 除外)를 밑돌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수입정책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가 향상되었

1) 中心關稅率을 8%로 정한 이유는 1988년 OECD 국가의 평균관세율과 1993년 국내외 가격 차이가 약 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表 III-1> 關稅率構造 改編原則

(單位: %)

		1988	1989	1990/91 ¹⁾	1992	1993	1994 以後
원료	비경쟁원료	5	1~2	1~2	1~2	1~2	1~2
	경쟁원료	10	5	5	5	4	3
중간재 및 완제품	중심세율	20	15	13	11	9	8
	경쟁력 확립 및 국산화 곤란 품목	10~20	10	10	10	9	8
	(1차 가공품)	(10~20)	(10)	(10)	(9)	(7)	(5)
	사치성 소비재	30~50	20	16	13	10	8
	자동차 ²⁾	50	25	20	17	15	10 (1995. 협8)

註: 1) 수입품에 대한 방위세(2.5%) 폐지에 따른 사실상 세부담의 경감을 고려하여 관세율인하예시제를 1991년부터 1년씩 순연함.

2) 자동차의 관세율은 1995년 협정관세로 8%로 인하됨.

資料: 金珍洙·安鍾錫, 『經濟與件의 變化와 關稅率構造의 改編方案』, 韓國租稅研究院, 1994.

으며 관세율정책에 관한 한 선진국 수준의 관세율체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工產品 品目 2,273개의 64.8%에 해당하는 품목이 中間材, 完製品, 消費財의 구분없이 中心關稅率의 적용을 받아 그 어느 선진국보다도 우리나라가 均等關稅率體制로의 接近度가 높게 되었다. 가공단계로 볼 때 中間材에 속하나 가공정도가 단순하고 다른 제품의 基礎投入財로 사용되는 一次加工品은 시멘트, 동괴, 에틸렌, 금속류, 암모니아 등 240개 품목(전체 공산품의 10.6%)이 있으며 奢侈性消費財에는 피혁, 의류와 가전제품 등 145개 품목(공산품의 6.4%)이 8%보다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농산물의 경우, 농업보호를 통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확보하고 국내자급도를 제고한다는 정책목표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관세율개편 기본원칙과 조화를 이루어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결국 <表 III-2>에서 보듯이 농산물은 별도로 관세율을 조정

하여 高附加價值品目인 과일·채소류는 50%, 육류는 30~50%의 평균관세율을 유지하고 곡물은 5%, 투입재인 감자, 종자, 種鷄는 無稅化함으로써 農家所得作物을 보호하되 가공식품은 一般消費財의 中心稅率인 8%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表 III-2> 農產物 關稅率의 變化

(單位: %)

	1988	1989	1990/91	1992	1993	1994 以後
곡물	10	5	5	5	5	5
육류	30~50	30~50	30~50	30~50	30~50	30~50
과실, 채소류	50	50	50	50	50	50
농산물가공식품	20	15	13	11	9	8
맥주	100	50	50	40	40	30

資料: 재정경제원 보도자료, 1996.

그 결과 농가소득작물이나 이의 代替品 또는 이들을 원료로 하는 加工品 등 전체 농산품 436개 중 158개 품목(36.2%)은 1988년 당시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이 밖에 基礎投入財, 국산화가 불가능한 농업원료, 저관세율 수입원료로 만든 加工食品과 농가소득작물을 제외한 一般農產物 278개 품목(63.8%)은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다.

한편 유사물품간에 稅率隔差가 존재하는 品目, 逆關稅品目 그리고 慢性的인 暫定 또는 割當關稅品目에 대한 관세율을 현실화한 결과, 우리나라 平均 名目關稅率은 1982년 당시 23.7%에서 1988년 18.1%, 第2次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시작된 1989년에는 12.7%로 대폭 하락하였고 豫示制가 종료된 1994년에는 7.9%로 인하되었다. 공산품 평균 명목관세율도 이 기간에 22.6%에서 6.2%로 대폭 하락하였는데 다만 농산물은 위에서 언급한 농가보호라는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아직 16.6%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表 III-3> 참조).

加工度別 名目關稅率도 대폭 인하되어 原資材의 경우 1994년 관

세율이 2.8%에 불과하고 특히 中間材(7.1%)와 最終財(7.0%)의 관세율 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예시제를 전후한 1982년부터 1994년까지 최종재와 원자재의 관세율 격차는 17.6%에서 4.3%로 줄고 최종재와 중간재의 격차는 4.3%에서 0.1%로 줄어들어 관세율 인하와 함께 실효관세율도 하락하게 되었다. 또한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均等關稅率體制의 移行으로 산업간 관세율도 상당한 中立性を 維持하게 되었다(<表 III-15> 참조).

<表 III-3> 우리나라 關稅率構造와 年度別 變化推移 (名目關稅率)
(單位: %)

	1982	1984	1988	1989	1990/91	1992	1993	1994 以後
평균관세율	23.7	21.9	18.1	12.7	11.4	10.1	8.9	7.9
농산물	31.4	29.6	25.2	20.6	19.9	18.5	17.8	16.6
공산품	22.6	20.6	16.9	11.2	9.7	8.4	7.1	6.2
원자재	15.5	11.9	10.6	3.9	3.9	3.3	3.2	2.8
중간재	25.4	21.5	18.7	11.7	10.7	9.3	7.8	7.0
최종재	33.1	26.4	24.7	13.3	11.2	9.4	7.9	7.1

資料: 재정경제원 보도자료, 1996.

나. UR協商에 따른 關稅率 調整

WTO체제가 일관되게 指向하고 있는 기본원칙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差別 없는 貿易政策(trade without discrimination)으로서 GATT(1994) 第1條에 규정된 最惠國待遇原則(most-favored-nation treatment)에 따라 회원국은 여타 회원국에 대하여 제 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도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둘째, GATT 第3條가 규정하고 있는 內國民待遇原則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내국세나 국내규칙이 국산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待遇보다 불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²⁾.

이러한 기본원칙 아래 UR에서 관세인하에 대한 논의는 工產品과 水產物 그리고 農產物에 관한 협상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공산품의 경우 1986年 당시 輸入加重 平均關稅率의 3분의 1 이상을 인하하되 그 방식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양허범위를 대폭 확대하도록 합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허계획을 다자간에 평가함과 동시에 관세율 인하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UR협상에서는 평균 관세율을 인하하는 데만 합의하고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양허된 관세를 제외하고는 관세율정책에 관한 한 각국의 裁量權을 인정해 주도록 하였다.

<表 III-4> 韓國의 關稅部門 讓許現況

(單位: 개, HS 10單位)

	讓許範圍			關稅率(1999.1)	
	總品目數	讓許品目數	讓許範圍	平均關稅率	引下率
공산품	8,705	7,990	91.8%	8.2%	-54.2%
수산물	338	144	42.6%	13.6%	-31.6%
합 계	9,043	8,134	90.0%	8.2%	-54.0%

資料: 경제기획원, 「UR국별 이행계획서 의결」, 1994.

UR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공산품에서 品目數 比重으로는 91.8%, 1988년 輸入 比重으로는 90%에 해당하는 품목에서 讓許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산품 평균관세율이 8.2%로 인하되었다. 수산물에서는 144개 품목의 양허로 수입액 가중평균 관세율이 13.6%에 이르게 되어 工產品과 水產物의 평균관세율(輸入加重)이 1986年 당시 17.9%에서 8.2%로 떨어지게 되었으나 이는 우리나라 실행관세율인 7.9%보다 높기 때문에 無稅化 및 關稅調和(tariff harmonization) 對象品目を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관세를 인하할 품목은 그

2) 다만 最惠國待遇原則에 대한 예외적 사항으로 關稅同盟(customs union)이나 自由貿易地帶(free trade area)는 WTO체제도 인정하고 있다 (GATT 第24條).

당시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多者間 無稅化나 關稅調和와 관련하여 향후 관세율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우선 다음의 <表 III-5>에서 예시된 품목들이 있다. 이들 제품은 우리나라가 1993년과 1996년 미국, 일본, EC 그리고 캐나다의 Quad 4개국 합의(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선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무세화 내지 관세인하를 단행하겠다고 합의한 품목들이다(讓許稅率의 調整임). 품목별로 살펴보면 建設 및 農業裝備, 醫藥品, 家具 등 50개 품목에서 UR협상 후 5년 이내(최강은 10년)에 관세를 무세화하고 조건부 17개 품목은 8~10년 이내에 무세화하도록 하였다³⁾. 化學製品에서는 페니실린, 호르몬, 환식탄화수소 3개 품목을 제외한 비료, 염산, 알코올, 페인트 등 193개 품목의 관세율을 5.5% 내지 6.5%로 하향조정하는 關稅調和에 참여하였다.

Quad합의에 대한 참여로 무세화된 품목 이외에도 APEC회원국간의, 그리고 미국·EC간에 합의된 關稅讓許案에 대한 참여요청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5~10년 이내에 목재를 제외한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종이, 완구에서 무세화를, 비철금속은 무세화(구리)와 관세율 인하(50%), 그리고 과학장비는 관세율을 평균 65% 인하하는 조건부 참여에 동의하였다(<表 III-6> 참조). 그 결과 우리나라는 향후 5~15년 이내에 총 203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무세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中間材와 完製品에 대한 관세를 무세화할 때 나타나는 逆關稅現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⁴⁾.

3) 이 밖에 麥酒, 蒸溜酒, X線科 醫療 및 獸醫用器機, 비타민, 페니실린, 항암제 등 8개 품목의 무세화에는 불참하였다.

4)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2000년까지 193개, 2002년에는 6개, 2004년에는 4개 품목을 무세화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연차별로 균등비율의 삭감을 이용한다고 한다.

<表 III-5> 關稅無稅化 및 關稅調和 讓許內容(Quad 合意品目)

(單位: 개)

Quad 合意內容		우리나라 合意內容		參與內容
分野	品目數	品目數	參與品目	
건설장비	10	10(4)	크레인, 굴착용 기계, 분쇄·혼합·반죽기 등, 토목공사용 기계, 덤프차(비고속도로용) 등	무세화 (UR타결 후 5년내 관세철폐)
의료기기	13	11(7)	방사성원소, 조제시약, 신체장애자용 차량, 정형외과용 기기, 비중계 등	
의약품	10	6(2)	탈지면·거즈·붕대 등, 기타 의료용품	
철강	35	35	철의 반제품, 철의 봉, 형강, 철의 선, 스테인리스강, 기타 합금강 등(10년에 걸쳐 무세화)	
가구	2	2(1)	의자와 그 부분품,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맥주, 증류주	2	-	불참	
농업장비	4	4(3)	농업·원예용 기계, 착유기와 낙농기계	
(소계)	75	68	(조건부 17개 포함)	
화학제품	196	193	탄소, 염산, 황산, 알코올, 페놀과 페놀알코올, 탈지면·거즈, 의료용품, 동식물성비료, 질소비료, 인산비료, 화학비료, 유연제, 착색제	관세조화 (5년내 5.5~6.5%로 인하)

註: () 안의 조건부 품목은 UR규정상 이행기간(5년)을 초과하여 8~10년의 이행기간을 확보한 품목임.

資料: 대우경제연구소,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1994.

재정경제원 내부자료.

UR협상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관세율 인하를 살펴보면 미국은 자국의 평균관세율(輸入額 基準)을 앞으로 5.4%에서 3.6%로, 일본은 3.9%에서 1.7%, EU는 5.7%에서 3.6%, 캐나다는 9%에서 4.9%

로 인하하도록 양허하였다⁵⁾. 또한 우리나라는 교역국별로 섬유, 신발, 가죽제품, 철강, 화학제품, 플라스틱 등 총 954개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요청하여 888개 품목(93%)에 관한 關稅減縮을 허용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다자간 협상으로 관세가 무세화되는 주요 교역품의 수입비중은 1994년 당시 협상국 수입총액 7,370억달러의 20%에서 앞으로 43%까지 증가할 것으로 OECD는 전망하고 있다. 產業別로는 <表 III-7>에도 나타나 있듯이 금속제품(70%)과 일반기계(48%)에서 수입개방의 확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기계(30%)와 수송기계(21%)는 상대적으로 무세화된 비중이 작은 편이다.

<表 III-6> 美國·EC合意 및 APEC合意에 관한 우리나라 參與內容

	美國·EC, APEC 合意內容	우리나라 參與內容
전자	-산업용·사무용 전자기기 : 평균 60% 인하 -반도체, 반도체 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 5년 무세화 총 15개 품목	-반도체 : 5년 무세화 -반도체 장비 : 국산화 불가 품목 10년 무세화 -컴퓨터 및 주변기기 : 일부 품목 10년 무세화(총 10개 품목)
중이	-41개 품목(HS 47~49류) : 10년 무세화	-38개 품목 : 10년 무세화 -3개 품목 : 15년 무세화
완구	-5개 품목 : 10년 무세화	-10년 무세화(8개 품목)
비철금속	-주석, 니켈, 구리 : 5년 무세 화 -여타품목 : 최고세율을 5% 로 하고 33% 이상 인하	-구리 중 일부 품목 : 10년 무세화 -여타 품목 : 50% 인하 (1986년 10~25%→5~13%)
과학장비	-17개 품목 : 평균 65% 인하	-평균 65% 인하 (1986년 15~30%→8~13%)

資料 : 대우경제연구소,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1994.

재정경제원 내부자료.

5) 이들 국가의 관세양허범위는 일본(98%)을 제외하고는 100%에 달한다.

<表 III-7> 主要 關稅無稅化 品目の 輸入比重과 展望

(單位: 억달러, %)

	全對象 品目	金 屬	電氣機械	一般機械	化學 및 寫眞裝備	輸送機械
협상수입총액	7,370	694	860	1,181	610	963
무세화수입: 현황	20	36	5	11	14	16
무세화수입: 전망	43	70	30	48	34	21

資料: OECD, 「개도국에 대한 UR의 영향」, 1994.

농산물의 市場接近에 대한 UR협상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원칙이 합의되었다. 첫째, 非關稅障壁을 철폐하는 대신 農産物의 國內外 價格差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예외없는 關稅化를 시행한다. 둘째, 관세의 단계적 인하로 개도국(선진국)은 협정발효 후 10년(6년)간 품목별 最低 10%(15%), 平均 24%(36%)의 관세율을 감축한다. 셋째, 기준연도(1986~1988년) 수입량이 국내소비의 3% 미만인 농산물은 上記의 이행기간 동안 3~5%의 물량이나 또는 현행 수입물량을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고 超過輸入은 관세화한다. 이 밖에도 농산물에 대한 許容補助金 이외의 國內補助金은 개도국이 10년간 13.3% 감축하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농업에 관한 한 開途國地位를 인정받아 關稅 및 補助金 減縮과 이행기간에서 약간의 猶豫를 확보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1995년부터 10년간 26.7%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쌀, 보리, 콩, 옥수수, 油菜 등 5개 품목에 대한 보조금은 2004년에 1조 4,900억원까지 축소해야 한다(1991년 대비 13.3% 감축). 그러나 쌀에 대하여는 特別待遇規程(Annex 5: 第4條 第2項에 의한 特別待遇)을 적용받아 2004년까지 關稅化를 猶豫하되 1999년까지 最小市場 接近物量을 1986~1988년까지 국내소비의 2%까지 増量하고 2004년까지는 4%까지 増大하도록 하였다. 쇠고기는 2000년, 돼지고기·닭고기·감귤·오렌지는 1997년 7월, 乳製品·고추·마늘·참깨는 1995년에 수입을 자유화하되 관

<表 III-8> 農産物의 主要 市場接近品目

(단위 : %, 톤)

	關稅讓許		市場接近 約束物量		
	基準稅率	讓許稅率	初期年度	最終年度	移行期間
쌀	유예	유예	51,307(5)	102,614(5)	1995~1999
			102,614(5)	205,228(5)	2000~2004
보 리 (쌀보리)	333 또는 401원/kg	299.7 또는 361원/kg	14,150(20)	23,582(20)	1995~2004
대 두	541 또는 1,602원/kg	487 또는 956원/kg	1,032,152(5)	1,032,152(5)	"
옥 수 수 (사료용)	365	358	6,102,100(3)	6,102,100(1.8)	"
감 자	338	304	11,286(30)	18,810(30)	"
고 구 마	428 또는 375원/kg	385 또는 338원/kg	11,121(20)	18,535(20)	"
쇠 고 기	44.5	40	123,000(43.6)	225,000(41.6)	1995~2000
돼지고기 (냉 동)	37	25	21,930(25)	18,275(25)	1995~1997.6
닭 고 기	35	20	7,700(20)	6,500(20)	1995~1997.6
유 제 품 (탈지분유)	220	176	621(20)	1,034(20)	1995~2004
고 추	300 또는 6,900원/kg	270 또는 6,210원/kg	4,311(50)	7,185(50)	"
마 늘	400 또는 2,000원/kg	360 또는 1,800원/kg	8,680(50)	14,467(50)	"
양 파	150 또는 200원/kg	135 또는 180원/kg	12,369(50)	20,645(50)	"
오 렌 지	99	50	15,000(50)	57,017(50)	"
참 깨	700 또는 7,400원/kg	630 또는 6,660원/kg	6,731(40)	6,731(40)	"

註 : () 안의 수치는 同 物량 수입시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임.
 資料 : 경제기획원, 『WTO 출범에 대비한 우리의 정책대응』, 1994.

세율을 높은 폭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다만 UR협상에 따라 市場接近 約束物量에 대해서는 <表 Ⅲ-8>에 나타나 있듯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동안 수입이 제한되어 온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는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화하면서 市場接近物量을 보장하였다. 따라서 농산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HS 10단위 기준 1,305개 품목 중 이미 수입자유화된 1,067개 품목을 제외한 238개 품목은 앞으로 예외없는 관세화나 最小市場 接近物量을 보장하여야 한다. 양허품목수는 1,298개 품목에 달하여 농산물은 전체 1,312개 품목의 98.8%에 해당하는 품목이 양허되었고 평균양허세율도 95%에서 62.8%로 인하되었다.

3. 彈力關稅의 運用現況

가. 彈力關稅制度

우리나라 彈力關稅制度에는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調整關稅, 緊急關稅(safeguards), 農產物 特別緊急關稅, 덤핑防止關稅와 원활한 물자수급, 물가안정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율을 加減하는 割當關稅(tariff quotas) 그리고 相計關稅(countervailing duties), 便益關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緊急關稅는 1993년 6월 이후 운용된 바가 없고 相計關稅도 무역마찰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발동된 바가 없다. 농산물 特別緊急關稅는 UR협상에서 수입자유화된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감자, 보리 등 61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彈力關稅 중에서 현재 폭넓게 운용되고 있는 제도는 調整關稅, 割當關稅, 덤핑防止關稅로서 均等關稅率體制의 실제 운용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용되고 있는 이들 탄력관세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調整關稅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12조 2항에 의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攪亂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율을 100%(農水産物은 國內外 價格差)까지 인상·조정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조정관세의 운용은 최근의 輸入推移와 輸入依存度, 國內外價格差 등에 따른 경쟁여건과 국내산업 기반유지를 그 기준으로 하되 적용세율은 UR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주요국의 관세율, 유사품목간의 형평성, 요청세율 등을 고려한 '適正水準'에서 결정된다. 적용기한은 1997년 이전에는 6개월 단위로 운용되었는데 그 기한이 構造調整과 競爭力 脆弱産業 保護라는 趣旨에 부합되기에는 너무 짧은 기한이었고 政策의 安定性과 行政費用도 감안하여 1997년부터는 1년으로 적용시한을 연장하였다.

조정관세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1월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당시 조정관세가 적용중이던 표고버섯 등 33개 품목에 1년간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毛皮衣類 등 11개 품목에 대하여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조정관세를 적용하였는데 1997년 4월에는 衣類, 木材家具 등 15개 신규품목에 관하여 당해년 12월 31일까지 조정관

<表 III-9> 調整關稅 運用現況

(單位: %)

品 目	關稅率引上	適用期間
판유리 등 4개	8~30 → 15~59	95.7.1 ~ 95.12.31
전기저항기	8 → 20	95.7.1 ~ 96. 6.31
생사 등 4개	8 → 15~43	95.7.1 ~ 96.12.31
면직물 등 27개	8~30 → 15~100	95.7.1 ~ 97.12.31
명태(냉동) 등 3개	10 → 30~50	96.1.1 ~ 97.12.31
꽂치	10 → 30	96.7.1 ~ 96.12.31
일회용라이터 등 2개	8~20 → 15~30	96.7.1 ~ 97.12.31
목재·의류·가구 등 26개	8~20 → 13~100	97.1.1 ~ 97.12.31

資料: 관세심의위원회, 재정경제원 보도자료.

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1997년 7월 현재 총 59개 품목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輸入增加에 따른 설탕, 나무젓가락, 綿·毛織物과 競爭力 確保를 위한 볼베어링, 一次電池, 混合조미료, 合板, 雨傘類 등의 2년 내지 3년 이상 조정관세가 적용된 품목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수입급증과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衣類·玩具 등 경공업제품 중 새로이 조정관세를 부과한 품목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국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명목으로 조정관세가 도입된 경우이다.

한편 農家保護를 위하여 고사리, 표고버섯, 당면, 무 등에 대하여 조정관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農産物에 비하여 特別緊急關稅나 國內外價格相當值(TE; tariff equivalent)의 관세율 적용 등 개방보완조치가 없는 水産物의 경우, 수산업 보호를 위하여 농어·돔·민어·명란(냉동)·미역 등 그리고 1997년 수입자유화되는 오징어·새우젓·홍어·참치통조림에 대한 조정관세가 있다. 조정관세는 주로 輕工業製品과 農水産物이 그 대상이며 적용세율은 의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기본관세율의 2배 내지 10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특히 농어·돔·민어 등 주로 수산물에서 100% 이내의 조정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또한 당면·설탕·혼합조미료 등 경공업제품에도 기본세율 8%를 상당히 超過한 5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 割當關稅

할당관세는 관세법 第16條에 의하여 物價安定, 圓滑한 物資需給, 類似品目間의 稅率不均衡 是正을 위하여 기본세율에서 40%를 加減한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내지 인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탄력관세이다. 또한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 수입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40%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加算하고 農林·畜·水産物에 대하여는 國內外價格差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第16

條 第2項).

할당관세의 운용은 첫째로, 物價와 物資需給安定을 위한 것이다. 수입가격의 急騰 등으로 야기되는 국내가격 인상요인을 관세로 흡수하기 위하여 1997년 현재 유장분말(분유용), 원료치즈, 맥주맥, 조주정, 대두 등 1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고 국내생산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멘트, 프로판·부탄 등 1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의 일시적 감면이 있다. 둘째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 脆弱産業 支援을 위한 관세율 조정에는 우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공업 등의 원료에 대한 관세율 인하(염료, 면사 등 12개 품목)와 농축산업 사료용원료, 農業用機資材(옥수수, 밀, 요소, 農藥原劑 등 14개 품목), 식품가공업체(토마토 페이스트)에 관한 관세인하가 있다.

<表 III-10> 割當關稅 運用現況

(單位：%)

	品 目	關稅率 引上/引下	適用期間
내리는 할당관세	경유 및 벙커C유 등 9개	5~10 → 2~6	95.7.1 ~ 95.12.31
	커피 등 3개	3~8 → 2~4	95.7.1 ~ 96. 6.30
	고속도강	8 → 4	95.7.1 ~ 96.12.31
	원유 등 35개	2~40 → 1~15	95.7.1 ~ 97.12.31
	스테인리스강의 평압판연제품	8 → 6	96.1.1 ~ 96. 6.30
	전기장판 등 4개	3~8 → 0~5	96.1.1 ~ 97. 6.30
	멸치	20 → 10	96.7.1 ~ 96.12.31
	연의 피 등 3개	3~8 → 1~5	96.7.1 ~ 97. 6.30
	천연고무 등 16개	1~20 → 0~5	96.7.1 ~ 97.12.31
	발전기용 디젤엔진 등 5개	1~8 → 0~4	97.1.1 ~ 97. 6.30
	전자제어식 제동장치 등 27개	1~20 → 0~5	97.1.1 ~ 97.12.31
	햇코일 등 7개	1~8 → 0~4	97.7.1 ~ 97.12.31
올리는 할당관세	바나나	30 → 70	95.7.1 ~ 97.12.31

資料：관세심의위원회, 재정경제원 보도자료.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에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非競爭 基礎原料에 대한 관세율 무세화(철광석, 유연탄, 천연고무, 납사용 원유, 원목, 원면 등 9개 품목)와 경쟁 기초원료 중 원피, 조동, 미정제연괴에 관한 관세율 1% 적용, 그리고 中間材 이면서 原資材 性格이 강한 빌레트, 슬랩, 알루미늄괴 등 5개 품목의 관세율을 1~3%로 인하한 것이 있는데 이들 원료들은 수입액이 큰 규모여서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입품들이다. 마지막으로 類似物品間, 加工度別 逆關稅를 시정하기 위하여 유채유, 오산화바나듐 등 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있다. 적용세율은 수입품가격을 감안하되 신규품목은 기본세율의 2분의 1 수준에서 결정하고 비경쟁원료는 零稅率, 경쟁원료는 1~3%로 한다.

割當關稅의 運用現況을 살펴보면 1997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할 때 기존품목은 58개, 신규품목이 16개인데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지원의 규모는 약 1,924억원으로 추정된다(1996년 하반기는 1,533억원). 1997년 하반기에는 신규품목이 5개, 기존품목이 75개에 달하여 7월 현재 총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87개에 이르고 있다. 할당관세는 원래 6개월 단위로 운용되고 있는데 상당수 품목이 2년 내지 3년 이상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유장분말, 대두, 사료용 밀, 원목, 맥주맥, 프로판·부탄, 요소, 면·면사, 슬랩, 알루미늄괴 등이 이에 해당한다. 品目別 適用稅率은 대부분 原料는 0~1%, 中間材 등은 基本關稅率의 2분의 1에 달하여 농산물이나 음·식료품을 제외하고 수입재는 4%를 적용받는다.

전술한 대로 할당관세로 인한 관세지원액은 1997년 상반기 현재 1,9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관세징수액의 약 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할당관세의 대상품목이 주로 원유, 원목, 생사 등 수입규모가 큰 원료라는 점, 그리고 이들 原資材에 부과되는 關稅率이 低率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품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關稅支援額으로 파

악되는 規模보다 훨씬 크리라는 추측이다.

3) 덤핑防止關稅

덤핑防止關稅는 수입품이 正常價格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혹은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遲延되었음이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제도이다. 덤핑방지관세에서는 總理令으로 당해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 당해 물품에 대하여 第7條 규정에 의한 기본관세 이외에 正常價格과 덤핑價格의 差額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한다(관세법 第10條 第1項). 따라서 반덤핑관세는 특정국, 특정물품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한다는 점에서 다른 彈力關稅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正常價格은 신청물품과 同種物品이 공급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특수한 상황에서 通常去來價格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3국의 수출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합리적 이윤을 합한 가격(構成價格)으로 한다(관세법 시행령 第4條의6 第1項). WTO 반덤핑협정 第9條 1項과 관세법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조사된 덤핑률이 산업피해 救濟水準보다 높은 경우 산업피해 구제수준을, 반대의 경우에는 조사된 덤핑률을 덤핑방지관세로 부과하고 있다⁶⁾.

<表 III-11>은 1996년 이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이거나 조사 중인 품목을 명시한 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반덤핑관세는 덤핑을 시도한 供給國 또는 供給物品別로 덤핑防止稅率을 달리하고 있고 適用時限도 탄력적으로 3~5년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덤핑관세가 확정적으로 부과된 품목은 5개 품목이 있다. 과

6) 産業被害 救濟水準은 適正販賣價格에서 輸入CIF價格과 輸入通關 등 諸費用을 減하고 이를 수입가격(CIF가격)으로 나눈 뒤 百分率로 표시한 數值로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價格水準을 의미한다.

<表 III-11> 덤핑防止關稅 賦課 및 調査中인 品目

	提訴者	被提訴者	調査 開始日	덤핑關稅率 및 賦課期間
에탄올 아민	한국포리올 (주)	<미국>:Union Carbide Corp. 등 2개사	1996. 2.10	· 20.07~33.84% · 1996.7.10~2001.7.9 (5년간)
리튬1차 전지	(주)테크라프	<미국>:Duracell Inc. <일본>:Sanyo Electric Co. 등 1개사	1996. 3.15	· <미국>:10.82% <일본>:25.73~25.86% · 1996.9.2~1999.9.1 (3년간)
염화코린	코린화학(주)	<미국>:Chinook Group <중국>:요양석유화학 공사 등 3개사	1996. 4.17	· <미국>:49.62% <중국>:33.83~34.57% · 1996.9.2 ~ 2001.9.1 (5년간)
남성용 전기 면도기	(주)우림전자	<일본>:Sanyo Electric Co. 등 1개사 <독일>:Braun AG <네덜란드>:Philips <중국>:주해필립스가 전유한회사 등 1개사	1996. 7.20	· <일본>:30.09~45.68% <독일>:23.14~41.57% <네덜란드>:37.67% <중국>:26.85~34.59% · 1996.12.20~2001.12.19 (5년간)
소다회	동양화학(주)	<중국>:중화하북진출 구공사 등 1개사	1996. 7.29	· 22.04~24.49% · 1996.12.31~1999.12.30 (3년간)
소다회	동양화학 공업(주)	<불가리아>:SODI EAD <러시아>:JSC SODA	1996. 9.13	· <불가리아>:15.69% <러시아>:16.94% · 1997.1.24 ~ 2000.1.23 (3년간)
H형강	강원산업(주)	<러시아>:Nizhny Tagil Steel Works	1996.11.21	· 15.43~15.64%(잠정) · 1997. 7 확정덤핑방지 관세 부과여부 결정 후 시행일부부터 4월간
1회용 라이터	한국라이타 공업협동조합	<중국>:Ningbo Import & Export Corp 등 8 개사	1997. 3.10	· 31.39%(잠정) · 1997. 9 확정덤핑방지 관세 부과여부 결정 후 시행일부부터 4월간

資料: 관세심의위원회, 재정경제원 보도자료.

거 우리나라는 통상마찰을 우려하여 반덤핑관세를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점차 반덤핑관세의 賦課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시도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덤핑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면 통상마찰 이외에도 값싼 수입품을 국내에서 유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또한 원자재나 중간재에 부과된 반덤핑관세는 逆關稅現象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同 制度가 斜陽產業 또는 국내 독점산업의 보호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事後檢證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덤핑관세제도의 운용시 WTO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덤핑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고 특히 반덤핑관세의 부과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증대, 즉 輸入轉換效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 彈力關稅의 問題點

우리나라의 彈力關稅制度 중에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조정관세,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그리고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율을 가감하는 할당관세 등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들 탄력관세는 限界產業과 競爭力 脆弱產業을 보호하여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수입가격 상승이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관세로써 여과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더욱이 法改正을 要하는 기본관세율의 조정과는 달리 이들 탄력관세는 限時的이고도 탄력적으로 급변하는 경제동향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관세들이 폭넓게 그리고 장기간 운용된다면 關稅率 引下豫示制가 추구하고 있는 產業別 均等關稅와 관세인하의 基本原則이 저해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조정관세의 경우 특히 1997년 7월 현재 총 59개 품목에 대하여 당해 관세가 부과되

고 있으며 <表 III-12>에서 보듯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調整稅率 적용을 받은 품목은 27개에 달한다. 品目數 기준으로 전체품목의 46%가 3년 이상 조정관세의 대상품목으로 존속되어 이들 품목에 대한 調整關稅가 慢性化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욱이 조정관세가 설탕, 면·모직물, 혼합조미료, 합판, 우산류 등 輕工業品目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의류·완구 등의 경공업제품에도 새로이 조정관세가 적용되었다⁷⁾.

따라서 많은 경공업제품의 實行關稅率이 基本關稅率보다 높고 품목별로도 關稅率 隔差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關稅率構造의 歪曲이 우려된다. 한 예로서 1994년 면·모직물의 실행관세율은 각각 20.3%, 18.4%이고 기타조미료는 17.0%, 합판은 10.5%, 목재가구는 14.7%, 국수류는 무려 53.8%에 달하는데 이들 제품의 기본관세율은 원래 8%이다. 第4節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조정관세로 인하여 경공업에서의 HS品目別 單純平均 實行關稅率은 예시체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10.5%에 달하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關稅率의 標準偏差는 1990년 7.8에서 1994년 10.6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렇듯 조정관세가 慢性的으로 輕工業製品에 운용된다면 심각한 자원배분의 歪曲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국내자원의 이동은 相對的 保護水準에 민감하게 마련이므로 경공업에 대한 만성적인 조정관세의 적용은 궁극적으로 수출산업과 성장산업으로의 資源流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조정관세가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조정관세는 성격상 例外的이고 一時的인 措置이어야 한다. 만약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

7) 이들 경공업제품의 수입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衣類의 경우 1995년 당시 수입규모가 3억 2,700만달러로 이는 전체 의류수입의 32.6%에 달하고 玩具類는 4,800만달러이다. 또한 이들 제품의 1996년 수입 증가율은 50%를 上廻하고 있다.

하여 관세율 인상이 정히 필요하다면 조정관세보다는 暫定關稅으로써 이를 수용하고 이러한 보호가 限時的인 措置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⁸⁾.

그 이유는 첫째, 一時的인 構造調整을 위한 보호를 기본관세율의 변경으로 시행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기본관세율의 조정은 一時的의 支援이 아닌 斜陽產業에 대한 永久한 保護로 해석될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도와는 달리 기업자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조정관세가 6개월 내지 1년의 時限으로 운용되는 상황에서는 국내산업이 장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기가 어렵고 그 반면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정치적 로비에 의한 현황 유지를 기대하기 쉽다. 이때 조정관세가 예외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설사 취약산업이 아닌 산업일지라도 조정관세의 적용을 요청하게 되고 중국에는 관세율정책의 根幹이 흔들릴 수 있다. 그 결과 이전과는 달리 우리나라 관세정책이 基幹產業의 보호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데 이용되기보다는 斜陽產業의 保護道具로 전략하여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만약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정기간 暫定關稅로써 지원하고 또한 暫定關稅가 再適用되지 않는 保護措置라는 점을 명확하게 천명하며 실제 운용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割當關稅에 있어서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조정세율 적용을 받은 품목이 29개에 이르고 1~3년에 달하는 품목도 마찬가지로 29개에 달하여 品目數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67%가 1년 이상 할당관세 대상품목으로 존속되고 있다. 할당관세의 규모는 1997년 상반기에 품목수로 74개, 關稅支援額은 약 1,924억원으로 추정되어 關稅徵收

8) 構造調整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임은 물론이다.

額의 5%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수입 규모가 큰 원목, 원유 등 원료임을 감안하면 할당관세의 비중은 상당하리라는 추측이다. 한편 1997년 하반기에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이 87개로 증가하여 그 비중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表 Ⅲ-12> 彈力關稅 適用現況

(單位:개)

	3年 以上	1~3年 未滿	1年 未滿	總 計
할당관세	29	29	29	87
조정관세	27	6	26	59

資料: 관세심의위원회, 재정경제원 보도자료, 1997.

할당관세는 원래는 물가 및 수급안정과 脆弱産業支援을 위하여 수입원료의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취지로 사용되었는데 1997년 현재 상당수 품목(58개)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조정관세뿐만 아니라 할당관세의 慢性化도 우려된다. 특히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품의 규모를 제한할 경우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간의 가격차이로 인하여 經濟的 地代(economic rent)가 발생한다. 이때 低率의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을 수입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는 비생산적인 로비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게 마련이므로 할당관세의 적용에서는 각별한 政策 透明性이 요구된다.

한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基礎原資材의 관세율 인하조치로서 철광석, 석유, 원목, 원면에 대한 관세율 無稅化와 원피 등 競爭原料와 中間材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있고 類似物品間, 加工度別 逆關稅를 시정하기 위한 할당관세의 적용이 있는데 逆關稅에 대한 관세율 조정을 기본관세율의 조정이 아닌 할당관세로 施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밖에도 기본적으로 자원절약이 요구되는 물품을 제외한 대부분 원료에 대한 관세율은 가능한 한 無稅化함으로

써 完製品에 대한 實效關稅率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關稅率構造의 運用現況

가. 平均關稅率의 變遷

우리나라 平均 實行關稅率(關稅徵收額/輸入額)은 1995년 당시 4.4%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EC(3.3%), 일본(3.4%), 대만(4.9%)과 비교할 때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다. 實行關稅率이 法定關稅率보다 낮은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가 무역구조상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原材料와 中間材에 수입이 편중되었기 때문이며 이 밖에도 關稅減免制度와 잦은 할당관세의 운용으로 관세부담이 그만큼 감소하였기 때문이다⁹⁾. 이러한 이유로 <表 III-13>에서 보듯이 法定關稅率이 23.7%에 달하였던 1983년에도 實行關稅率은 7.0%에 불과하였으며 그 이후 關稅率引下豫示制의 실시로 소비재에 관한 관세율이 대부분 8%로 수렴하면서 兩 關稅率의 隔差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여기에다가 關稅還給制度의 활용으로 수출품에 투입되는 수입원 재료의 관세는 환급되고 있다. 따라서 輸出用 輸入原材料의 부담은 金利 및 行政費用에 불과한데 1997년 7월 1일에 시행되는 관세환급제도의 개정으로 향후에는 금리비용도 최대한 6개월간 면제된다. 환급비율은 1995년 기준으로 관세징수액의 27.3%에 달하고 있고 수

9) 關稅減免制度는 주로 외교관, 학술연구, 자선 등의 協約減免과 企業減免으로 나누어지는데 총감면액은 1995년 당시 4,757억원으로 全體 關稅徵收額 4조 6,332억원의 10.3%에 달한다. 이 중 공장자동화기기(1,348억원), 첨단산업용 시설기자재(255억원), 지하철과 농기계(56억원), 선박 등 첨단산업과 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企業減免이 2,401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50.5%를 차지한다(朴相泰, 1996). 關稅減免制度는 국내생산이 곤란한 첨단시설재에 대한 輸入을 용이하게 하여 國內企業의 生産性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다만 그 惠澤이 대부분 大企業에 집중되고 있는 단점이 있다.

입액의 1.2%에 이른다. 이를 1983년 수입대비 환급률 4.5%와 비교하면 그 비율이 많이 감소한 편인데 그 이유는 中間材에 대한 關稅率 引下와 國產化로 還給比重이 줄었기 때문이다.

<表 III-13> 우리나라 平均關稅率의 變化推移

(單位: %)

	1983	1988	1991	1992	1993	1994	1995
법정관세율	23.7	18.1	11.4	10.1	8.9	7.9	7.9
실행관세율	7.0	6.8	5.7	4.9	4.3	4.2	4.4
관세 환급률	4.5	4.9	1.6	1.5	1.4	1.2	1.2

註: 법정관세율은 품목별 법정관세율을 단순평균한 수치이며 실행관세율과 환급률은 각각 수입액 대비 관세 징수액과 환급액임.

資料: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關稅還給, 減免制度와 割當關稅를 감안하면 국내산업의 平均 實質 關稅負擔은 1995년 현재 약 3.2%에 불과하다. 이는 1983년 부담률 2.5%와 비교하면 약 0.7% 증가한 수치인데 관세율 인하예시제로 인한 상당한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부담률이 올라간 이유는 소비재의 수입증가로 還給率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다만 실질부담률이 1991년 당시 4.1%로 極點에 달하였다가 그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관세율 인하와 관세 환급제도 등 각종 감면제도의 운용으로 關稅의 財政寄與度는 계속 떨어져 1995년 기준으로 관세수입이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불과하다. 관세인하예시제가 실시된 1983년 당시 기여도 12.8%와 비교하면 조세비중은 절반으로 떨어진 것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¹⁰⁾.

10) 1995년 관세의 財政寄與度가 1994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1995년에 수입액이 약 325억달러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表 III-14> 우리나라 關稅率의 變化推移

(單位: %)

	平均關稅率		租稅收入에서 關稅가 차지하는 比重	國稅收入에서 關稅가 차지하는 比重
	法定關稅率	實行關稅率		
1961	30.3	12.9	18.6	22.8
1973	31.3	4.9	12.6	15.8
1976	35.7	6.5	11.9	14.4
1981	23.7	4.9	10.9	12.3
1983	23.7	7.0	12.8	14.6
1988	18.1	7.3	11.4	13.2
1991	11.4	5.5	9.0	11.3
1992	10.1	5.2	7.1	9.0
1993	8.9	4.3	5.7	7.4
1994	7.9	4.2	5.7	7.3
1995	7.9	4.4	6.4	8.2

資料: 國稅廳, 「國稅 통계연보」, 각 연도.

金珍珠·安鍾錫,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구조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4.

나. 均等關稅率體制와 平均 實行關稅率(產業別)

防衛稅의 廢止로 關稅率引下豫示制가 順연된 1990/91년 이후 1994년까지 우리나라 관세율의 產業別 分布는 <表 III-15>에 제시되어 있다. 산업의 구분은 한국은행의 IO25 交易財産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용된 자료는 關稅廳이 집계한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10단위별 관세징수액과 수입액이다¹¹⁾. 우리나라는 HS 10단위로 수입품을 구분하여 기본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HS 10단위의 관세징수액을 수입액으로 나누어 얻어진 관세율을 기초자료로 사용, 평균관세율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 표에서 인용된 관세율은 기본세율뿐만 아니라 關稅減免制度와 조정, 할당, 반덤핑관세 등 非定期的으로 부과되는

11) IO75 交易財産業의 관세율 변화는 <附表 1>을 참고하면 된다.

彈力關稅를 포함하여 실제로 수입품에 적용된 관세율, 즉 實行關稅率을 의미한다.

〈表 Ⅲ-15〉 産業別 單純平均 및 加重平均 關稅率의 變化推移
(1990~1994)

(單位: %)

IO25品目	加重平均					單純平均				
	1990	1991	1992	1993	1994	1990	1991	1992	1993	1994
농림수산물	4.1	7.7	6.0	5.5	6.3	13.2	12.9	12.6	12.8	13.5
광산물	4.1	1.1	1.1	1.3	1.8	4.3	3.8	3.4	3.2	2.7
경공업	9.6	10.5	10.3	9.2	8.8	13.1	13.2	12.3	11.3	10.5
음·식료품	9.5	11.7	12.3	11.1	11.6	18.0	18.0	18.4	18.2	18.1
섬유·가죽	11.0	10.9	10.2	9.1	8.3	12.0	12.0	10.7	9.0	8.0
종이·나무	7.2	8.0	7.7	7.6	6.5	11.2	11.1	10.3	9.2	8.1
기타제조업제품	10.5	10.6	9.6	7.7	6.9	10.8	10.8	10.0	8.8	8.1
중공업	7.8	7.8	6.8	5.9	5.5	10.7	10.5	9.3	7.7	7.0
화학제품	9.9	10.0	9.2	7.6	7.0	11.4	11.3	9.9	8.2	7.6
석유·석탄	3.2	1.6	2.0	2.2	2.6	9.0	7.9	7.2	6.1	5.9
요업·토석	10.1	8.0	8.9	8.6	7.7	12.3	12.1	10.7	9.2	8.2
제1차금속	5.6	5.5	5.8	5.0	4.6	8.3	7.9	7.9	6.6	5.9
금속제품	10.4	9.8	8.7	7.0	6.0	11.2	11.6	9.9	7.9	7.3
일반기계	10.5	9.8	8.3	6.8	6.3	10.8	10.1	8.8	7.4	6.9
전기 및 전자기기	6.1	7.2	6.0	5.9	5.4	10.3	10.6	9.2	7.4	6.8
정밀기기	9.2	8.6	7.2	6.0	5.7	10.3	10.1	8.9	7.2	6.8
운송기계	4.1	4.6	3.7	3.1	3.3	8.9	9.3	7.5	6.0	5.1
교역재 전체	7.3	7.1	6.3	5.6	5.5	11.4	11.3	10.3	8.9	8.3

註: 가중평균 관세율은 수입액으로 가중평균한 관세율이며 단순평균 관세율은 품목별 관세율의 합을 품목수로 평균한 관세율임.

資料: 관세청 전산자료.

HS 10단위별 實行關稅率을 구한 다음 이를 다시 IO25 産業別로 再分類하여 평균관세율을 추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우선 어떤 산업에 속하는 각종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액의 총합을 수입액의 합으로 나눈 관세율, 즉 輸入加重 平均關稅率이

<表 III-15>에서 첫번째 列의 關稅率이며 두번째 列의 關稅率은 품목별 실행관세율의 합을 品目數로 單純平均한 關稅率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加重平均 關稅率은 $\sum t_i M_i / \sum M_i = \sum T_i / \sum M_i$ 이고 單純平均 關稅率은 $\sum t_i / n$ 인데 여기서 사용된 부호들은 차례로 t_i = 실행관세율, M_i = 수입액, T_i = 관세징수액, n = 품목수를 의미한다.

이들 두 평균관세율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먼저 평균관세율의 변화를 연도별과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輸入沮止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高關稅를 제외하면 輸入加重 平均關稅率이 單純平均 關稅率보다 수입이 규제되는 정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가중평균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 산업별 관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교역재 전체 가중평균 관세율은 7.3%에서 5.5%로 약 1.8% 하락하여 이 기간 동안에 시행된 제2차 關稅率引下豫示制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실행관세율이 상승한 산업도 -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 있고 인하폭도 산업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농산물의 경우 農家所得作物의 保護와 UR협상에 따른 例外없는 關稅化 原則下에 關稅率의 調整이 이루어져 같은 기간에 평균관세율은 2.2% 상승하였고 이와 마찬가지로 음·식료품의 관세율도 2.1% 상승하여 1994년 당시 실행관세율이 각각 6.3%, 11.6%에 달하는데 이 기간에 關稅率이 增加한 산업은 農產物과 飲·食料品이 유일하다¹²⁾. 農水產物에서는 특히 채소(47%), 유지작물(40%), 과일(35%), 식용임산물(31%), 내수면양식(34%) 등에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이에 못지않게 飲·食料品에서도 국수류(54%), 청량음료(45%), 정미와 과일 및 채소저장품(42%), 유제품(35%) 등에서 高關稅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IO75산업을 기준하면 <附表 1>에서 보듯이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15%를 초과하는 관세율이 적

12) 농산물의 경우 수입제한적인 고관세와 시장접근을 불허하는 품목들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관세율로써 보호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용되고 있고 음료품에 대한 관세율은 무려 32.5%에 달하고 있다. 반면 주로 原料로 쓰여지는 鑛產品은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가중 평균 관세율이 2.3% 감소하여 1994년 당시 실행관세율은 1.8%에 불과하다.

음·식료품에 대한 이러한 고관세는 조정관세의 적용과 함께 농수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거나 수입제한에 따른 음·식료품에 관한 逆關稅現象을 저지하기 위하여 기본관세율을 높게 책정한 결과이다. 그러나 음·식료품에 대한 고관세는 결국 加工業體에 대한 過多한 保護일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제V장에서 實效關稅率을 추정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만약 음·식료품 원재료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수입제한조치가 중요하지 않다면 관세율에 관한 한 음·식료품에는 필요 이상의 관세가 적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시기에 평균관세율이 輕工業에서는 0.8%, 重工業에서는 2.3% 떨어져 1994년 당시 평균 실행관세율은 각각 8.8%, 5.5%에 달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중공업과 경공업 사이의 관세율 격차는 1990년 1.8%에서 1994년 3.3%로 상승한다. 이와 같이 관세율의 절대 크기나 또는 그 인하폭으로 볼 때 關稅率引下豫示制가 重工業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공업에서 기타제조업(3.6%), 섬유·직물(2.7%)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고, 중공업에서는 금속제품(4.4%), 일반기계(4.2%), 정밀기기(3.5%), 화학제품(2.9%)의 순으로 관세율이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산업의 관세율도 상당히 인하되었다¹³⁾. 그러나 섬유직물의 실행관세율은 11.3%에 달하여

13) IO75 交易財產業 基準으로는 수산물(4.6%), 수산가공품(5.5%), 육류 및 낙농품(2.5%) 그리고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3.9%)의 관세율이 높은 쪽으로 인상되었고 輕工業에서는 음료품(4.7%), 섬유제품(4.5%), 의복 및 장신품(6.8%), 기타제조업제품(4.3%)이, 重工業에서는 의약·화학제품(4.7%), 고무·플라스틱(4.2%)·유리·요업제품(4.7%) 그리고 기계류제품(4.4%), 전기기계 및 장치(3.9%), 컴퓨터 및 사무용기계(3.5%), 정밀기기(3.5%)의 관세율이 많이 인하되었다(<附表 1> 참조).

완제품인 섬유제품(8.1%)과 의복 및 장신품(8.0%)보다 높은 세율을 유지하여 逆關稅現象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單純平均 關稅率로 實行關稅率의 變化를 살펴보면 교역재 전체의 관세율은 11.4%에서 8.3%로 약 3.1% 하락한다. 그러나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에서는 加重平均 關稅率이 2% 이상 상승한 것과는 달리 이들 품목의 單純平均 關稅率은 각각 0.3%, 0.1% 인상되어 단순평균치로 보면 食生活關聯 품목에서는 관세율의 큰 변화를 볼 수 없다. 이는 수입액이 큰 農林水產品 또는 飲·食料品 관련 특정품목의 관세율이 이 시기에 상승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수산물의 관세율이 가중평균으로는 4.6% 상승하였는데 단순평균은 1.5%만 상승하였고 작물에서도 각각의 관세율이 2.2%, 0% 상승하는 차이를 보이는 등 평균치의 개념에 따라 관세율 등락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飲·食料品에서도 水産加工品이 이와 비슷하게 加重平均과 單純平均 관세율이 각각 5.5%, 2.6% 상승하였고 빵, 과자 및 곡수류에서는 가중평균이 1.2% 상승한 반면 단순평균은 오히려 2.3% 하락하여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공업의 단순평균 관세율도 10.7%에서 7.0%로 떨어지고 경공업에서는 단순평균 관세율이 13.1%에서 10.5%로 하락하였다. 그러므로 單純平均 관세율을 기준으로 하여도 관세율 수준이나 그 하락폭으로 볼 때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중공업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加重平均 關稅率의 하락폭이 1%에 못 미치는 제품들 가운데에는 單純平均 關稅率로 보면 종이·나무제품이 3.1%, 전기 및 전자기기가 3.5%, 운송기계가 3.8% 정도 관세율이 하락하여 평균관세율의 정의에 따라 관세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결론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

지금까지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加重平均과 單純平均 關稅率의 變化를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어느 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하여도 경공업과 중공업의 관세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加重平均 關稅

率は 1994년 당시 경공업과 중공업이 각각 8.8%, 5.5%로 하락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중공업의 관세율 인하폭(2.3%)은 경공업(0.8%)보다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이 關稅率 水準으로 보나 또는 關稅率 引下幅으로 보나 第2次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중공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단순평균 관세율로 보아도 이러한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농림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예시제의 실시 이후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경공업 관세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도 주로 음·식료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때문이며 섬유제품과 목재제품의 관세율은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한편 중공업은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있어서 관세율이 하락하였으며 다만 세부적으로 시멘트제품의 가중평균 관세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單純平均 關稅率과 輸入加重 平均關稅率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IO25 산업에 있어서 매년 단순평균 관세율이 수입가중 관세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섬유·가죽제품에서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 차이가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다. 단순평균이 가중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관세율구조가 수입구조와 負의 相關關係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品目別 關稅率과 輸入額의 共分散(covariance)을 定義하면 아래의 식 (1)과 같다.

$$Cov(t_i, M_i) = \sum (t_i - \bar{t})(M_i - \bar{M}) / n - 1 = \frac{\sum t_i M_i - n \bar{t} \bar{M}}{n - 1} \quad (1)$$

식 (1)을 $n-1$ 로 곱한 뒤 재배열하여 이들 두 평균관세율의 관계를 품목별 관세율과 품목별 수입액의 共分散으로 표시한 것이 식 (2)인데,

$$\bar{t} - \frac{\sum t_i M_i}{\sum M_i} = - \frac{n-1}{\sum M_i} Cov(t_i, M_i) \approx \frac{-1}{\bar{M}} Cov(t_i, M_i) \quad (2)$$

여기서 보듯이 共分散이 陰의 符號를 가지면 單純平均 關稅率은 加重平均 關稅率보다 높은 값을 갖는다. 이 경우는 수입액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 저율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원래 높고 이 품목에 낮은 관세가 적용되므로 단순평균 관세율은 가중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값을 지니게 된다.

한편 식 (2)가 의미하는 바는 수입규모와 상관없이 각종 수입품에 均等關稅率이 적용된다면 평균관세율의 차이는 零의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별로나 연도별로 두 평균관세율의 격차가 감소할 때 이를 均等關稅率體制로의 轉換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식 (2)에서 보듯이 수입구조에 따라서도 兩 關稅率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상기의 해석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어떤 산업내에서 품목별로 관세율이 크게 다르고 輸入額 分布는 비슷한 경우, 關稅率 分布는 차이가 없는데 품목별 수입액이 다른 경우의 관세율 격차는 관측상 동일하므로(observationally equivalent) 加重과 單純平均 關稅率으로써 산업간의 관세율구조를 비교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 다만 한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산업의 수입구조가 연도별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假定下에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나 이러한 성격의 분석도 오랜 시기를 두고 할 일은 아니다¹⁴⁾.

14) 加重平均과 單純平均 關稅率의 격차, 즉 $\bar{t} - \frac{\sum t_i M_i}{\sum M_i}$ 를 A 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微分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추출된다. 첫째, 특정 수입재의 관세율이 떨어질 때 평균관세율의 격차가 '감소'하려면 ($\frac{dA}{dt_i} > 0$, $A > 0$) 은 당해 품목의 수입액이 평균수입액보다 적어야 한다($M_i < \bar{M}$). 둘째, 어떤 품목의 수입액이 증가할 때 관세율 격차가 감소하려면 ($\frac{dA}{dM_i} < 0$) 당해 제품의 관세율이 加重平均 關稅率보다 높아야 한다($t_i > \frac{\sum t_i M_i}{\sum M_i}$).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소비재의 관세율이 높고 수입은 적은 상황에서

上記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加重平均과 單純平均 關稅率을 식(2)에 비추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거의 대부분의 IO25 산업에 있어서 매년 단순평균 관세율이 輸入加重 平均關稅率보다 높다. 예외적으로 섬유·가죽제품에서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연도가 있는데 이는 섬유직물에 대한 高關稅로 야기된 것이다(<附表 1> 참조). 교역재 전체로 보면 1990년 당시 단순평균 관세율은 11.4%로 가중평균 관세율 7.3%보다 약 4.1% 높았으며 1994년에는 이들 평균관세율이 각각 8.3%, 5.5%로 하락하여 단순평균이 가중평균치보다 약 2.8% 정도 높았다. 마찬가지로 중공업에서도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관세율이 1990년에 각기 10.7%, 7.8%에 달하여 단순평균 관세율이 2.9% 정도 높았고 1994년에는 이들 관세율이 각각 7.0%, 5.5%에 이르러 단순평균이 가중평균보다 1.5% 높았다. 경공업에서는 단순평균 관세율이 가중평균 관세율보다 더욱 높아서 그 차이가 1990년에는 약 3.5%(13.1%, 9.6%)에 달하였고 1994년에 이르러서야 그 격차가 1.7%(10.5%, 8.8%)로 줄었다. 前述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입비중이 큰 품목은 原料 및 中間材이고 관세율구조상 이들 품목에 대한 關稅率은 低率이므로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관세율은 이와 같이 단순평균 관세율을 밀돌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이들 두 평균 관세율의 간격은 근래에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예외: 광산품, 기타제조업, 일반기계). 따라서 수입구조가 같은 기간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이러한 관세율 차이의 축소는 第2次 關稅率引下豫示制의 施行으로 加工度別 差等關稅率體制가 완화되었음을 示唆한다. 환언하면 예시제의 改編原則은 <表 III-1>에서 보았듯이 가공단계가 비슷한 품목간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가공단계별 관세율의 간격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관세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거나 소비재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평균관세율의 격차는 감소한다.

율 사이의 간격이 점차로 좁혀져 교역재 전체로 보면 그 격차가 1990년 4.1%에서 1994년 2.8%로 감소하였다는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중공업과 경공업에서도 이들 두 평균관세율 사이의 격차가 각각 2.9%, 3.5%였는데 그후 1994년에는 1.5%, 1.7%로 줄어들게 되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물에서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관세율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1990년 당시 농림수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각각 13.2%, 4.1%에 달하여 9.1%의 큰 격차를 보이다가 1994년에 다소 줄어 7.2%(13.5%, 6.3%)에 이른다. 음·식료품도 같은 경우인데 다만 그 격차가 같은 기간에 8.5%에서 6.5%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가중평균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은 결국 수입이 별로 없는 특정 식생활관련 품목에 高關稅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농림수산물이나 음·식료품에 관한 이러한 관세율 적용이 결국 수입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작물에서 1994년 당시 8.8%의 격차가 나타나고 제당은 10.1%, 기타 식료품은 6.4%의 관세율 차이가 나타난다(<附表 2> 참조)¹⁵⁾. 한편 빵, 과자 및 국수류(-5.3%)와 음료품(-5.6%), 섬유직물(-2.4%) 등에서는 단순평균 관세율이 가중평균 관세율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당해 產業內에서 수입액이 많은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고 이 또한 수입제한을 위하여 관세율이 높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공업에서는 석탄제품과 통신기기(-1.1%, 1994년), 자동차(-0.9%)가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원유 등 원자재의 수입비중이 큰 석유제품(3.6%, 1994년)과 화학비료 및 농약(3.7%)에서 관세율 격차가 크며 광산품에서는 관세율 차이의 연도

15) 담배는 韓美諒解覺書로 零의 協定關稅率이 부과되고 있는데 1994년에는 시거나 담배엑스나 에센스에는 41%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 변화가 騰落이 심한데 이는 割當關稅의 影響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종이·나무, 전기 및 전자기기, 운송기계 등에서 관세율 격차가 상당히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완제품의 수입비중이 큰 일반기계, 정밀기기에서는 가중평균과 단순평균 관세율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금속제품과 기타 제조업체품도 이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섬유·가죽제품에서는 관세율 격차가 逆轉되어 가중평균 관세율이 단순평균 관세율보다 약 0.3% 정도 웃돌고 있는데 그 이유는 中間材인 섬유직물 등에 대한 調整關稅의 賦課에 기인한다¹⁶⁾.

지금까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IO25 交易財產業에 대하여 輸入額으로 加重平均한 관세율과 品目數로 單純平均한 관세율의 차이와 그 변화를 검토하였다. 原料에 대한 低率의 關稅率로 가중평균한 관세율은 단순평균 관세율보다 대체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평균관세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 평균관세율 사이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어 關稅率引下豫示制가 관세율체계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단순평균과 가중평균한 관세율의 격차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수입구조가 관측기간 동안에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결국 加工度別 關稅率 隔差가 예시제의 시행으로 감소하면서 이들 두 평균관세율의 차이도 함께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율인하예시제가 진행되면서 加工度에 따른 差等關稅率體制도 어느 정도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均等關稅率體制와 關稅率 隔差(產業別)

전술한 대로 관세율인하예시제에서는 加工段階에 따라 原材料는 1~3%, 非競爭 一次加工品은 5%, 기타 中間材 및 消費財는 8%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加工度別 差等關稅率體制를 유지하였다. 그 결과

16) 실제로 섬유직물에서는 1994년 단순평균 관세율이 8.9%로서 가중평균 관세율 11.3%에 비하여 2.4% 정도 낮다.

석유·석탄제품, 제1차금속과 같이 원료의 비중이 큰 산업은 低率의, 消費財 比重이 높은 산업은 高率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음·식료품과 섬유·직물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관세율은 中心關稅率 8%를 밑돌고 있다. 이 밖에도 섬유직물(면·모직물), 합판, 나무젓가락, 설탕과 같이 만성적으로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의 관세율은 높고 반대로 할당관세 대상품목의 관세율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관세정책이 加工度에 따라서 차별적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加工段階內에서는 產業間 關稅率 隔差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관세율체제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均等關稅率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관세를 기준하여 균등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는 각종 彈力關稅나 減免 등으로 산업별 관세율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關稅率構造上 加工度에 따라 관세율이 변화하므로 상이한 산업간의 관세율이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시행되면서 실제로 산업별 관세율 격차가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지를 검토하려면 상기의 문제들로 야기되는 차별적인 관세율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전술한 대로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가중평균 관세율과 단순평균 관세율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고 이들 관세율의 격차가 작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상당히 유효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관세율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데 5년이라는 짧은 관측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산업에서 輸入構造가 크게 바뀌어 관세율에 있어서 上記의 변화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은 加工度別 關稅率 隔差가 감소하여 이들 平均關稅率의 隔差도 함께 감소한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第2次 豫示制의 시행 이후 加工度에 따른 差等關稅率體制가 어느 정도 약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關稅率豫示制는 가공도에 의한 차별적인 관세율체제의 완화와 합

계 산업별로도 均等關稅率體制를 추구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相異한 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균등한 관세율을 적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두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첫번째 방식은 한국은행의 IO405 産業分類를 기준으로 하여 관세청의 HS品目別 자료를 구분하고 이에 의거하여 교역재 전체와 중공업 그리고 경공업에 속하는 산업들의 관세율 平均值와 標準偏差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두번째 방식은 관세율이 실제로 부과되는 품목단위, 즉 9천개에 달하는 HS 10단위 품목에 부과된 品目別 關稅率을 한국은행 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관세율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첫번째 방식이 수입액을 가중한 평균관세율에 입각한 접근방식이라면 두번째 방식은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는 輸入單位의 관세율에 기초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두번째 방식의 경우 전체 관측품목수가 9천개를 상회하므로 IO25 산업의 관세율 분포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첫번째 방법에 의존하여 第2次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진행중이던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産業別 關稅率隔差의 變化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아래 <表 III-16>과 같다.

<表 III-16> 産業別 實行關稅率 平均과 標準偏差의 變化推移
(1990~1994)

(單位：%)

	平均			標準偏差			最高값			最低값		
	交易財	重工業	輕工業	交易財	重工業	輕工業	交易財	重工業	輕工業	交易財	重工業	輕工業
1990	10.5	9.0	13.6	7.0	3.8	8.0	46.5	17.1	46.5	0	0.0	0
1991	10.9	9.1	14.4	7.7	3.8	9.3	50.2	18.9	50.2	0	0.0	0
1992	10.2	8.1	13.8	7.5	3.0	9.1	46.4	18.3	46.4	0	0.1	0
1993	9.1	6.9	12.4	7.5	2.7	9.0	51.6	21.0	51.6	0	0.0	0
1994	8.7	6.4	12.1	8.0	2.8	10.0	53.8	31.2	53.8	0	0.1	0

註：관측 품목수는 교역재가 312개, 중공업 162개, 경공업은 96개이며 교역재는 농림수산물, 광산품과 서비스업 교역재를 포함한 수치임.

資料：한국은행 및 관세청 전산자료.

<表 III-16>에서 첫 항목인 평균관세율은 각각 교역재 전체, 중공업 그리고 경공업에 속하는 IO405 交易財產業의 實行關稅率을 單純平均한 數值이다. <表 III-1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시행되던 1990년 이후 관세율이 평균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중공업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¹⁷⁾. 最高關稅率은 1992년을 제외하고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1993년 51.6%, 1994년 53.8%에 달하는데 이는 국수류에 적용된 관세율이며 1991년은 소주, 1990년과 1992년에는 청량음료에 부과된 관세율로 대상 품목이 모두 경공업제품이었다. 중공업에서 최고관세율이 적용된 수입품은 주철강(1990년), 음향기기(1991, 1992년), 철도차량(1993, 1994년)이었다. 最低關稅率은 벼, 양돈, 담배, 출판 등에 부과되었는데 이들 중 담배와 출판은 국가간 협상에 따른 것이었다.

산업별 관세율 격차의 변화에 있어서는 평균관세율과는 달리 중공업과 경공업이 각기 매우 다른 양상을 띤다. 均等關稅率體制로의 移行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의 분포에 있어서는 위의 標準偏差項目에서 보듯이 교역재 전체로 그 편차가 1990년 7%에서 1994년 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경공업에서는 관세율의 標準偏差가 1990년 당시 8%에서 그 후 2% 정도 증가하면서 전체 교역재의 분포를 증가시키는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에 중공업에서는 關稅率 隔差가 1990년 당시 3.8로 그 편차가 매우 작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도 약 1%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환언하면 중공업에서는 관세율 평균과 產業間 關稅率 隔差가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표준편차가 1994년에는 2.8에 불과하다. 그러나 輕工業에서는 第2次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실시중이던 1990~1994년 사이에 단순평균 관세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데 비하여 偏差는 10%에 달하고 그 추세도 증가하

17) 전술한 대로 수입비중이 큰 원료 등에 대한 低率의 關稅率로 <表 III-16>에 나타난 산업별 관세율의 단순평균은 수입가중 관세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는 양상을 띤다.

이는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단위, 즉 HS 10단위 品目別 關稅率을 단순평균한 관세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 <表 III-17>과 <表 III-18>은 약 9천개를 상회하는 수입품목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라 산업별로 구분하고 각종 統計指標를 분석한 표이다¹⁸⁾. 우선 <表 III-17>에 나타난 관세율은 <表 III-15>에서 논의되었던 단순평균 관세율이다¹⁹⁾.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交易財의 평균관세율은 약 3% 떨어졌는데 중공업의 관세율이 평균 약 3.7% 인하여 경공업의 2.6%보다 더 빠르게 인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1994년 당시 중공업의 평균관세율(7.0%)은 경공업(10.5%)보다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이들 두 산업간의 관세율 격차도 증가하는 양상을 띤다.

한편 HS품목을 기준으로 한 산업별 관세율의 標準偏差도 IO405 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교역재 전체로 본 관세율 격차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輕工業內 산업간의 관세율이 分岐하고 있는데 기인하며 중공업내 산업간의 관세율은 낮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標準偏差가 경공업에서는 2.8이나 증가하여 1994년 당시 10.6에 달하는 반면 중공업에서는 1이 감소하여 같은 해에 그 편차가 3.3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關稅率引下豫示制로 평균 관세율은 대체로 인하되고 있는 데 비하여 산업간의 관세율 격차에 있어서는 중공업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경공업은 증가하고 있어 均等關稅率體制의 의미가 경공업에서 탈색되고 있다²⁰⁾.

18) 관세청의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행관세율이 108% 이상인 품목이 매년도 4개 내지 8개가 있다. 이들 제품의 기본관세율은 8% 미만이고 조정관세에도 해당되지 않아 조정관세율의 最大值가 국내외 가격차인 농수산물을 제외한 上記 품목은 統計分析에서 제외하였다.

19) IO405 산업의 관세율이 비록 輸入加重值이기는 하지만 이를 교역재와 중공업 등으로 또 다시 단순평균한 관세율은 HS품목을 기준한 단순평균 관세율보다 높을 수 있다.

20) HS품목을 기준한 관세율의 最大, 最小値와 해당산업은 <附表 3> 등에 나타나 있다.

<表 Ⅲ-17> 産業別 實行關稅率의 單純平均과 標準偏差의 變化推移
(1990~1994)

(單位: %)

	單純平均			標準偏差			最高값			最低값		
	交易財	重工業	輕工業	交易財	重工業	輕工業	交易財	重工業	輕工業	交易財	重工業	輕工業
1990	11.4	10.7	13.1	6.3	4.3	7.8	71.9	71.9	53.9	0	0	0
1991	11.3	10.5	13.2	6.4	4.4	7.8	98.7	98.7	76.9	0	0	0
1992	10.3	9.3	12.3	6.6	4.3	8.2	107.4	107.4	84.5	0	0	0
1993	8.9	7.7	11.3	7.4	3.6	10.0	104.6	93.1	100.0	0	0	0
1994	8.3	7.0	10.5	7.7	3.3	10.6	103.7	103.7	103.3	0	0	0

註: 1. HS 10단위 기준의 실행관세율로 관측 품목수는 연도별로 변화하는데 1990년과 1994년 수치는 <表 Ⅲ-18>에 나타나 있음.

2. 관측품목은 농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실행관세율이 108% 미만인 품목만을 포함하며 교역재는 농림수산물, 광산품과 서비스업 교역재를 포함한 수치임.

資料: 한국은행 및 관세청 전산자료.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으로부터 야기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表 Ⅲ-18>과 같다. 우선 경공업의 경우, 음·식료품에 속하는 수입품목들에 부과되는 단순평균 관세율이 1990년에 이어서 1994년에도 평균 18%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그 標準偏差는 대략 14에서 17로 상승하였다. 이 밖의 경공업에서는 평균관세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특정 산업내에서 수입품간의 관세율격차는 1994년 당시 의복 및 장신품(3.6)과 가죽 및 모피제품(4.5)에 힘입어 섬유·가죽제품이 3.5를 유지하고 있을 뿐 다른 산업은 관세율 標準偏差가 7 내지 9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공업의 경우 각 산업에서 단순평균 관세율이 하락하고 있다. 동시에 요업·토석과 금속제품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서 관세율 격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이 특히 강한 산업이 석유·석탄제품과 수송기기이다. 이들 두 산업의 最高關稅率은 대략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附表 2>에 있는 IO75 산업을 기준으로 하여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광산품도 8%의 最高關稅率

을 유지하여 광산품내 수입품목간의 편차도 2.5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농림수산품의 경우 음·식료품과 마찬가지로 평균관세율이 상승하면서 당해 산업에 속하는 수입제품간의 관세율 격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²¹⁾.

<表 Ⅲ-18> 1025産業 實行關稅率의 單純平均과 標準偏差의 變化推移 (1990~1994)

(單位:개, %)

	品目數		單純平均		標準偏差		最高값		最低값	
	1990	1994	1990	1994	1990	1994	1990	1994	1990	1994
농림수산물	428	479	13.2	13.5	12.8	16.5	121.2	102.9	0	0
광산품	151	152	4.3	2.7	2.5	1.3	12.9	8.2	0	0.5
경공업	2,693	2,800	13.1	10.5	7.8	10.6	53.9	103.3	0	0
음·식료품	614	696	18.0	18.1	13.8	16.7	53.9	103.3	0	0
섬유·가죽제품	1,352	1,350	12.0	8.0	3.5	3.5	18.4	50.2	0	0
종이·나무제품	350	364	11.2	8.1	3.3	6.9	15.6	102.6	0	0.4
기타제조업 제품	377	390	10.8	8.1	4.5	9.1	16.7	74.0	0	0
중공업	5,582	5,717	10.7	7.0	4.3	3.3	71.9	103.7	0	0
화학제품	2,071	2,121	11.4	7.6	3.2	2.5	19.8	62.9	0	0
석유·석탄제품	80	82	9.0	5.9	7.0	2.5	54.5	8.2	0	0
요업·토석제품	295	289	12.3	8.2	2.8	4.9	22.0	41.2	0	0
제1차 금속제품	563	577	8.3	5.9	4.7	2.5	54.5	18.1	0	0
금속제품	360	372	11.2	7.3	3.6	4.1	19.0	75.5	0	0
일반기계	944	952	10.8	6.9	4.9	2.3	71.9	42.8	0	0
전기 및 전자기기	625	614	10.3	6.8	5.1	5.1	69.7	103.7	0	0
정밀기기	425	470	10.3	6.8	3.5	3.2	18.7	50.5	0	0
수송기기	219	240	8.9	5.1	6.9	3.6	26.6	10.4	0	0
교역재 전체	8,903	9,198	11.4	8.3	6.3	7.7	71.9	103.7	0	0

註: 교역재에는 서비스업과 기타 수입품이 포함되는데 농림수산품을 제외한 관측품목은 실행관세율이 108% 미만인 품목으로 구성됨.

資料: 관세청 전산자료.

21) 관세율의 연도별 相關關係를 검토해 보면 교역재 전체의 관세율은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0.63(8,417)의 相關係數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중공업과 경공업은 각각 0.37(5,314), 0.67(2,551)의 상관계수를 지녀 중공업의 관세율이 이 기간 동안에 빠르게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1988년 관세율개편 당시 전체 공산품의 64.8%에 해당하는 품목이 중간재, 완제품, 소비재의 구분 없이 中心關稅率 8%의 적용을 받아 均等關稅率體制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관세율에다가 非定期的인 彈力關稅를 감안한 실제 관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공업과 중공업내에서의 관세율 격차는 각기 매우 다른 양상을 띤다. 다시 말하면 균등관세율체제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실행관세율은 관세율의 분포를 측정하는 標準偏差에서 보듯이 그 편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관세율은 이 동안에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彈力關稅制度가 主要原因으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공업에서의 잦은 탄력관세가 문제시되는데 당해 산업관세율의 標準偏差가 약 2~3 정도 증가하면서 전체 교역재에 있어서의 關稅率分布를 散在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반면에 중공업에서는 관세율격차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편차도 약 1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공업에서는 관세율 평균과 산업간 관세율 격차가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표준편차가 1994년 당시에 3.3(HS품목 기준)에 불과하여 關稅率引下豫示制의 기본원칙이 중공업에 상당히 잘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공업에서는 第2次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실시중이던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평균관세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 비하여 편차는 10.6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음·식료품에 대한 高關稅와 음·식료품, 섬유직물(면직, 모직, 기타편직물), 나무제품(기타 목제품, 목재가구)에 대한 잦은 조정관세로 야기된 것으로 그 결과 전체 품목의 關稅率 分布도 증가하였던 것이다.

라. 産業別 關稅負擔率

수출품에 투입되는 수입원료는 關稅還給制度에 의하여 납부된 관

세를 되돌려 받는다. 따라서 각 산업의 실제 관세부담률은 수입품이 中間材로써 수출에 투입되는 비중과 관세율에 의하여 결정된다²²⁾. <表 III-13>에서 살펴보았듯이 관세환급제도로 국내산업의 平均 實質 關稅負擔率은 1995년 당시 약 3.2%에 불과하며 이는 실행관세율 4.4%보다 1.2% 정도 낮은 수치이다. 이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실질부담률을 살펴보려면 각 산업의 수입품이 수출용 수입중간재로 사용되어 환급되는 관세액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 이 작업은 한국은행의 1990年과 1993年 產業聯關表에 나타난 輸入誘發係數行列의 行, 즉 수입중간재가 각종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율과 관세청의 관세율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한 관세환급 규모를 산업별로 추정하면 각 산업의 환급비율이 도출된다(수입액 대비). 수입품의 환급비율을 추정하는 과정은 張槿鎬·金珍洙(1997)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 결과만을 논의하는데 일반적으로 輸入財에 부과된 관세율과 수출용 中間材로서의 使用度가 높을수록 그리고 당해 수입물품에서 소비재 비중이 적을수록 환급률은 높을 것이다.

<表 III-19>는 한국은행의 IO25 產業別로 實行關稅率과 還給率 그리고 關稅負擔率을 나타낸 표이다(輸入額 對比).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교역재에서 1990년 실행관세율은 7.3%에 달하였고 推定還給率은 1.8%로 실제로 우리나라 수입산업이 관세를 부담한 비율은 5.5%였다²³⁾. 그 후 關稅率引下豫示制로 1993년 실행관세율은 5.6%로 감소하였는데 환급률도 이에 따라서 1.5%로 인하되어 實際負擔率은 4.1%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공업에서는 실제부담률이 5%에서

22)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것은 관세환급제도로 인한 관세부담을 누가 지불하는가 하는 문제, 즉 關稅의 歸着(tariff incidence)이 아닌 산업별 실질 관세부담액이다.

23) 여기서 산출된 관세부담률은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관세청 전산자료에 의거한 수치로 <表 III-13>에 나타난 「관세연감」상의 關稅負擔率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6%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조정관세의 부과로 같은 기간에 음·식료품과 종이·나무제품의 관세율이 인상되는 등 경공업의 實行關稅率은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추정환급률이 2%나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특히 환급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섬유·가죽제품에서 환급비중이 많이 감소하였다(6.7%→4.5%).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第V章에서 논의하겠지만 경공업에서는 소비재의 수입증가로 수입액에 대비한 환급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서 實質負擔率이 자연히 증가한 것이다.

한편 중공업의 實際負擔率은 1990년 당시 6.3%였으나 1993년에는 4.3%로 감소, 경공업의 부담률 증가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같은 기간에 중공업의 實行關稅率이 7.8%에서 5.9%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負擔率도 같은 비율로 하락하였던 것이다. 중공업에서는 中間材 輸入依存度가 하락하고 관세율도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률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는 환급비중이 큰 전기 및 전자기기에서의 환급률이 1.6%에서 2.4%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²⁴⁾.

본고에서 추정된 환급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1993년 당시 實質關稅負擔率은 경공업이 6.6%로 중공업의 4.3%보다 높고 경공업내에서도 소비품이 주종인 음·식료품(8.6%), 종이·나무제품(6.7%), 기타제조업(7.0%)에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원료에 해당하는 광산물과 석유제품에서는 관세율도 낮고 부담률도 낮다. 중공업의 경우 요업·토석제품(6.5%), 일반기계(6.3%), 금속제품(5.9%)의 순으로 관세부담률이 높다.

기타 제조업을 제외한 경공업과 농림수산품의 경우 1990년에 이

24) 輸出主種目인 화학, 섬유·가죽, 전자기기에서 높은 환급률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데 이 밖에도 음·식료품의 還給比重이 큰 것은 본고에서 이용된 推定方法이 消耗財인 음·식료품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제 음·식료품의 환급비중은 이보다 낮으리라는 예상이다.

<表 III-19> 主要 交易財產業 關稅率, 還給率, 關稅負擔率의 變化推移
(輸入品 基準)

(單位: 億원, %)

1025產業	1990					1993				
	關稅 徵收 額	關 稅 率	推定 還給 額	還 給 率	實質 關稅 負擔 率	關稅 徵收 額	關 稅 率	推定 還給 額	還 給 率	實質 關稅 負擔 率
농림수산물	1,319	4.1	296	0.9	3.2	2,168	5.5	394	1.0	4.5
광산품	2,680	4.1	804	1.2	2.9	1,445	1.3	380	0.3	1.0
경공업	6,014	9.6	2,911	4.6	5.0	8,282	9.2	2,358	2.6	6.6
음·식료품	2,128	9.5	619	2.8	6.7	3,086	11.1	685	2.5	8.6
섬유·가죽제품	2,467	11.1	1,490	6.7	4.4	2,905	9.1	1,425	4.5	4.6
종이·나무제품	1,047	7.2	145	1.0	6.2	1,771	7.6	199	0.9	6.7
기타제조업제품	372	10.5	39	1.1	9.4	520	7.7	49	0.7	7.0
중공업	25,896	7.8	4,975	1.5	6.3	25,569	5.9	6,872	1.6	4.3
화학제품	6,197	9.9	2,249	3.6	6.3	6,053	7.6	2,397	3.0	4.6
석유·석탄제품	644	3.2	93	0.5	2.7	605	2.3	194	0.7	1.6
요업·토석제품	667	10.1	121	1.8	8.3	604	8.6	149	2.1	6.5
제1차 금속제품	2,594	5.6	691	1.5	4.1	2,794	5.0	901	1.6	3.4
금속제품	599	10.4	64	1.1	9.3	568	7.0	92	1.1	5.9
일반기계	8,505	10.6	551	0.7	9.9	6,629	6.8	522	0.5	6.3
전기 및 전자기기	3,992	6.1	1,040	1.6	4.5	5,444	5.9	2,250	2.4	3.5
정밀기기	1,641	9.2	92	0.5	8.7	1,666	6.0	124	0.4	5.6
수송기기	1,056	4.1	75	0.3	3.8	1,208	3.1	244	0.6	2.5
교역재 전체	35,909	7.3	8,986	1.8	5.5	37,464	5.6	10,004	1.5	4.1

註: 추정환금액은 환급을 신청한 수출기준이며 교역재 중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추정치임.

資料: 張權鎬·金珍洙,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어서 1993년 당시에 부담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공업은 全産業에서 부담률이 감소하였다. 관세부담률이 감소한 산업에서는 실행관세율도 감소하였고 섬유·가죽제품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는 實質關稅率이 증가하면 관세부담률도 증가, 實質的 關稅負擔에

는 實行關稅率의 영향이 환급률보다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附表 3>에 제시된 1993년 IO75 交易財産業의 관세율 등을 1990년 數値로 差減하여 얻어지는 변화율을 검토하면 알 수 있다. <表 III-20>에 나타난 산업별 평균 실행관세율은 1990년과 1993년 사이에 약 1.2% 감소하였는데 이에 따라 관세부담률은 약 1% 감소하고 환급률은 약 0.3% 하락하였다(IO75 交易財産業 기준). 한편 關稅負擔率의 변화와 여타 變數와의 相關關係를 살펴보면 부담률은 환급률의 변화와 약 0.04의 單純相關係數(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를 나타내고 있으나 實行關稅率의 變化와는 0.94의 관세부담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환급률과 관세율 사이에는 약 0.37의 相關關係係數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標準偏差에서 보듯이 관세환급제도로 인하여 實質 關稅負擔率의 産業別 隔差는 關稅率 隔差보다 작다. 한편 1990년과 1993년 사이에 관세율이 크게 떨어진 품목은 의복 및 장식품(14.8%→9.6%)으로 약 5.2% 정도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서 실질부담률도 약 5% 정도 하락하였다(14.5%→9.5%). 推定還給率이 크게 떨어진 품목은 섬유직물(8.1%→5.1%)로서 약 3% 하

<表 III-20> 關稅(負擔)率과 還給率 變化의 平均 및 標準偏差
(1990~1993)

(單位: %)

	平 均	標準偏差	最 高 값	最 低 값
關 稅 率	-1.21	2.10	-5.2 ¹⁾	4.1 ³⁾
還 給 率	-0.25	0.69	-3.0 ²⁾	1.2 ⁴⁾
關稅負擔率	-0.98	1.96	-5.0	4.0 ³⁾

註: 1. 상기 수치는 1993년 수치에서 1990년 수치를 차감한 변화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의미함(IO75 교역재산업 기준).

- 1) 의복 및 장식품
- 2) 섬유직물
- 3) 시멘트 및 시멘트제품
- 4) 자동차

資料: 한국은행 및 관세청 전산자료.

락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관세율은 1.5%만 떨어져 부담률은 실제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자동차의 환급률은 약 1.2% 상승하였으며 시멘트 및 시멘트제품은 관세율(4.1%)과 부담률(4.0%)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5. 關稅率構造의 國際比較

가. 平均關稅率 比較

第2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관세율구조는 輸入財 性格과 國產化 可能性에 따라 差等化되어 있다. 즉, 非競爭原料는 1%, 競爭原料는 3% 그리고 국산화관련 품목 중 一次加工品은 5%, 이외 중간재 및 공산품은 8%의 관세율을 원칙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表 III-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재료의 평균 명목관세율은 2.8%로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약 1% 내외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源材料와 中間材(完製品) 사이의 關稅率 隔差가 4.2%(4.3%)에 달하여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작고 중간재와 완제품과의 격차는 0.1%에 불과하다.

따라서 명목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비록 우리나라 완제품 관세율이 선진국보다는 약간 높지만 원료와 중간재에 대한 高關稅로 평균적인 실질보호, 즉 平均 實效關稅率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表 III-25>에서 제시되지만 수입액을 加重한 平均關稅率은 선진국의 경우 원료는 1% 이하, 그리고 중간재는 3~4%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완제품의 輸入加重 關稅率은 名目關稅率과 큰 차이가 없어 완제품에 대한 實效保護가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原料와 中間材에 대한 관세율이 높고 수입규모와 상관없이 均等關稅率體制를 유지하여 완제품에 대한 실효보호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할당관세와 관세환급제도를 감안하면 그다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며 최소

한 우리나라에서 수출용 原資材에 대한 關稅負擔이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表 Ⅲ-21> 加工段階別 關稅率構造의 國際比較(單純名目平均)

(單位: %)

	韓 國	美 國	日 本	E C	캐나다
원재료	2.8	1.8	1.4	1.6	2.6
중간재	7.0(4.2)	6.1(4.3)	6.3(4.9)	6.2(4.6)	6.6(4.0)
완제품	7.1(4.3)	6.9(5.1)	6.4(5.0)	7.0(5.4)	8.1(5.5)

註: 1. 우리나라 관세율은 1994년 기준이며 외국 관세율은 1988년 수치임.

2. () 안의 수치는 원재료와의 관세율 격차를 의미함.

資料: 재무부 관세국, 「관세율정책의 운용실적 및 방향」, 1991.
관세청 전산자료.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관세부담에 큰 영향을 주는 關稅還給制度의 國際的 利用度(輸出額 對比)를 살펴보면 일본의 0.003% 그리고 대만의 0.11%에 비하여 우리나라 還給比重은 1995년 당시 1.3%에 달한다(<表 Ⅲ-22> 참조). 그 이유는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과 낮은 국산화를 때문이며 또한 제도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自由貿易地區(free trade zone), 保稅工場 등의 關稅猶豫制度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은 1988년 이후 관세율 5% 이하의 수입재에 대한 환급을 불허하고 있다(張權鎬·金珍洙, 1997). 이는 수출을 희생하더라도 中間材産業을 육성하겠다는 대만 정책당국의 의지로 해석되며 이러한 정책변화는 물론 대만이 지속적으로 貿易黑字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關稅率引下豫示制의 도입 당시 中間材産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경쟁 일차가공품을 제외한 중간재와 완제품 사이의 관세율 격차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현재는 그 차이가 0.1%에 불과한 것은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89년 당시 석유를 제외한 공산품에서 완제품의 單純平均 法定關稅率은 7.1%

<表 III-22> 平均 實行關稅率과 選給比率의 國際比較

(單位: %)

	韓國(1995)	美國(1995)	日本(1993)	臺灣(1994)
실행 관세율	4.4	3.1	3.6	4.9
환급 비율	1.2	0.09	0.003	0.11

註: 환급비율은 수출액 대비 환급액임.

資料: 張槿鎬, 金珍洙, 「관세 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7.

인 반면 半加工品の 平均 法定關稅率은 6.9%에 달하여 양 품목간의 격차가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單純平均 實行關稅率로 보면 완제품과 반가공품의 관세율이 각각 5.4%, 5.9%로 반가공품에 대한 보호정도가 오히려 더 강하였고 加重平均 實行關稅率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附表 4> 참조)²⁵⁾. 다음 章에서 검토하겠지만 일본의 中間材産業이 상당한 대외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輸入中間材에 대한 이러한 ‘相對的인’ 高關稅率이 完製品産業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일본의 예로써 우리나라 중간재 관세율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 이동을 촉발하는 요인들 중에서도 상대가격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에서 특정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여타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간재산업에 관하여 대만과 일본이 취한 관세율정책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 關稅率構造 比較

주요 경쟁국가의 산업별 관세율구조는 다음 <表 III-23>에 나

25) <附表 4>에 나타난 法定關稅率은 一般稅率과 讓許稅率을 고려한 관세율이며 實行關稅率은 最惠國(most favored nation: MFN)의 輸入에 근거한 세율이다. 한편 <附表 4>에서 보듯이 輸入加重한 實行關稅率은 완제품에 2.4%, 반가공품에는 2.8%가 적용되었다.

타나 있다. 대만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입원자재와 중공업제품에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대신 경공업제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중공업제품의 수입비중이 높은 까닭에 평균관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다. 이들 국가는 특히 섬유·의류와 신발·가죽 등의 경공업제품과 농산물에서 두터운 關稅障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선 上記의 산업들이 미국의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서 취약산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당해 산업이 勞動集約的이며 政治的 考慮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농산물(26.3%)과 신발·가죽(21.3%)에서 특히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중공업에서는 석유와 화학제품을 제외하고는 평균관세율이 1% 내외로 상당히 낮은 관세장벽을 유지한다²⁶⁾. 한편 미국은 섬유·의류(12.5%)에, 대만은 농산물(17.6%), 섬유·의류(10.3%), 수송장비부문(14.0%)에 대한 관세장벽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關稅率引下豫示制의 실시 이후 산업에 대한 차별없이 6~7%의 평균관세율을 중심으로 관세율체계가 운용되고 있고 그 결과 섬유·의류(7.8%)와 신발·가죽(7.3%)의 관세율은 선진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特異하다. 다만 농산물에서는 UR협상으로 예외 없는 관세화가 진행되면서 관세율(17.1%)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광물·비료에서도 선진국보다 높은 명목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액을 加重하면 원재료에 대한 낮은 세율로 수입원재료가 集中·使用되는 목재·가구, 원유·석유, 철강·비철금속제품의 관세율이 낮아지고 수송장비에서는 선박과 항공

26) <表 III-23>에 나타난 자료는 재정경제원 자료로 자료의 基準年度가 불분명하다. 한편 日本 관방조사통계부가 발표하는 1993년 産業聯關表(延長表)에 따르면 日本의 實行關稅率은 交易財 平均이 2.7%, 重工業 1.1%, 輕工業 7.2%, 農林水產品 2.1%, 鑛山品 1%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飲·食料品이 10.8%, 纖維·가죽製品이 9.6%, 化學製品이 3.2%의 순으로 關稅率이 높다.

기에 대한 低關稅率로 전체 關稅障壁도 낮게 나타난다²⁷⁾.

<表 Ⅲ-23> 主要 産業 名目關稅率의 國際比較

(單位: %)

	韓 國	競爭國 關稅率				
		日 本	美 國	E U	臺 灣	中 國
광물·비료	5.8(3.1)	1.1(0.4)	3.2	—	3.9	32.0
농산물	17.1(11.3)	26.3(15.0)	7.7	—	17.6	28.8
섬유·의류	7.8(7.2)	8.7(10.6)	12.5	9.4	10.3	33.6
신발·가죽	7.3(6.0)	21.3(9.8)	9.3	8.7	6.2	14.5
목재·가구	6.3(4.7)	2.3(1.7)	2.6	4.1	5.0	16.3
화학제품	7.8(7.5)	3.0(2.6)	5.8	5.7	4.0	28.8
원유·석유제품	6.5(4.7)	7.2(3.0)	2.2	4.7	8.0	21.8
철강·비철금속	7.0(5.5)	2.4(1.4)	5.0	3.9	6.3	13.5
일반기계	7.7(7.8)	0 (0)	4.1	2.7	5.5	22.7
전기·전자	7.8(7.8)	0.2(0.1)	4.4	4.7	7.3	9.0
수송장비	5.9(2.8)	0.1(0)	3.6	5.4	14.0	32.9
기타	7.8(7.9)	1.7(1.0)	4.9	—	5.4	34.0
전체	9.0(6.6)	9.0(4.0)	6.4	5.6	8.6	23.0

註: () 안은 수입가중평균 실행세율임.
資料: 재정경제원 내부자료, 1997.

이 밖에도 관세율인하예시제로 점차적인 均等關稅率體制를 구축한 결과, 농산물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산업별 관세율 격차는 주요 경쟁국보다도 상당히 낮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산업별로 差等關稅率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들은 동일한 산업내에서도 細部品目別로 관세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表 Ⅲ-23>과 같이 産業大分類에 의한 품목별 평균관세율로 차등관세율체계를 가늠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 까닭은 비록 선진국이 特定品目에 대하여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特定産業內

27) 그러나 前述한 대로 음·식료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과 조정관세의 운용으로 상당수 경공업제품의 實行關稅率은 中心 名目關稅率 8%보다 높다.

에서도 다양한 기본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低率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평균관세율이 대체로 낮기 때문이다.

<表 Ⅲ-24> 美國 主要 工產品 平均關稅率과 適用範圍(1989)

(단위 : %)

品 目	關 稅 率	
	平 均	範 圍
식료품	4.5	0 ~ 338.0
담배	13.8	0 ~ 1,775
목재 및 코르크	4.1	0 ~ 20.0
섬유 및 의류	16.9	0 ~ 42.4
신발류 및 여행용품	11.9	0 ~ 61.8
화공품	5.3	0 ~ 27.1
일반기계	3.2	0 ~ 11.0
전기기계 및 부분품	3.6	0 ~ 25.0
운수장비	3.7	0 ~ 25.0

註 : GATT Tariff Study 분류기준으로서 수입가중 평균관세율임(MFN수입액).

資料 : GATT,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U.S.A.*, November 1991.

한 예로서 미국에서는 섬유 및 의류의 輸入加重 平均關稅率이 1989년 당시 16.9%이지만 품목별 관세율의 분포는 0%에서 42.4%에 걸쳐 있으며 세부적으로도 면화(0%~5%), 섬유제품(0%~28.2%), 의류(0%~34.6%), 직물(0%~42.4%) 등에 적용된 관세율의 범위는 다양하다. 이러한 경향은 중공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전기기계 및 부분품의 경우 평균관세율(수입가중)이 3.6%에 불과하지만 품목별 관세율은 0%에서 25%(전기설비 및 부품)까지 적용하고 있고 화공품(0%~27.1%), 운수장비(0%~25.0%), 일반기계(0%~11.0%) 등 여타 산업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신발류(61.8%), 설탕(135.8%), 시계(151.2%), 코코아 및 조제품(338%) 등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가공담배에는 무려 1,775%에

달하는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선진국에서의 加工度別 關稅率 隔差(工產品 基準)를 살펴보면 아래 <表 III-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輸入加重 관세율과 單純平均 관세율간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데 가공도별 격차는 수입액 가중치를 기준으로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²⁸⁾. 괄호 안의 관세율은 <表 III-21>에서도 예시된 單純平均 關稅率인데 이를 輸入額을 加重平均한 관세율과 비교하면 가중평균에서는 수입규모가 큰 품목에 대한 低關稅로 원재료, 중간재 그리고 완제품간의 관세율 격차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單純平均値에서는 중간재의

<表 III-25> 主要 先進國 工產品 關稅率(1988年 基準)

(單位：%)

	原 料	半 製 品	完 製 品
전체선진국	1.3 (1.6)	4.0 (6.2)	6.5 (7.1)
E C	0.2 (1.6)	4.2 (6.2)	6.9 (7.0)
미 국	0.2 (1.8)	3.0 (6.1)	5.7 (6.9)
일 본	0.5 (1.4)	4.6 (6.3)	6.0 (6.4)

註：제시된 수치는 수입가중 관세율이며 () 안은 단순평균 관세율을 의미함.

資料：재무부 관세국, 『외국의 관세제도』, 1992.

관세율이 대략 6%로서 완제품의 관세율 7%에 비하여 약 1% 정도 밑돌고 있으나 加重値에서는 중간재 관세율이 2% 내지 3% 정도 하락하여 완제품과 2% 내지 3% 정도의 관세율 격차를 보인다. 원재료에 대하여는 선진국들이 1% 이하의 수입가중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단순평균 관세율보다 1.5% 정도 낮은 관세율을 부과한다.

이렇듯 수입가중시 관세율 격차가 상승하는 현상은 결국 완제품

28) 여기에 제시된 관세율은 法定稅率로서 실제 수입액에 부과되는 實行關稅率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에 관한 實效關稅率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편 差等關稅率體制의 維持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체제인가에 대한 논란도 논란이지만 차등세율로 야기되는 政治的 壓力과 政策의 恣意性이 선진국 관세율정책, 특히 경공업에 대한 관세율정책에 상당히 개재되어 있다는 인상이 짙다. 이 밖에 대만도 차등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關稅障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석유제품, 수송장비를 제외한 중공업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6. 關稅率引下豫示制의 評價

가. 要約 및 問題點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 이후 제1, 2차 關稅率引下豫示制를 시행하여 평균관세율을 인하하고 均等關稅率體制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관세율정책의 개편 배경에는 우선 과거 우리정부가 傾斜關稅率體制를 유지함으로써 조립가공형 산업구조의 발달을 촉진하고 정부주도의 보호정책으로 資源配分의 非效率性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對內外的 公正競爭體制를 마련함으로써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자율적인 민간경제의 발전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認識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관세율정책은 수입재에 대한 관세율인하와 均等關稅率體制를 통하여 內需産業의 競爭力을 향상시키고 政府主導의 産業保護政策에서 탈피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이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원운용을 이룩하는 데 개편방향의 초점이 모아졌다.

개편원칙은 加工段階와 國產化 可能性에 따라 差等化하여 비경쟁 원료는 1%, 경쟁원료는 3% 그리고 국산화곤란 품목 중 일차가공품은 5%, 이외 중간재 및 공산품은 8%의 관세율을 원칙적으로 적용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가보호와 國內自立度の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종료된 1994년 우리나라 平均 名目關稅率은 7.9%로 수렴되어 선진국의 평균관세율보다 대략 1~2% 정도 높고 平均 實行關稅率(關稅徵收額/輸入額)은 4.4%(1995년)에 불과하여 미국·EC(3.3%), 일본(3.4%), 대만(4.9%)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이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均等關稅率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아직 가공도에 따라서 차별적인 관세율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동일한 가공단계에서는 產業間 關稅率 隔差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관세율체제는 특이한 체제이다. 특히 중공업에서는 관세율인하예시제 시행 이후 관세율이 상당히 하락하여 HS10單位 關稅率을 기준으로 하면 중공업의 單純平均(加重平均) 關稅率은 1990년의 10.7%(7.8%)에서 1994년 7.0%(5.5%)로 하락하였고 중공업 관세율간의 標準偏差도 1990년 당시 4.3에 불과하였는데 1994년 3.3까지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 關稅率引下豫示制의 기본 원칙이 중공업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경공업 내에서는 음·식료품에 대한 高關稅와 국수류, 면직물, 설탕 등에 관한 잦은 조정관세로 第2次 關稅率引下豫示制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HS品目の 單純平均 關稅率(加重平均)은 1994년 당시에 10.5%(8.8%)에 달하여 중공업보다 약 3.5%(3.3%) 정도 높은 평균관세율을 유지하였다. 특히 輕工業內에서의 산업간 관세율의 標準偏差는 중공업과는 달리 1990년 7.8에서 1994년 10.6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중공업 관세율의 표준편차 3.3에 비하면 3배를 웃도는 높은 數值이다.

加工段階別로 보면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인하예시제가 실시되기 직전인 1982년 당시 原料, 中間材, 完製品에 각각 약 11%, 22%, 26%의 關稅率이 부과되던 것이 1994년에는 原料에 平均 2.8%, 中間

材는 7.0% 그리고 완제품에는 7.1%의 명목관세율을 유지함으로써 關稅率 隔差가 상당히 줄어들었다²⁹⁾. 특히 중간재와 완제품간의 관세율은 0.1%밖에 차이가 없어 중간재와 완제품산업에 대한 차별적 관세율정책을 철폐한 바 있다. 中間材에 관한 한, 대만은 1988년 이후 관세율 5% 이하의 중간수입재에 대한 환급을 불허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89年 당시 석유를 제외한 공산품에서 완제품의 單純平均 實行關稅率은 5.4%인 반면 半加工品の 平均關稅率은 5.9%로서 반가공품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더 높았다. 資源移動을 촉발하는 요인 중에서도 상대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일본이 중간재와 완제품에 비교적 균등한 관세율을 적용한 것은 의미있는 정책이다. 환언하면 특정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여타 산업에 實質的 被害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差別的 保護政策으로 야기될 資源配分の 歪曲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관세율인하예시제 실시 이후 우리나라 대부분 산업에서 加重平均 關稅率과 單純平均 關稅率의 隔差가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비중이 큰 원자재에 저율의 관세가, 그리고 수입비중이 적은 소비재에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가중평균 관세율은 단순평균 관세율보다 낮게 마련이다. 그런데 교역재 평균관세율의 격차는 1990년 당시 4.1%에서 1994년 2.8%로 줄었고 경공업과 중공업에서도 그 차이가 각각 3.5%, 2.9%에서 1.7%, 1.5%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수입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이러한 상황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加工度別 關稅率의 차이가 감소하여 이들 두 平均關稅率의 격차도 같이 좁혀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第2次 關稅率引下豫示制의 施行으로 가공도에 따른 差等關稅率體制가 실제로 어느 정도 약화되었다는 결론이 가

29) 다만 非競爭 一次加工品에는 아직 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산업이 지불하고 있는 수입중간재와 원료에 대한 관세부담이 가볍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할당관세와 關稅還給制度를 감안한다면 加重平均 實行關稅率은 4.4%, 還給率은 1.2%로서 實質 關稅負擔率은 3.2%에 불과하다(1995년 기준)³⁰⁾. 한편 관세율인하에시제의 시행 이후 각종 탄력관세와 관세감면을 고려한 실행관세율로 산업별 관세율분포를 살펴보면 중공업의 관세율은 상당히 하락하여 1994년 당시 가중평균 관세율은 5.5%에 달하고 중공업내 대부분 산업의 관세율이 8%를 밑돈다. 반면 경공업제품은 음·식료품과 섬유직물, 목재가구 등에 대한 높은 關稅障壁으로 가중평균 관세율이 아직 8.8%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多數의 음·식료품에 대하여 30~40%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음·식료품 가공업에 대한 과중한 보호가 존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조정관세,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할당관세 등이 매우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들 탄력관세는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수입급증이나 해외가격의 급변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관세로써 여과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탄력관세는 法改正을 요하는 기본관세율의 조정과는 달리 한시적이고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탄력관세가 만성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치적 로비에 의하여 시행된다면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추구하고 있는 産業別 均等關稅와 관세인하의 기본원칙이 저해될 수 있다.

실례로 1997년 7월 현재 총 59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은 품목이 27개로 품목 수로는 전체의 46%에 달하고 특히 면·모직물, 혼합조미료, 합판 등

30) 關稅還給制度가 輸出用 輸入原材料에 대한 關稅免除이므로 內需産業에서의 관세부담은 상존할 수 있다.

과 최근에는 의류·완구 등 주로 경공업제품에 조정관세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경공업제품의 實行關稅率은 基本關稅率보다 높고 품목별로도 관세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관세율구조의 歪曲이 우려된다. 즉, 전술한대로 제2차 관세율인하예시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경공업에서의 單純平均 關稅率은 1994년 당시 10.5%에 달하고 더욱이 標準偏差는 1990년의 7.8 이후 1994년 10.6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중공업내에서의 單純平均 關稅率은 7.0% 그리고 產業別 偏差는 3.3에 불과하여 均等關稅率體制의 기본정신이 경공업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章에서 논의하겠지만 조정관세가 만성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관세율구조의 왜곡도 왜곡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현재 진행중인 中間材産業으로의 자원이동이 저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공업에 대한 산업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暫定關稅로써 이를 수용하고 한정적인 보호에 대한 政府意志를 확고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위한 보호가 基本關稅率의 변경으로 시행될 경우, 이러한 성격의 정부지원은 斜陽産業에 대한 永久的인 보호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국내기업이 생산적인 활동을 영위하기보다는 정치적 로비에 의한 현황 유지를 기대하기 쉽기 때문이다.

할당관세에 있어서도 3년 이상 만성적으로 조정세율 적용을 받은 품목이 29개에 달하고 있는데 할당관세의 규모를 보면 1997년 상반기에 품목수로는 74개, 관세지원액은 약 1,924억원으로 추정되어 關稅徵收額의 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할당관세가 수입규모가 큰 원료에 많이 적용됨을 감안하면 할당관세는 지원액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철광석, 원목, 원면 등에 대한 관세율 무세화 그리고 競爭原料와 中間材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가능한 한 기본관세율의 무세화

내지 인하가 바람직하고 이로써 완제품에 대한 實效關稅率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類似物品間, 加工度別 逆關稅를 시정하기 위한 할당관세를 기본관세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할당관세의 운용이 종종 수입품의 일정량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利權取得을 위한 치열한 로비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래에는 반덤핑관세의 부과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다만 반덤핑관세가 사양산업이나 독점산업에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특정국가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는 그 성격상 輸入制限 效果보다는 輸入轉換 效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뜻에서 정책당국은 동 제도의 적용후 그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수출시 공여되는 關稅還給을 고려한 關稅負擔率을 추정한 결과 交易財 全體로는 그 비율이 1993년 4.1%로 1990년 5.5%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경공업의 경우 같은 기간에 5.0%에서 6.6%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음·식료품과 종이·나무제품의 관세율 인상과 소비재수입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중공업의 實際負擔率은 1990년 당시 6.3%였으나 1993년에는 4.3%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환급률의 감소보다는 중공업 관세율의 하락에 있다. 한편 교역재 전체로 보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관세부담률의 변화는 관세율의 변화와 높은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으나 환급률의 변화와는 그다지 연관이 없는 듯하다. 다만 관세환급제도로 인하여 實質 關稅負擔率의 隔差는 產業別 關稅率 隔差보다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경공업에서 關稅負擔率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공업에서의 수출비중의 감소와 消費財 수입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음·식료품과 직물류, 목재가구 등에 대한 높은

조정관세로 경공업의 加重(單純)平均 關稅率이 8.8%(10.5%)에 달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도 경공업 수입품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斜陽産業에 대한 일시적 보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배려에서 보호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성격의 보호정책은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수입재의 價格上昇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移轉된다는 면에서 간편한 정책수단이기기는 하지만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보호가 慢性化됨으로써 效率的인 資源配分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관세율인하예시제로 음식료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공업제품에서 8%의 기본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이익집단의 생성으로 均등관세율 중심의 政策基調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구조조정을 위한 한시적인 暫定關稅의 운용을 제외한 여타 관세율 조정이 半永久化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관세율 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산업별로 差等關稅率體制를 유지하여 관세정책에 관한 한 관세의 對産業 中立性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수입액을 加重平均한 관세율에서는 이들 국가들이 원료에 1% 내외의, 중간재에 대하여는 완제품보다 2~3%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先進諸國은 細部品目에 있어서 基本關稅率의 品目別 隔差가 상당히 큰 대신 원재료와 중간재 수입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産業大分類에 따른 평균관세율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선진국들은 關稅還給制度도 크게 활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中間材의 國產化比率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다만 필요한 경우 保稅工場 등의 關稅免除政策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관세율이 1~2% 정도 선진국보다 높지만 관세환급제도의 운용과 原資材, 특히 中間材에 대한 높은 관세율로 實效關稅率은 선진국보다 높지 않다는 추측이다.

한편 관세율정책에 관한 UR협상의 합의내용은 1986년 당시 輸入

加重 平均關稅率을 3분의 1 이상 인하하되 인하방식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선택하고 讓許範圍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 이미 관세율인하예시제를 실시하여 協商稅率인 8.2% 이하로 평균관세율(7.9%)을 인하하였으므로 다자간 협상에 따른 關稅調和나 無稅化品目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품목이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UR 관세율협상으로 인한 수입자유화 조치의 혜택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에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부적으로 Quad, APEC合意 등 일련의 國家間 關稅率引下와 無稅化協商으로 야기될 수 있는 逆關稅現象을 막기 위한 기본관세율의 조정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농업에 관한 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아 관세화나 관세인하 그리고 市場接近物量에서 유예조치를 보장받았으나 이는 移行期間과 移行率에 관한 猶豫이며 궁극적으로는 단계적 무역자유화 조치에 대비한 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나마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運營實態의 評價

지금까지 關稅率引下豫示制로 인한 우리나라 關稅率構造의 特徵을 고찰하고 제2차 관세율인하예시제가 실시중이던 1990~1994년 사이에 조정관세와 관세환급제도를 감안한 實行關稅率과 關稅負擔率의 산업별 분포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평균관세율은 관세율인하예시제 시행 이후 약 16% 인하되었고 加工度別 關稅率 隔差도 많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서 實效關稅率도 하락하였고 특히 非競爭一次加工品(5%)을 제외한 중간재와 완제품의 명목관세율은 각기 7.0%, 7.1%로서 양 품목간의 관세율 격차가 0.1%밖에 되지 않아 적어도 명목적인 보호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중간재산업이 취약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中間材産業으로의 자원배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자원의 이동이 中間材와 完製品의 相對的

保護水準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특정산업을 위한 과도한 보호는 상대가격의 변화를 야기하여 餘他産業에 관한 實質的 被害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비록 원론적이지만 비효율적인 보호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심각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이를 사전에 충분히 認知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半加工品の 單純平均 實行關稅率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약간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물론 일본 완제품산업이 상당한 대외경쟁력을 가져 이와 같은 均等한 保護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차별적인 수입장벽이 결국 국내에서는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의미한다는 뜻에서 일본의 중간재산업이 완제품산업 못지않은 발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탄력적인 관세율정책을 운영하여 온 일본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실제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체에 따라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輸入加重 平均關稅率과 單純平均 關稅率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이들 관세율의 격차가 대부분의 산업에서 줄어들고 있다. 원자재에 대한 낮은 관세율로 단순평균 관세율이 가중평균 관세율보다 高率인 경향이 있는데 이들 두 관세율의 격차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만약에 수입구조가 이 기간에 격변하지 않았다면 加工度別 差等關稅率體制가 악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또한 관세율인하예시체가 종료된 1994년 당시 중공업 가중평균 관세율(關稅額/輸入額)은 5.5%에 불과한데 경공업의 관세율은 8.8%에 달하여 경공업제품의 관세율이 중공업제품보다 높은 편이다. 이 밖에도 중공업에서 産業別 關稅率의 偏差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4년에는 3.3%(HS10單位 基準)에 불과한 반면 경공업은 10.6%로 증가하여 豫示制의 기본원칙이 중공업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관세환급제도를 감안하면 1993년 당시 關稅負擔率은 중공업과 경공업이 각각 4.3%, 6.6%

로서 경공업의 관세율과 관세부담률이 중공업보다 높다. 이는 경공업에서 소비재 수입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공업의 관세율이 음·식료품에 대한 배려와 섬유직물 등 경공업제품에 대한 조정관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斜陽産業化되고 있는 경공업에 관한 보호는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취약산업에 대한 보호가 永久化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國內資源의 非效率的인 배분으로 歸着된다. 왜냐하면 사양산업에 대한 배려는 성장산업과 수출산업으로의 자원유입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수입에 따른 國內産業 被害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인 彈力關稅가 永久化되거나 정치적 로비에 의하여 시행된다면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추구하고 있는 산업별 均等關稅와 관세인하의 기본원칙이 저해될 수 있다. 1997년 7월 현재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조정관세의 적용을 받은 품목이 27개로서 전체 품목수의 46%에 달하고 특히 면·모직물, 혼합조미료, 의류·완구 등 경공업제품에 조정관세가 집중적으로 적용되어 경공업제품에서의 관세율구조의 歪曲이 우려된다. 이로 인하여 경공업에서의 單純平均 關稅率은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가 진행중이던 1990~1994년 사이에도 중공업 관세율을 약 3.5% 상회하는 10.5%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標準偏差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공업의 3배를 초과하는 10.6%에 달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지하다시피 産業支援을 위한 관세정책은 補助金에 비하여 次善의 政策이다. 다만 WTO협정에 따라 特定補助金이 금지 또는 상계되는 상황에서는 관세정책이 産業政策的 役割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斜陽産業에 대한 보호가 전술한 바와 같이 성장산업에 대한 '상대적 피해'를 의미한다는 뜻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관세율 인상은 제한적인 조치여야 한다. 만약 관세율 정책을 통한 구조조정

등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문이 있다면 限時的인 보호정책의 限界를 정부가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뜻에서 保護撤廢를 '豫示化'할 수 있는 暫定關稅가 바람직하다. 잠정관세를 통하여 정부가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지원하되 이러한 도움이 一回의 措置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향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비생산적인 로비활동에 의존하기보다는 실물경제 활동에 힘을 다할 것이다. 이 밖에도 가급적이면 慢性的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온 非競爭·競爭原料 關稅率의 기본관세율화와 逆關稅 對象品目에 대한 기본관세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關稅率引下豫示制가 輸入障壁을 약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均等關稅率體制의 도입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또한 中間材와 完製品 사이의 關稅率 隔差를 축소함으로써 국내자원이 中間材産業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취지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관세율정책의 변화는 정부정책의 對産業 中立성과 競爭促進政策을 위하여 바람직한 선회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관세정책의 많은 부분이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익집단에 의하여 地代追求를 위한 政治的 道具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찍이 均等關稅率體制를 도입한 것은 국가정책의 상당한 성취라고 평가된다.

그 이유는 第II章에서 논의한 대로 관세율정책은 外部效果가 존재하는 산업이나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산업이 制度的 非效率性으로 시장기능에 의하여 그 잠재력을 內在化할 수 없을 때 정당성이 존재하며 또한 信號效果를 동반할 때 관세율정책도 有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진입한 국가에서는 일차적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보호정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斜陽産業에 대한 被動的인 보호보다는 성장능력이 뛰어난 첨단산업에 대한 限時的인 지원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보호정책의 正當性이 존재한

다. 특히 WTO체제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技術進歩가 아니라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경쟁력 강화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경공업이 점차 대외경쟁력을 상실하면서 경공업의 보호를 위한 관세율이 교역재 평균관세율을 상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固着化됨으로써 成長主導産業로의 資源流入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진경제로의 도약이 高附加價值産業인 中間材나 기계 또는 기기산업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면 경공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결국 이들 산업에 간접적인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등관세율체제가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중간재산업의 성장에 일조할 수 있었다면 관세율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현행 균등관세율체제의 기초를 유지하는 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관세율구조는 수입재 성격과 국산화 가능성에 따라 加工度別로 差等化되어 있고 關稅還給制度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수입구조는 국내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가공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관세율구조와 여타 貿易障壁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傾斜關稅率體制와 수출지향적인 무역정책이 강조되어 완제품의 수입의존도는 낮고 原資材와 中間材의 수입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공조립형 산업구조의 발달을 시정하고 시장원칙에 따른 자율적인 산업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관세율인하예시제를 계기로 中間材와 完製品의 關稅率 隔差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 따라서 均等關稅率體制로의 進入과 관세율 인하가 시행된 지난 1983년을 前後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수입의존도와 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관세율인하예시제가 수입의존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바로 다음 章의 主題이다.

IV. 輸入構造의 變化와 關稅率政策

1. 概要

第Ⅲ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關稅率引下豫示制의 施行으로 평균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고 중공업에서 加工度別 關稅率 隔差도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中間材와 完製品 사이의 관세율 격차도 상당히 축소되어 적어도 名目關稅率로는 그 차이가 0.1%에 불과하다. 이는 중간재산업이 취약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향후에는 中間材와 完製品의 보호수준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국내자원이 중간재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誘引體制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食生活 관련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관세율이 인하되어 수입장벽이 완화되었고 산업간에는 均等關稅率體制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관세율정책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의 복지증대와 함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WTO체제의 성립 이후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무역경쟁에서 국내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밖에도 產業別 關稅率 隔差가 줄어들었으므로 자원배분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한 것이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특색인데 특히 중공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돋보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인 무역정책으로 수입재 성격과 국산화 가능성에 따라 관세율이 많이 差等化되어 있었고 關稅還給制度도 이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입구조도 국내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수입재의 가공도와 수출용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그 결과, 완제품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여 완제품의 輸

入依存度は 낮고 原資材와 輸出産業의 中間材 수입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關稅率引下豫示制의 시행으로 均等關稅率體制로의 진입과 관세율 인하가 단행된 지난 1983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입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물론 경제발전과 정부정책 그리고 국제무역질서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것이며 단지 關稅率引下豫示制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인하예시제의 실시를 전후한 우리나라 수입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관세율정책의 기본방향과 輸入依存度の 변화가 합치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관세율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율의 전반적인 인하 이후 우리나라 輸入依存度가 증대하였는지 그리고 中間材와 完製品 사이의 균일한 보호 또는 산업간 均等關稅率體制의 도입으로 국내자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동하였는지가 주된 검토대상이다. 本章에서는 1983년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시행된 이후 자료가 존재하는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나라 수입의존도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輸入障壁의 緩和, 效率的 資源配分, 그리고 中間材産業의 육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선진경제로의 도약에 앞서서 바람직한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本章의 목적이다.

2. 輸入依存度: 概念 및 現況

가. 産業構造의 變化

輸入依存度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현황과 변화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산업구조와 수입구조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입의존도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表 IV-1>은 한국은행의 「80-85-90년 接

續不變產業聯關表 作成概要』와 「1993년 產業聯關表(延長表)개요」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나라 산업비중과 貿易特化指數의 變化를 IO25 交易財產業 基準으로 재구성한 表이다¹⁾. 여기서 1980년 수치는 1990년 不變價格으로 환산한 값이며 1993년 수치는 아쉽게도 불변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經常價格으로 평가된 수치이다. 따라서 1993년은 당해연도의 환율과 국내가격으로 환산된 수치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1990년 수치를 감안하면서 산업구조의 變化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表 IV-1> 產業構造와 貿易特化指數의 變化推移(1980~1993)

(單位: %)

IO25品目	GDP比重			貿易特化指數		
	1980	1990	1993	1980	1990	1993
농림수산물	9.6	5.2	4.3	-45.9	-58.1	-66.6
광산물	1.0	0.5	0.5	-96.8	-98.0	-98.7
경공업	23.2	17.3	14.2	56.2	42.8	32.2
음·식료품	11.0	7.0	6.0	-33.2	-34.1	-40.1
섬유·가죽제품	9.1	6.8	5.1	79.4	70.2	64.3
종이·나무제품	1.8	2.0	2.0	12.1	-46.9	-60.0
기타제조업제품	1.2	1.5	1.4	54.3	56.0	34.1
중공업	20.8	32.3	33.4	-26.6	-12.5	0.5
화학제품	4.8	6.3	6.3	-24.1	-28.5	-11.8
석유·석탄제품	3.4	2.1	2.7	-80.7	-48.3	-26.8
요업·토석제품	1.5	1.8	1.9	47.9	-22.8	-20.8
제1차 금속제품	4.2	5.1	5.0	-0.4	-23.3	-11.1
금속제품	0.9	1.8	2.0	53.2	52.1	49.0
일반기계	1.4	3.8	4.1	-84.5	-46.5	-36.2
전기 및 전자기기	2.6	5.7	5.9	-6.3	21.5	25.1
정밀기기	0.3	0.4	0.4	-50.3	-50.6	-54.9
수송기계	1.7	5.1	5.4	-12.5	21.4	38.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2	6.2	7.9	-48.0	-34.1	-56.3
사회 및 개인서비스	3.6	2.6	2.7	8.9	14.3	4.2
기타	35.6	35.9	35.9	37.9	51.1	50.8
교역재 전체	54.6	55.3	53.0	-12.7	-7.0	-3.7
전산업	100.0	100.0	100.0	-5.4	-0.5	1.5

資料: 한국은행, 「80-85-90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 작성개요」, 1994.
 _____, 「1993년 산업연관표(연장표) 개요」, 1996.

1) 貿易特化指數는 (수출-수입)/(수입+수출)의 수치를 百分率로 표시한 指數로서 주로 특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추정하는 指標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產業間貿易(intra-industry trade)이 증가할수록 당해 指數는 하락하는 약점이 있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 中心産業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재편성되어 왔다. <表 IV-1>에서 보듯이 1980년에서 1993년 사이에 중공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2.6% 증가하고 경공업은 9% 감소하였는데 이는 不變價格으로 환산한 1980년과 1990년 사이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각각의 수치가 11.5%, -5.9%로 나타나 그 추세가 크게 다르지 않다. 품목별로는 농수산품이 5.3%, 음·식료품이 5%, 섬유·가죽제품이 4%씩 감소하고 중공업에서는 수송기계(3.7%), 전기 및 전자기기(3.3%), 일반기계(2.7%), 화학제품(1.5%)의 순으로 산업비중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석유·석탄제품을 제외한 전 중공업분야에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서 경공업제품의 貿易特化指數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종이·나무제품은 수입으로 특화되었다. 수출집약적인 섬유·가죽과 기타 제조업 제품도 특화지수가 감소하고 있어 경공업제품의 특화지수는 1980년 약 56에 달하던 것이 1993년에는 3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공업에서는 수출입이 균형을 이루면서 석유·석탄제품, 일반기계 등 상당수 산업의 貿易特化指數가 개선되었고 전기 및 전자기기(25), 수송기계(38)는 수출로 특화하였다. 반면 요업·토석제품과 제1차 금속에서는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고 있으며 정밀기기의 특화지수(-55)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선진국과 같은 경제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附加價値가 높은 中間材 또는 尖端産業의 육성을 필요로 한다면 일반, 수송기계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의 빠른 성장은 바람직한 현상이다(정밀기계 예외). 그런데 이와 반대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산업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수출도 수입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어 국내자원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이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공업에서의 對外競爭力을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경제성장에 있어서 일본경제와 같이 섬유나 음·식료

품 등 일부산업을 제외한 全産業에서 自給自足하는 産業模型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는 自給型보다는 경공업의 退步와 중공업의 躍進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또한 경제규모나 경제적 효율성으로 가늠할 때에 우리나라가 과연 일본식 經濟發展模型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실제로 그러한 성격의 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나. 輸入依存度の 概念

輸入依存도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자원이 수출품 생산 등 좀 더 효율적인 분야에서 활용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서 輸入自由化를 제시한 연구는 많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兪正鎬(1995)가 이를 국제 비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生産性 增大를 동반하지 않는 인위적인 輸入縮小나 國產化率 提高는 결국 수출감소라는 희생을 동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兪正鎬는 대만의 예를 들어 높은 수입의존도가 貿易赤字의 결정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수입을 통하여 절약된 자원이 수출생산에 투입될 때 대외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논한다. 本章에서는 兪正鎬(1995)의 논의를 기반으로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시행된 1983년을 前後하여 자료가 존재하는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나라 수입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兪正鎬(1995)의 數式을 빌려 생산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설명하면 아래 식 (1)로 표현된다.

$$Y + E = X + M \text{ 또는 } 1 + E/Y = X/Y + M/Y \quad (1)$$

여기서 Y , E , M , X 는 각각 國內需要, 輸出, 輸入, 國內生産을 의미하는데 上記 균형식은 Y 와 E 즉 국내수요와 해외로부터의 수요

의 합인 총수요가 국내생산이나 수입을 통하여 충족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재화 j 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j 의 수입의존도를 MD_j 라 하면, MD_j 는 다음의 식으로 표시된다.

$$MD_j = \frac{M_j}{Y_j} = \frac{M_j}{X_j + M_j - E_j}, \quad 0 < MD_j < 1 \quad (2)$$

만약 국내수요가 모두 수입으로 충족된다면 수입의존도는 1의 값을 갖게 되며 수입이 전혀 없다면 이는 0의 값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관세 등 산업보호정책을 무시한다면 이 수치가 높을수록 국내산업의 對外競爭力이 낮고, 반대의 경우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상기의 방식으로 작성된 수입의존도는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늘어서 產業內貿易(intra-industry trade)이 증가하면 그 수치가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문제점과 수출입액을 國內通貨로 환산할 때 換率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2), 3)}.

식 (1), (2)에 의하여 산출된 1993년도 우리나라 수입 및 수출의존도와 국내생산 자급도는 한국은행의 IO25 交易財產業別로 아래 <表 IV-2>에 나타나 있다. 이 표는 한국은행의 『1993년 產業聯關表(延長表)』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는데 수입의존도 등 각종 指標를 계산하기 앞서서 關稅와 其他 輸入附加稅를 수입과 국내수요에서 제거하였다. 이는 물론 수입과 국내수요에 동일한 크기의 관세가 포함되면 수입의존도가 人爲的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
- 2) 한편 輸出偏向의 무역정책도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면 上記 식에서 분모를 감소시켜 수입의존도의 상승을 유발한다. 수입의존도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는 兪正鎬(1995)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3) 前述한 대로 본고에서는 환율의 영향을 감안하여 不變價格으로 환산된 1980, 1985, 1990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한다. 이는 환율에 따라 수출입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는 한편 환율이 價格競爭力을 상승 또는 하락시킴으로써 수출입이 증감하는 것을 不變價格表로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관세 등의 무역장벽으로 수입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은 수입의존도에 반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表 IV-2>의 수입의존도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서 0의 값에 접근할 수도 있지만 농림수산물과 같은 품목에서 보듯이 강력한 보호정책으로 인하여 수입이 억제될 수도 있으므로 보호정책의 강약을 고려하면서 수입의존도를 해석하여야 한다.

<表 IV-2>를 살펴보면 산업별로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를 알 수 있다. 한 예로 농림수산물의 경우 國內需要 對比 輸出寄與度가 약 2.7%로서 총수요는 국내수요의 102.7%에 달하는데 국내생산은 89.2%에 불과하므로 그 차이를 수입(13.7%)으로 보충하여야 한다(이때 약 0.2%의 재고가 증가). 이러한 방식으로 수출기여도에 100%를 합하면 국내수요에 대비한 총수요 비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총수요의 몇 퍼센트가 국내생산 또는 수입으로 충족되는지를 <表 IV-2>에서 보여주고 있다.

수입의존도를 논하기 앞서서 産業別 生産自立度, 즉 國內生産比率(國內需要 對比)을 대략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一次産業 특히 鑛山品(22.5%)에서 輸入依存型임을 알 수 있다. 경공업의 경우 섬유·가죽(159%)과 기타제조업(111%)에 힘입어 생산이 국내수요보다 약 12% 정도 많아 수출지향적이지만 종이·나무제품(88%)에서는 국내수요의 상당 비중을 수입에 의존한다. 이렇듯 광산품을 포함한 원자재산업이 對外依存的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천연자원이 빈약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중공업은 최근 수출입이 균형을 이룰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정밀기계와 일반기계의 국내생산 의존도는 각각 59%와 83%에 불과하여 기계류 산업은 아직 수입에 편향되어 있다. 生産自立도가 높을수록 輸出寄與度(輸出額/國內需要)도 높아서 섬유·가죽제품은 75%, 전기 및 전자기기는 50%, 수송기계는 27% 등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생산 자립도가 100%에 미치지 못하여도

수출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 중공업에 많아 수출입을 통한 가
공무역이 중공업에서 특히 발달하여 있고 이에 따라서 産業內 貿易
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表 IV-2> 1993年 主要 交易財産業 輸入依存度 및 輸出,
生産自立度(國內需要 對比)

(單位: %)

	輸入	中間 需要	消費	投資	輸出	國內 生産	實行 關稅率
농림수산물	13.7	18.5	4.8	3.2	2.7	89.2	5.5
광산물	79.0	79.1	-0.3	-	0.5	22.5	1.3
경공업	11.8	16.8	5.9	7.7	23.1	111.6	9.3
음·식료품	7.9	14.8	4.2	-	3.4	96.1	11.1
섬유·가죽제품	16.3	20.6	7.2	9.0	75.2	158.6	9.1
종이·나무제품	16.9	19.5	6.8	0.9	4.2	87.9	7.6
기타제조업제품	11.0	6.4	17.0	29.2	22.3	111.3	7.7
중공업	20.8	20.3	6.8	30.8	21.0	100.2	5.9
화학제품	19.6	21.9	5.5	-	15.5	95.7	7.6
석유·석탄제품	17.4	18.1	11.0	-	10.1	91.8	2.3
요업·토석제품	5.8	5.2	20.9	-	3.8	98.3	8.6
제1차 금속제품	17.4	16.5	-	-	13.9	95.7	5.9
금속제품	7.4	7.6	9.6	4.4	21.5	114.6	7.0
일반기계	31.7	22.6	13.5	40.8	14.9	82.5	6.8
전기 및 전자기기	29.9	37.9	7.4	15.2	50.0	121.6	5.9
정밀기기	59.1	40.2	31.7	85.1	17.2	59.1	6.0
수송기계	12.2	16.5	0.7	13.6	27.2	115.2	3.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3	7.7	0.6	-	1.2	96.9	5.4
사회 및 개인서비스	7.1	3.0	8.9	-	7.7	100.6	6.2
기타	1.9	4.2	1.1	-	5.9	104.1	0.7
교역재 전체(서비스산업 제외)	20.4	23.1	6.1	29.7	19.0	98.7	5.6
전산업	12.3	17.2	3.4	10.3	12.6	100.5	5.6

註: 1. 상기의 수치는 재고증감을 제외한 국내수요 대비 의존도임.

2. 실행관세율은 관세 징수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실제부담률을 의미함.

資料: 관세청 전산자료.

한국은행, 「1993년 산업연관표(연장표) 개요」, 1996.

다. 需要部門別 輸入依存度

특정산업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해당산업의 對外競爭力이 낮아 수입에 의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의존도가 自由화된 무역정책의 결과일 수 있다. 한 예로서 <表 IV-2>에서 음·식료품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종이·나무제품보다 약 9% 낮다. 두 산업의 수출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음·식료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음·식료품의 수입의존도가 낮은 이유는 이 제품에 적용된 높은 貿易障壁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음·식료품의 실행관세율은 1993년 당시 11.1%로 종이·나무제품보다 약 3.5% 정도 높고 추후에 논의되었지만 實效關稅率도 종이·나무제품이 음·식료품보다 낮아 국내 자원이 음·식료품산업으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수입의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종이·나무제품의 관세율이 낮은 이유는 당해 제품이 주로 中間需要(國內需要의 약 89%)에 사용되는 반면 음·식료품은 最終消費에 65%가 투입되는 까닭에 우리나라 관세율구조상 종이·나무제품을 사용하는 산업의 중간재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제품에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렇듯이 수입의존도는 특정산업의 대외경쟁력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에 적용된 名目關稅率 등의 각종 무역장벽, 그리고 해당제품의 중간재 비중과 이에 대한 보호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實質的 保護의 크기, 實效保護率에 의하여 결정된다. 第三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관세율체제는 수입재가 쓰여지는 용도, 즉 原料와 消費財 그리고 輸出用과 內需用原料에 따라 관세율과 관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났었고 관세율인하예시제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환언하면 수입원료에 대하여 低關稅率이 적용되고 수출용 수입원료에는 관세가 환급되는 상황에서는 中間需要의 輸入依存도가 높고 소비에 있어서 수입의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수입의 수입의존도를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논하는 것보다는 이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수입의존도와 그 변화추이를 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國內需要를 中間需要, 消費, 投資로 나누어 수요부문별로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를 살펴보는데 이에 앞서서 총수입의존도 MD_j 와 부문별 수입의존도와의 관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수요 Y_j 는, 재고증감을 무시하면 중간수요, 소비와 투자의 합이므로 이를 각각 N_j, C_j, I_j 로 표시하면, 식 (2)에서의 수입의존도 MD_j 는 아래의 식 (3)으로 다시 쓸 수 있다.

$$MD_j = \frac{M_j}{Y_j} = \frac{M_j}{N_j + C_j + I_j} \quad (3)$$

兪正鎬와 마찬가지로 중간수요, 소비, 투자 가운데 국내생산으로 충족되는 부분과 直接輸入에 의해 충족되는 부분을 각각 d 와 m 의 상첨자로 구별하면,

$$\begin{aligned} N_j &= N_j^d + N_j^m \\ C_j &= C_j^d + C_j^m \\ I_j &= I_j^d + I_j^m \end{aligned} \quad (4)$$

로 쓸 수 있으며, 총수입액 $M_j = N_j^m + C_j^m + I_j^m$ 이므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MD_j = \frac{N_j^m + C_j^m + I_j^m}{N_j + C_j + I_j} = \frac{N_j^m}{N_j} \frac{N_j}{Y_j} + \frac{C_j^m}{C_j} \frac{C_j}{Y_j} + \frac{I_j^m}{I_j} \frac{I_j}{Y_j} \quad (5)$$

여기서 $N_j^m/N_j, C_j^m/C_j, I_j^m/I_j$ 는 각각 中間需要, 消費, 投資의 輸入依存度이다. 그런데 $N_j/Y_j, C_j/Y_j, I_j/Y_j$ 는 각 수요부문이 국내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므로 이들의 합은 1이다. 그러므로 총수입의존도 MD_j 는 이 세 수입의존도의 加重平均値로 표시할 수 있으

며 총수입의존도는 이들 부문별 수입의존도와 함께 당해 제품의 성격 또는 국내 消費性向에 따라 결정된다⁴⁾. 이와 같이 총수요의 수입의존도는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문의 수입의존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한 예로 광산품이나 1차금속과 같이 중간수요가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중간수요의 수입의존도가 바로 총수입의존도이다.

상기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表 IV-2>에 나타난 수요부문별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업을 제외한 交易財의 평균 총수입의존도는 20.4%이며 산업별 평균 수입의존도는 광산품이 79%, 중공업 20.8% 그리고 농수산물 13.7%와 경공업 11.8%이다. 주지하다시피 서비스업을 제외한 교역재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中間需要의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아서 약 23%를 상회하는데 이는 消費財의 수입의존(6.1%)의 3.8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기타제조업, 요업·토석 그리고 금속제품에서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投資部門에서의 평균 수입의존도는 29.7%로 중간수요보다 더 많이 해외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는데 이는 주로 중공업(30.8%), 특히 정밀기계(85.1%), 일반기계(40.8%)에서 야기된 결과이다. 중공업의 경우, 중간재 비중이 74%에 달하여 중간재와 總內需의 수입의존도가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⁵⁾. 한편 경공업의 총수요는 주로 중간재(54%)와 소비재(45%)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두 가지 需要에 의하여 내수의 수입의존도가 결정되는데 中間材에서 나타나고 있는 높은 수입의존도는 소비재에서의 낮은 수입의존도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경공업에서는 평균 總輸入依存度가 11.8%로 중공업(20.8%)보다

4) 단, 中古品이 消費에서 반입되는 경우(광산품) 등 특수한 경우 部門別 輸入依存度の 加重平均이 總輸入依存도와 다를 수 있다.

5) 投資財와 消費財가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당시 각각 15%, 11%에 달한다.

9% 정도 낮다. 그러나 中間材를 기준으로 하면 중공업의 수입의존도는 20.3%로 경공업(16.8%)보다 약 3.5% 정도 높을 뿐인데 이는 중공업에서 投資財의 수입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산업별로는 정밀 및 일반기계, 전자기기, 화학제품의 中間材 수입의존도가 중공업의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경공업에서는 섬유·가죽, 종이·나무제품이 동일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서 화학제품을 제외한 이들 산업의 總輸入依存度도 중공업 또는 경공업 평균 수입의존도를 추월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수입구조에서는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까닭에 中間材 수입의존도가 전체 수입의존도의 高低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消費依存度는 경공업과 중공업이 6%선에서 크게 차이가 없으나 투자에서는 예상한 대로 중공업, 특히 기계류의 수입의존이 심하다(30.8%). 이 밖에도 우리나라 경공업의 輸出競爭力이 뛰어난에도 불구하고 중간재의 수입의존도는 일본의 7.8%보다 월등히 높은 16.8%에 달하며 이는 기타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 경공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⁶⁾.

3. 輸入依存度の 年度別 變化：資料分析

가. 背景

지난날 우리나라는 국내산업 보호와 수출위주의 무역정책으로 완제품에는 高關稅率을, 수입원자재에는 低關稅率을 적용하고 또한 수출용 수입원자재에는 관세를 還給하는 제도를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中間需要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소비에 있어서 수입의존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關稅率引下豫示制

6) 추후에 논의되겠지만 일본의 경우 경공업의 國內生産이 國內需要의 92.7%에 못 미치지만 총수입의존도는 8.9%에 불과하며 中間需要의 수입의존도는 이보다 낮은 7.8%이다(消費需要는 10.33%).

시행으로 평균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고 加工度別 關稅率 隔差도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中間材와 完製品 사이의 관세율 격차도 상당히 축소되었는데 이는 중간재산업이 취약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향후에는 중간재와 완제품의 보호수준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국내 자원이 中間材産業으로 이동할 수 있는 誘引體制를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와 같이 關稅率引下豫示制의 시행으로 수입장벽이 완화되고 均等關稅率體制가 도입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증대와 함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 그리고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이 증진되도록 관세율정책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여태까지 輸出主力産業이었던 경공업의 산업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경공업제품의 수입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 경공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혹자는 일본의 自給自足型 經濟模型을 주창하기도 한다. 그러나 先進國型 經濟構造로의 진입은 附加價値가 높은 기술 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의미하며 생산성 증대를 동반하지 않는 人爲的인 輸入縮小나 國產化率 提高는 결국 성장산업으로의 자원유입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감소를 촉발할 수 있다. 兪正鎬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로써 대만의 예를 들어 높은 수입의존도가 貿易赤字의 결정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수입을 통하여 절약된 자원이 수출생산에 투입될 때 대외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현존하는 관세율정책을 위시한 각종 貿易障壁의 존속여부에 대한 논의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1983년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시행된 이후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나라 수입의존도가 부문별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輸入障壁의 緩和, 效率的 資源配分, 그리고 中間材産業의 育成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이들 요인과 관세율정책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 總內需 輸入依存度の 變化

<表 IV-3>은 한국은행의 『80-85-90年 接續不變産業聯關表 作成概要』와 『1993年 産業聯關表』를 이용하여 국내수요 수입의존도(수입액/국내수요)의 변화추이를 제시한 표이다⁷⁾.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不變價格으로 수입의존도를 산출하였으나 1993년은 經常價格에 의하여 계산된 수치이므로 그 당시 환율이 국내통화를 過小 評價하면 수입의존도는 실제치보다 높을 것이다. 한편 産業內貿易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수입의존도도 이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1990년과 1993년 수입의존도를 비교하여야 한다.

농림수산품의 수입의존도는 1980~1990년 사이에 겨우 1.2% 증가하였고 이후 1993년까지는 0.7% 증가하여 수입의존도의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는 농림수산품에 대한 두꺼운 貿易障壁으로 수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⁸⁾. 반면 광산품에서는 같은 기간에 높은 수입증가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원자재로 쓰여지는 광산품의 낮은 實行關稅率(1993년 1.3%)을 반영하고 있다. 경공업의 수입의존도는 1980년 당시 7%로 중공업의 29.7%에 0.25배도 못 미쳤으나 그 후 1990년에 이르러서는 3.2%, 이후 0.9% 정도 증가하여 1993년 당시 11.8%에 달하였다. 한편 중공업에서는 수입의존도가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6.6%나 감소하였고 이후 추가로 2.4%나 떨어져서 1993년에 20.7%를 기록, 경공업과의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환언하면 重工業과 輕工業의 수입의존도 격차는 1980년 당시 약 23%에 달하였으나 그 간격이 1990년에는 12.2%, 1993

7) IO75 産業을 기준으로 한 部門別 수입의존도의 변화는 <附表 1> 등에 나타나 있다.

8) 1990~1994년 사이에 農林水産品の 平均關稅率은 4.1%에서 6.3%로 증가하는데 각종 비관세 장벽과 수입제한적인 고관세 정책은 이 數値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평균관세율이 農水産物의 輸入障壁을 誤導할 수 있다.

년에는 8.9%로 좁혀지고 있다. 광산품과 경공업에서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중공업에서는 그 의존도가 많이 하락하여 교역재 전체의 수입의존도는 큰 변화없이 약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表 IV-3> 國內需要 輸入依存度の 年度別 變化

(單位：%)

IO25品目	國內需要 輸入依存度			
	1980	1985	1990	1993
농림수산물	11.8	11.2	13.0	13.7
광산품	70.7	72.5	73.9	79.0
경공업	7.0	7.7	10.9	11.8
음·식료품	4.9	4.3	8.1	7.9
섬유·가죽제품	7.8	10.8	13.4	16.3
종이·나무제품	13.7	14.8	16.2	16.9
기타제조업제품	13.7	9.8	9.4	11.0
중공업	29.7	26.1	23.1	20.7
화학제품	21.0	23.0	21.8	19.6
석유·석탄제품	9.1	13.4	22.6	17.4
요업·토석제품	6.1	8.0	8.0	5.8
제1차 금속제품	21.3	19.8	19.7	17.4
금속제품	17.8	15.5	8.4	7.4
일반기계	69.4	45.6	40.0	31.7
전기 및 전자기기	39.1	37.2	29.8	29.9
정밀기기	66.0	65.7	59.7	59.1
수송기계	42.5	19.8	10.4	12.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4	0.7	2.5	4.3
사회 및 개인서비스	4.1	4.6	5.3	7.0
기타	3.2	2.6	2.0	1.9
교역재 전체	21.0	20.3	20.9	20.4
전산업	13.2	12.6	12.9	12.2

註：총내수 수입의존도 = 수입액/국내수요

資料：한국은행, 『80-85-90년 집속불변산업연관표 작성개요』, 1994.

_____, 『1993년 산업연관표』, 1996.

輕工業內에서는 기타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 수입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음·식료품과 종이·나무제품은 1993년 당시까지 대략 3% 정도 늘어났으며 특히 섬유·가죽제품의 수입의존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5.6%, 이후 2.9%의 증가율을 보여 輸入依存이 深化되고 있다.

그러므로 섬유·가죽제품에서 수입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소비에 있는지 혹은 중간재에 있는지를 차후 수요부문별 수입의존도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공업에서는 1993년을 기준으로 하면 석유·석탄제품을 제외한 全産業에서 수입의존이 약화되었고 특히 일반기계(37.6%), 수송기계(30.3%), 금속제품(10.4%), 전자기기(9.1%)에서 수입의존도가 비약적으로 하락하여 중공업 平均 輸入依存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1990년을 기준으로 검토하면 그 하락폭이 각각 29.4%, 32.1%, 9.4%, 9.3%에 달하여 같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도 수입의존도의 하락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석유·석탄제품의 경우 海外原油價格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이 주로 원료로 사용되므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그 수입의존도도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대로 우리나라 産業 中心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이전되어 왔다. 技術集約的인 加工組立産業(일반기계, 수송기계, 전기·전자기기)의 성장과 이에 대비한 경공업의 萎縮은 수입의존도 변화에도 반영되어 중공업에서는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경공업에서는 그 규모에 있어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關稅率引下豫示制로 중공업의 加重平均 關稅率이 비교적 빠르게 인하되고(1990년 7.8%→1994년 5.5%) 경공업 관세율(9.6%→8.8%)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

도 불구하고 경공업제품의 수입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⁹⁾. 이러한 수입의존도의 변화가 어떤 부문에서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 使用用途에 따른 수입의존도 변화의 추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中間材 輸入依存度の 變化

<表 IV-4>는 中間需要에서의 輸入依存度($N_i^m/N_i = \text{中間需要 輸入額}/\text{中間材 國內需要}$)의 變化를 제시한 표이다. 交易財 全體로 보면 中間材에서의 수입의존도는 1980년 당시 24.2%에서 1993년 23.1%로 1.1% 감소하여 수입의존도의 변화가 크지 않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기타 제조업제품을 제외한 第1次 産業과 경공업의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간재 외에 소비와 투자재를 포함한 國內需要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경공업에서는 중간수요의 수입의존도가 1980년 12.6%였던 것이 1990년에는 2.4%, 1993년의 경우 1.9%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섬유·가죽제품의 中間材輸入이 국내수요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5.1%, 1993년에는 무려 4.7% 증가하여 21%에 접근하면서 경공업에서 가장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그 뒤를 이어서 종이·나무제품과 음·식료품의 수입의존도 심화되고 있는 반면 기타제조업제품은 수입의존도가 오히려 7.9%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공업의 경우, 中間材의 수입의존도가 1980년에 25.1%이던 것이 1990년까지는 2.7%, 이후 1.9% 감소하여 1993년 당시 20.3%에 달한다. 이로써 경공업과의 중간재 수입격차가 약 12.5%에 이르던

9) 한편 單純平均 關稅率은 <表 III-15>에서 보듯이 경공업이 같은 기간에 13.1%에서 10.5%로, 중공업은 10.7%에서 7.0%로 하락하여 인하의 폭은 비슷하나 역시 경공업 관세율이 중공업보다 약 3.5% 정도 높다.

1980년에 비하여 1990년에 7.4%, 1993년에는 그 차이가 3.4%로 줄어들었다.

<表 IV-4> 主要 交易財 産業 中間材 輸入依存度の 變化推移

(單位: %)

IO25品目	中間材 輸入依存度			
	1980	1985	1990	1993
농림수산물	14.8	15.1	18.3	18.5
광산물	71.5	73.1	76.3	79.1
경공업	12.6	13.4	15.0	16.9
음·식료품	13.9	11.9	15.2	14.8
섬유·가죽제품	10.8	13.6	15.9	20.6
종이·나무제품	14.1	16.2	17.7	19.5
기타제조업제품	14.3	9.9	4.5	6.4
중공업	25.1	24.5	22.4	20.3
화학제품	24.9	26.1	23.9	21.8
석유·석탄제품	10.8	15.5	23.0	18.1
요업·토석제품	6.0	7.4	7.2	5.2
제1차 금속제품	21.6	19.4	19.5	16.5
금속제품	19.0	15.6	8.6	7.6
일반기계	51.4	33.1	27.8	22.5
전기 및 전자기기	41.8	44.4	38.6	37.9
정밀기기	63.4	55.3	40.2	40.2
수송기계	52.1	30.3	14.2	16.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	1.0	4.6	7.7
사회 및 개인서비스	11.4	7.7	1.8	3.0
기타	8.9	6.5	4.2	4.2
교역재 전체	24.2	23.8	23.4	23.1
전산업	19.7	18.7	17.7	17.2

註: 중간재 수입의존도 = 중간재 수입액/중간재 국내수요

資料: 한국은행, 『80-85-90년 계속불변산업연관표 작성개요』, 1994.

_____, 『1993년 산업연관표』, 1996.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반기계, 정밀기기, 수송기계 등 機械類産業에 있어서의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20%를 넘는 비약적인 감소를 이

루었으며 이로써 技術集約的인 산업에서 中間材의 국산화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속제품의 수입의존도도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에 비하여 화학제품과 전기 및 전자기기, 이 밖에도 요업·토석 및 제1차 금속과 같은 1次加工品の 수입의존도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輸入依存度の 변화로 볼 때 總需要와 中間需要는 매우 밀접한 正의 相關關係에 있다. 특히, 兩 需要部門에서 동일하게 경공업의 수입의존도는 상승하는 대신 중공업의 수입의존도가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기술집약적인 기계류산업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총수요가 중간수요와 소비, 투자의 加重平均值이므로 국내수요는 중간수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중간수요가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74%를 상회하는 중공업에서는 중간재 수입의존도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¹⁰⁾. 경공업에서도 중간수요의 비중이 1980년 43.4%에서 그 이후 10% 이상 증가하면서 1994년 57%, 1993년에는 약 54%에 이르고 있어 중간수요가 내수의 수입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으며 반대로 소비재의 內需比重은 1980년 56%에서 1993년 4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¹¹⁾.

<表 IV-4>에 의하면 1980~1993년 사이에 기계·기기류의 技術集約的인 加工組立産業에서 中間材 수입의존도가 감소하고 경공업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초 8%에 달하던 중간재와 완제품의 관세율 격차가 그 후 점차 사라지면서

10) 반면 중공업의 경우 소비와 투자가 국내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당시 각각 11%, 15.2%이며 이는 1980년에 비하여 消費는 4%, 投資는 2.5% 감소한 것이다.

11) 이는 주로 음·식료품의 中間材比重이 23%에서 35.5%로 증가하여 야기된 현상이며 종이·나무제품과 기타제조업제품에서는 그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섬유·가죽제품의 중간재비중은 약 2% 증가, 1993년 당시 67%에 달한다. 한편 중공업에서 중간재비중이 크게 변화한 산업은 금속제품(82%→75%), 일반기계(36%→48%), 정밀기기(40%→48%), 수송기계(39%→47%), 전기 및 전자기기(64%→69%) 등이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내자원이 중공업으로 유입되고 있고 경공업에서는 중간재수입이 국내수요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 산업의 對外競爭力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이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공업의 퇴보는 1990년대에 들어와 합판, 면·모직물, 생사 등 경공업제품에 관한 調整關稅를 유발하였고 수입억제를 위한 높은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경공업에서 中間材의 수입이 감소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高賃金과 高地價 등 高費用 경제구조로 진입하면서 경공업이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서 수입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關稅還給制度의 施行으로 輸出用 輸入中間材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므로 섬유·가죽산업을 필두로 한 경공업에서는 조정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간재수입이 계속 증가하여 섬유·가죽과 종이·나무제품이 1993년 당시 20%에 달하는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수출용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부담은 금리 및 환급비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출산업에서는 수입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비용이 경미하다. 경공업에서의 환급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당시 경공업 輸入加重 實行關稅率이 9.6%에 달하였지만 關稅還給으로 인한 關稅負擔率(推定值)은 5%에 불과하였고 1993년에는 그 부담률이 약간 증가하여 6.6%에 이른다. 따라서 관세환급제도로 인한 關稅負擔의 輕減率(수입액 대비)은 경공업의 경우 1990년에 4.6% 그리고 1993년에는 이보다 감소한 2.6%에 달하여 관세환급이 수출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至大하였다. 이에 비하여 중공업에서는 그 輕減率이 각 연도에 1.5%와 1.6%에 불과하여 동 제도가 수출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12) 1993년에 경공업에서 關稅負擔率이 6.6%로 증가한 이유는 소비재인 의류와 음·식료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또한 음·식료품의 관세율이 9.5%에서 11.1%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附表 1> 참조).

그런데 關稅還給制度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입중간재에 관하여는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中間材의 국산화를 유도하는 한편 수출용 수입원자재에 관하여는 관세를 환급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세 환급제도로 인한 국산화효과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理論的으로도 국내산업이 취약하여 國產中間材의 限界生産曲線이 急上昇할 경우만이 국산화가 가능하다(張槿鎬·金珍洙, 1997). 일례로 만약 국산 제품이 수입중간재와 상당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시장가격은 還給費用을 포함한 輸入財 價格보다 높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輸入中間材에 대한 환급비용의 부담이 수출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지난 1997년 7월 1일 事後精算制度가 도입되면서 많은 수출기업이 최대한 6개월간 관세납부를 유예하고 수출과 환급을 연계할 수 있어 수출산업의 자금부담이 많이 완화된 바 있다. 그러나 관세 환급제도가 事前免稅나 保稅工場制度로 대체되지 않는 한 환급비용은 계속 상존할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경쟁업 중간재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수출을 희생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消費財 輸入依存度の 變化

關稅率引下豫示制의 실시로 공산품 完製品의 平均 名目關稅率은 1982년 당시 33.1%에서 1994년에 7.1%로 대폭 감소하여 이 기간에 소비재수입이 증가하였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表 IV-5>는 소비재 수입의존도(C_m^m/C_c)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交易財 全體로 보아 소비재의 수입의존도는 1980년 당시 2.8%로 소비재의 공급이 해외에서 조달되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 소비재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서라기보다는 1980년 당시 관세율을 위시한 각종 무역장벽이 소비재수입을 제한하는 데 유효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輸入自由化가 진행되고 국민소득

이 증가하면서 소비재의 平均 輸入依存度(交易財 基準)는 1990년과 1993년에 공히 6.1%로 상승하여 약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간재의 수입의존도 23.1%에 비하면 소비에서의 수입의존도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1980년과 비교하면 1990년대에는 소비재수입이 한결 자유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 이전에는 중공업에서의 消費財 輸入依存도가 경공업과 농수산물보다 더 빠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중공업제품의 관세율이 8%로 수렴하고 있는 데 비하여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등 경공업제품은 각종 關稅, 非關稅障壁으로 수입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잦은 調整關稅 등 貿易障壁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高費用構造의 영향으로 경공업 소비재제품의 수입이 중공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경공업에서는 소비재 수입의존도가 1980년 2.5%였던 것이 1990년에는 5.2%, 1993년의 경우 5.9%로 상승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음·식료품이 이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섬유·가죽제품은 같은 기간에 2.4%에서 5.9%, 7.1%로 3배 정도 수입이 國內需要보다 늘어났고 종이·나무제품은 1980년 당시 1%에서 이후 거의 7배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편 기타제조업제품은 원래 소비재 수입의존도가 10%에 달하였고 이 또한 빠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섬유·가죽제품을 제외한 경공업 소비부문의 수입은 중간수요의 수입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¹³⁾.

13) 韓國銀行에 따르면 輕工業 원자재와 소비재의 수입은 1995년 당시 각각 104억 6천만달러, 65억 4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23.6%, 30.3%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1996년에 원자재의 수입이 96억 5천만달러(-8.7%)로 감소한 반면 輕工業 소비재는 79억 6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21.7%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공업의 소비재 수입의존도는 3.3%에서 1990년 8.5%, 1993년 6.7%로 증가하여 不變價格으로 환산한 1990년까지는 중공업도 경공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중공업 산업에서 수입의존도가 일률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表 IV-5> 消費財 輸入依存度の 年度別 變化

(單位: %)

IO25品目	消費財 輸入依存度			
	1980	1985	1990	1993
농림수산물	3.5	1.9	3.5	4.8
광산물	0.0	0.8	-0.2	-0.3
경공업	2.5	1.7	5.2	5.9
음·식료품	2.3	1.3	3.7	4.2
섬유·가죽제품	2.4	1.3	5.9	7.1
종이·나무제품	1.0	7.3	7.8	6.8
기타제조업제품	10.0	9.6	16.7	17.0
중공업	3.3	6.7	8.5	6.7
화학제품	3.4	3.2	5.4	5.5
석유·석탄제품	0.4	2.7	18.8	11.0
요업·토석제품	4.2	17.7	33.0	20.9
제1차 금속제품	0.0	0.0	0.0	0.0
금속제품	7.2	15.2	9.2	9.6
일반기계	11.5	12.0	27.6	13.5
전기 및 전자기기	5.9	13.7	7.7	7.4
정밀기기	21.2	22.2	41.2	31.7
수송기계	0.4	0.1	0.8	0.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2	0.4	0.2	0.6
사회 및 개인서비스	1.5	3.7	6.8	8.9
기타	0.6	1.0	1.4	1.1
교역재 전체	2.8	2.6	6.1	6.1
전산업	1.6	1.8	3.5	3.4

註: 소비재 수입의존도 = 소비재 수입액/소비재 국내수요
 資料: 한국은행, 『80-85-90년 집중불변산업연관표 작성개요』, 1994.
 _____, 『1993년 산업연관표』, 1996.

특히 수입이 증가한 산업은 석유·석탄, 요업·토석제품 등 제1차 가공품의 성격이 강한 산업과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이다. 다만 이들 제품의 1993년 수입의존도는 1990년에 비하여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1990년 달러환율이 716원에서 1993년에 808원으로 절하되고 국내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변가격으로 보면 그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 投資財 輸入依存度の 變化

<表 IV-6>에 나타난 投資財의 변화를 보면 투자재에 있어서는 消費財와는 달리 대부분 산업에서 그 수입의존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섬유·가죽, 금속제품, 기계와 기기류 등 주력 수출 상품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기타제조업제품과 정밀기기는 수입의존도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교역재 전체로 본 투자재의 수입의존도는 1980년 58.1%에서 1990년 33.5%, 이후 1993년 29.7%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많은 부분 중공업 수입의존도의 하락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중공업에서의 투자재 輸入依存度は 지난 1980년 60.4%에 달하던 것이 1990년 34.5%로 하락하였고 經常價格으로 본 1993년에는 30.8%로 急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기계 등 기계류산업에서 거의 20% 내지 30%에 육박하는 수입의존도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금속제품도 이에 일조한 바가 크다. 이와 함께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금속제품과 이들 기계류산업의 中間材 수입의존도가 대략 20%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 중공업에서 中間材와 投資財의 國產化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반기계와 정밀기기에서 투자재의 수입의존도가 각각 41%, 85%에 달하여 이

부분이 아직도 매우 취약한 산업임은 틀림이 없다.

<表 IV-6> 投資財 輸入依存度の 年度別 變化

(單位: %)

IO25品目	投資財 輸入依存度			
	1980	1985	1990	1993
농림수산물	7.5	3.2	7.8	3.1
광산물	-	-	-	-
경공업	10.2	3.4	3.7	7.7
음·식료품	-	-	-	-
섬유·가죽제품	32.5	9.9	9.2	9.0
종이·나무제품	0.7	0.1	0.8	0.9
기타제조업제품	20.4	6.4	8.7	29.2
중공업	60.4	43.8	34.5	30.8
화학제품	-	-	-	-
석유·석탄제품	-	-	-	-
요업·토석제품	-	-	-	-
제1차 금속제품	-	-	-	-
금속제품	21.6	15.6	6.3	4.4
일반기계	77.4	58.1	50.0	40.8
전기 및 전자기기	40.6	29.9	14.4	15.2
정밀기기	69.0	82.6	89.3	85.1
수송기계	38.4	15.3	11.8	13.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	-	-
사회 및 개인서비스	-	-	-	-
기타	-	-	-	-
교역재 전체	58.1	41.5	33.5	29.7
전산업	19.3	14.0	12.0	10.3

註: 투자재 수입의존도 = 투자재 수입액/투자재 국내수요

資料: 한국은행, 『80-85-90년 계속불변산업연관표 작성개요』, 1994.

_____, 『1993년 산업연관표』, 1996.

지금까지의 論議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總需의 輸入依存度는 中間재의 수입의존도에 의하여 상당히 영향을 받는데 이는 中間材가 內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중공업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74%에 이르고 있고 경공업에서도 최근에는 그 비율이 약 10% 정도 증가하여 1993년 당시 54%에 달하고 있다. 둘째, 消費財에 있어서는 수입의존도가 농림수산물과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여 全産業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1993년에 들어와 중공업의 수입의존도가 하락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가죽제품을 제외한 여타 경공업제품의 消費財 輸入依存度는 中間需要 輸入依存度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셋째, 中間材에 있어서는 섬유·가죽제품을 필두로 한 경공업의 수입의존도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중공업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석유·석탄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하락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술집약적인 기계, 기기류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 이들 산업의 中間材의 수입의존도는 1980년과 1990년 또는 1993년 사이에 20%를 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전기 및 전자기기 예외). 넷째로, 이와 같은 현상은 投資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정밀기기를 제외한 기계 및 기기산업의 수입의존도도 중간재의 수입의존도 못지않게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국내자원이 消費財와 경공업 中間材에서 중공업 중간재와 투자재로 유입되어 이들 제품의 국산화가 관측기간 동안에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輸入自由化가 진행되고 있던時期에 이루어졌음을 상기하면 중공업의 對外競爭力이 한결 향상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4. 輸入依存도와 關稅率政策

가. 輸入依存도와 關稅率引下豫示制: 評價

앞 절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國內 總需要와 中間需要에 있어서 경공업의 수입의존도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중공업에서는 그 수입의존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技術集約的인 機械·機器類 産業에

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消費財에 있어서는 농수산물과 경공업의 수입의존도가 全産業에서 상승하고 있고 중공업에서도 1990년까지는 동일한 현상이 존재하였다. 投資財의 경우, 정밀기기 및 기타 제조업체품을 제외한 全産業에서 그 수입의존도가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중간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인 기계·기기류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내자원이 소비재와 경공업 中間材에서 중공업 中間材와 투자재산업으로 유입되고 있어 중공업의 對外競爭力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의존도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국내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반영하지만 관세율정책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관세율정책이 위에서 언급된 수입의존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려면 우선 관세율인하예시제의 시행으로 完製品과 中間材産業의 關稅率 隔差가 대폭 감소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1980년 당시 중간재와 완제품의 명목관세율은 각각 25.4%, 33.1%였으나 1993년 이후에는 각각 7.0%, 7.1%로 하락한 바 있다. 따라서 中間材와 消費財 사이의 關稅率 隔差는 1982년 당시 7.7%에서 1993년 이후에는 0.1%로 줄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록 수입 중간재의 관세율은 18.4%나 떨어졌지만 수입소비재의 관세율은 이보다 더 큰 폭인 26%나 하락하여 消費財의 關稅障壁이 더 많이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중간재와 비교되는 완제품 관세율의 상대적인 하락하는 장기적으로 국내자원이 완제품산업에서 중간재산업으로 이전할 동기를 제공한다. 이는 자원의 國際的 移動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국내자원의 이동은 相對價格의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원론적으로는 中間材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중간재의 수입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完製品에 대한 同時間的이고도 대폭적인 關稅率引下(a contemporaneous and large tariff reduction)는 국내자원을 중간재산업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촉발하여 輸入中間材의 관세율이 인하되기 전보다 中間材의 수입의존도를 하

락시킬 수 있다¹⁴⁾. 환언하면 장기적이고도 一般均衡的(long-run and general equilibrium)인 시각에서 볼 때 중간재에 대비한 완제품의 대폭적인 관세율 인하는 관세율 인하로 인한 단기적이고도 部分均衡的(short-run and partial equilibrium)인 輸入增大 效果를 압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개별 산업별로는 관세인하에 따른 輸入增大 效果가 지배적일 수 있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中間材 輸入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한편 輸出用 輸入財의 경우, 관세가 환급되므로 관세율이 인하되었다고 해서 수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율 인하가 수출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어 수입의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한 예로 경공업에서는 섬유사나 직물 또는 목재 및 나무제품의 수입으로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高費用構造로 진입함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낮은 경공업의 대외경쟁력이 감퇴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 하지만 당해 산업의 수입의존도가 올라가게 된 요인 중에는 섬유·가죽산업을 필두로 한 수출산업에서 관세율 인하로 인한 자금부담의 감소로 값싼 수입중간재를 더욱 활용하게 된 효과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1993년 당시 경공업의 實行關稅率이 9.2%에 달하였지만 환급액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달하여 關稅還給金이 수출산업의 이익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데 근거한다¹⁵⁾.

그러므로 경공업에 관한 한, 소비재수입의 대폭적인 관세인하로

14) 이에 관한 명확한 결론은 각 産業 生産函數의 代替彈力性과 關稅率引下 程度 그리고 需要函數의 변화를 고려한 一般均衡分析에 의하여 유도될 것이나 완제품의 관세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完製品 生産函數가 彈力的이면 중간재산업은 상대적으로 팽창할 것이다(특히 장기적으로 더욱 그러하다).

15) 1990년에는 關稅率이 9.6%인 데 비하여 還給率은 4.6%에 달하여 환급 비중이 더욱 컸다.

인하여 국내자원이 중간재산업로 유입되기보다는 오히려 중간재수입이 확대되고 있어 관세율 인하효과가 경공업의 수입행태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高費用構造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경공업산업이 대체적으로 침체되고 있는데 중간재의 경우 특히 관세환급에 따른 자금부담의 완화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수출비중이 큰 산업에서 中間材의 수입의존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輸出促進을 위하여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으로 간주된다. 즉, 값싼 중간재의 수입으로 완제품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된다면 중간재에 대한 관세부과는 輸出提高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간재의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환급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中間材의 국산화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관세환급으로 인한 국산화는 中間材 生産函數에 따라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환급부담으로 인한 수출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국산화를 도모할 수는 없는 일이다(張槿鎬·金珍洙, 1997).

이 밖에도 경공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현재 중공업 중간재나 투자재로 유입되고 있는 국내자원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왜곡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정책의 효율성이 의문시된다. 관세율 인하예시체가 완료된 1993년까지 消費財와 경공업 中間材에서의 수입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공업에서는 中間材와 투자재산업의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기술집약적인 기계와 기기류 산업의 중간재 및 투자재에서는 1980년 이후 그 國內自給度가 20%를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입의존도의 변화는 국내자원이 여타 부문, 특히 경공업에서 중공업의 중간재와 투자재산업으로 流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공업에서도 중간재수입에 관한 관세율 인하로 수입이 한결 자유화되었고 關稅還給費用도 계속적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존도는 하락하고 있다. 물론 중공업의 경우 관세환급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에 대략

1.5% 정도에 불과하여 동 제도가 수출용 수입재에 미치는 영향은 경공업처럼 막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공업에서는 관세장벽의 완화로 수입이 확대되는 단기적 효과보다는 完製品에 대한 더 큰 幅의 관세율 인하로 야기된 자원이동으로 國內自給度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된다. 중공업 투자재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물론 중공업이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술한 대로 국내자원의 이동에 있어서 相對價格의 변화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關稅率引下豫示制가 資源配分에 미치는 영향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즉, 관세율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업 소비재와는 달리 중공업 중간재와 투자재의 수입의존도가 하락한 것은 자원이 중간재 등으로 이전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대부분 산업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서 보조금 등의 선별적인 정부지원과는 달리 관세율정책이 자원이동을 촉발함으로써 중공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中間需要(23.1%)와 投資材(29.7%)의 수입의존도에 비하여 消費財의 수입의존도(6.1%)는 매우 낮다(1993년 기준). 경공업과 중공업을 막론하고 중간재 수입의존이 높은 이유는 관세환급제도와 중간재와 원재료에 대한 의도적인 低關稅率(완제품 대비) 등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국내 소비재산업에 있어서는 소비재생산을 위한 중간재수입, 즉 間接的인 中間材의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다(兪正鎬, 1995). 이와 같이 소비재 수입역제로 나타나는 국산 소비재산업의 발전은 중간재와 완제품산업의 균형적인 성장보다는 결국 단순가공생산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값싼 수입제품을 활용하여 여유의 국내자원이 중간재산업과 수출산업에 투입되지 못한 機會費用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정부가 完製品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단행하고 일부 국산화가 곤란한 一次加工品을 제외하고는 完製品과

中間材에 대하여 均等關稅率體制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근래에는 消費財의 수입의존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가와 이에 의하여 파생되는 고비용구조로 인한 국내생산의 감퇴 그리고 소비재에 대한 수입자유화로 야기된 현상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특히 경공업 제품에서 빈번하게 나타나 調整關稅가 자주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재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에서 소비재수입이 과도할 만큼 제약이 되어 있었음을 상기하면 수입소비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일 수 있다. 즉, 消費財에 관한 貿易障壁의 緩和는 소비자의 厚生을 증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촉진하는 古典的인 效果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재의 수입은 間接的인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經濟的 效率性을 제고하는 데 유용한 道具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이러한 非效率的 生産形態나 獨寡占的인 시장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국내기업의 체질을 향상하고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면 수입소비재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도 關稅還給制度의 개선을 통하여 관세 등 輸入稅負擔을 最小化하는 정책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값싼 수입중간재를 이용하여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면 수출업자에게 수입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자금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중간재와 소비재에 대한 관세율 차이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市場機能에 의하여 국내자원이 中間材産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1996년에 關稅還給 特例法을 개정하여 事後精算制度 中心으로 동 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산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덜어준 것은 매우 올바른 정책이다. 다만의 경우에는 중간재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80년대에 관세율 5% 이하의 輸出用 輸入財에 대한 關稅還給을 불허함으로써 수출을 희생하더라도 중간재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을 취한 바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貿易赤字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그러한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關稅率引下豫示制의 導入 이후 중공업에서 중간재와 투자재의 국산화가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效率的 資源配分을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中間材 및 完製品産業의 균형적 발전 등, 현행 관세정책이 추구하는 政策目標은 합리적이고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었다고 평가된다.

關稅率引下豫示制의 施行 이후 중공업의 加重平均 實行關稅率이 비교적 빠르게 인하되고(1990년 7.8%→1994년 5.5%) 경공업의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9.6%→8.8%)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존도에서는 중공업의 躍進과 경공업의 退潮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편 산업간 관세율의 標準偏差로 보아도 중공업에서는 그 편차가 1990년 당시 3.8에 달하던 것이 1994년에는 2.8로 줄어들었다. 반면 경공업에서는 같은 시기에 8.0에서 10.0으로 그 간격이 증가하여 경공업에서 關稅障壁의 差等化가 심화된 바 있다. 전술한 대로 이는 조정관세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로서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이 최소한 경공업에서는 수입규모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모해 왔음을 의미한다. 즉 관세율정책이 적어도 자료가 존재하는 1990년대 이후에는 輸入變數의 從屬變數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공업의 수입의존도는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均等關稅率體制가 대체로 잘 적용된 중공업에서는 오히려 소비재의 수입의존도가 둔화되고 있고 중간재와 투자재의 수입의존도는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의존도의 변화는 관세율정책의 명백한 한계를 시사하는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한 산업의 興亡은 궁극적으로 그 산업의 對外競爭力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關稅障壁은 다만 그 盛衰를 촉진 또는 지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뜻에서 정부는 均等關稅率體制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이 성립되는 환경을 조성하되 극히 例外的이고도 限時的으로 差別的인 關稅支援을 수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나. 輸入依存도와 對外競爭力: 國際比較

수입재를 활용하여 절약된 국내자원을 수출품 생산에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물론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兪正鎬, 1995). 이러한 논의의 기반은 兪正鎬가 연구한 우리나라와 대만의 수입의존도를 비교할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 <表 IV-7>은 대만(1989년)과 우리나라(1988년)의 수입의존도를 비교한 표이다¹⁶⁾. 總內需에 있어서 대만의 수입의존도는 19.8%로 우리나라보다 4.6%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속적으로 貿易黑字를 기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하여 광업과 수산업에서 대만의 수입의존도가 낮기는 하지만 제조업, 특히 중공업에서는 수입의존도가 42.7%로 우리나라의 31.8%보다 10.9%나 높다. 兪正鎬가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대만의 수입구조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소비에 있어서 대만이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交易財消費로 限定할 때 우리나라가 4.4%의 수입의존을 하고 있지만 대만은 그 비율이 24%로서 우리의 약 5.5배에 달한다. 제조업에서는 그 의존도가 26.9%로 우리나라(4.5%)의 약 6배를 상회하고 그 중 중공업은 수입의존도가 무려 43.5%에 육박한다. 경공업제품의 소비에 있어서는 그 수입의존도가 중공업보다 상당히 낮은 17.1%이지만 우리나라 3.1%에 비하면 약 5.5배 정도 높은 의존도이다.

16) 兪正鎬의 경우 수입의존도 推定時 관세 등 수입세를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산출된 수입의존도는 실제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국제비교에 있어서도 수입세가 많은 나라가 실제보다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인다(식 (1) 참조). 물론 다른 要因이 일정할 경우 수입장벽이 높은 나라가 낮은 의존도를 보일 것이다.

<表 IV-7> 臺灣과 우리나라의 KSI商品別 輸入依存度 比較

(單位: %)

	總內需			
	中間需要	消 費	投 資	
전 산업	19.8(15.2)	23.8(20.9)	11.0(2.7)	26.5(17.1)
서비스	4.5(2.7)	7.5(5.3)	3.8(1.5)	-
교역재	30.5(23.3)	29.2(26.5)	24.0(24.4)	58.9(39.7)
농업	19.3(11.4)	23.3(14.6)	8.5(2.4)	1.4(5.7)
임업	72.2(60.5)	78.2(65.6)	0.0(25.9)	-
수산	4.9(11.0)	9.8(18.2)	2.7(5.5)	-
광업	66.5(75.1)	67.0(75.1)	1.2(0.0)	-
제조업	30.5(22.1)	27.9(24.4)	26.9(4.5)	60.3(39.9)
경공업	16.7(10.9)	16.4(17.2)	17.1(3.1)	14.8(3.9)
중공업	42.7(31.8)	37.0(30.3)	43.5(11.2)	61.1(41.2)
화학공업	32.2(30.5)	31.6(33.9)	44.6(1.8)	-

註: () 안의 수치는 우리나라 수입의존도임.

資料: 兪正鎬, 「韓·臺·日의 輸入依存構造 比較」, 韓國開發研究院, 1995.

반면에 交易財 中間需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26.5%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유지하여 대만(29.2%)보다 약간 낮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지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제조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輸出注力商品들인 경공업과 화학공업에서는 대만이 우리나라 중간수요보다 수입의존도가 오히려 낮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中間需要에 있어서 높은 수입의존도를, 그리고 소비에서 극도로 낮은 수입의존도를 지닌 반면 대만은 이들 수요 사이에서 그 차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살펴보면 대만의 중간수요와 소비수입 의존도는 각각 27.9%, 26.9%이나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각각 24.4%와 4.5%에 불과하다. 또한 대만의 경공업, 중공업 그리고 화학공업에 있어서 소비의 수입의존이 중간수요 수입의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기의 수입의존도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內需産業, 특히 消費財의 對外競爭力이 대만보다 높고 中間材産業은 비슷한 경쟁력을 갖는다고 추정할 수 없음은 물

론이다. 오히려 관세 등 무역장벽을 고려하면 1989년 대만의 平均 實行關稅率은 대략 6.3%에 달하고 1988년 당시 우리나라 평균관세율은 7.3%에 이르러 관세율에 관한 한 대만의 수입장벽이 낮은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수입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결과로 여겨진다. 한편 대만은 1984년 이후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關稅還給制度(沖·退稅)를 개편하여 수출을 위한 中間材輸入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즉, 대만은 5%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재(3,917개 품목)에 대한 환급을 불허하여 1994년 당시에는 약 1,100개 품목이 沖·退稅를 적용받았다.

그 결과 수출용 수입제품의 약 21.9%만 沖·退稅 혜택을 누리고 있고 관세 등 稅入 對比 還給比率은 1985년 38.1%에서 6.31%(1989년), 2.3%(1994년)로 대폭 축소하였다(金珍珠·張權鎬, 1997)¹⁷⁾. 이렇듯 대만은 중간재수입에 대하여 관대하고 수입소비재에 과중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貿易黑字로 야기된 대외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한편 中間材의 국산화를 증진하기 위한 方便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대만의 수입의존도는 우리나라보다 높다. 그 이유는 中間需要의 수입의존도가 높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소비의 수입의존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공업과 중공업에서는 중간수요보다도 소비의 수입의존이 오히려 더 높다. 이는 소비수입에서 대만이 우리보다 좀 더 寬待한 정책을 취하였고 한편 관세율 5% 이하의 수출용 수입재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을 불허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지속적인 貿易黑字를 유지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수입으로 대체된 국내자원이 比較 優位가 있는 수출산업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兪正鎬, 1995). 여기

17)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關稅徵收額 對比 還給率은 1994년 당시 29.2%에 이른다.

에다가 대만은 수출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환급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중간재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이유도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비하여 수출을 희생하더라도 國產中間材를 보호하겠다는 대만의 정책이 매우 특이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를 비판할 때 주로 제시되는 문제점은 국내 제품의 國產化率이 매우 낮아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保護論者들은 수입을 줄이고 이를 국내생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裏面에는 基礎原料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一括自給型 經濟’(金昌男, 1992)를 추구해 왔던 일본을 바람직한 경제모형으로 생각하고 이를 답습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일본이 基礎原資材를 제외한 全産業에서 自給自足を 성취한 경제는 아니다.

<表 IV-8>에서 보듯이 일본 중공업의 국내생산 비중이 국내수요에 비하여 약 112%에 달하고 있지만 경공업에서는 그 비율이 92.7%이고 특히 섬유·가죽제품에서 약 88.2%의 自給率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경공업에서의 총수입의존도는 1993년 당시 8.9%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다만 그 속도가 완만하다. 취약한 경공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은 이들 제품에 8.4%의 實行關稅率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관세율 2.7%보다도 무려 5.7%나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輕工業 自給率(國內需要 對比 國內生産)은 일본보다 매우 높아 11.6%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의존도는 11.8%로 일본의 8.9%보다 2.9% 더 높다. 그 주된 원인은 中間需要로서 우리나라가 16.8%의 높은 수입의존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그 비율이 7.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에 있어서는 일본이 10.3%로 우리의 5.9%보다 약 4.4%나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제품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消費財가 中間材보다 輸入依存이 높은 데 비하여 우리는 반대의 모습을 지니

고 있는 것이다.

<表 IV-8> 日本의 産業別 輸入依存度 및 輸出, 生産自立度(1993)
(單位: %)

	輸入	中間 需要	消費	投資	輸出	國內 生産	實行 關稅率
농림수산물	13.0	15.3	6.4	2.8	0.2	87.0	2.1
광산물	72.5	72.4	67.5	-	0.2	27.8	1.0
경공업	8.9	7.8	10.3	5.4	1.9	92.7	8.4
음·식료품	8.0	12.8	6.0	-	0.5	92.5	12.4
섬유·가죽제품	15.8	9.0	20.3	10.6	5.0	88.2	10.2
종이·나무제품	8.0	8.4	6.1	4.1	1.4	93.3	2.4
기타제조업제품	6.6	1.6	21.3	6.5	3.0	96.2	1.2
중공업	5.4	5.0	5.9	6.5	18.0	112.1	1.0
화학제품	6.0	5.9	7.4	-	8.5	102.1	3.2
석유·석탄제품	8.4	9.7	4.7	-	2.3	93.5	1.7
요업·토석제품	2.5	2.1	10.9	-	4.9	102.3	1.0
제1차 금속제품	6.5	6.5	49.4	18.6	7.5	100.5	0.8
금속제품	1.4	1.2	5.7	3.0	3.4	101.4	0.7
일반기계	3.6	3.3	12.7	3.7	24.6	119.9	0.0
전기 및 전자기기	6.8	7.1	5.0	7.3	30.6	122.8	0.0
정밀기기	17.0	15.6	22.8	15.2	38.0	119.2	0.1
수송기계	3.7	1.9	3.4	9.7	32.1	128.1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7	1.4	0.0	-	0.5	99.7	0.0
사회 및 개인서비스	3.3	1.7	3.6	-	0.6	97.3	0.0
기타	1.3	3.0	0.8	-	2.0	100.7	0.0
교역재 전체	8.4	8.7	9.0	6.2	11.8	102.9	3.5
전산업	4.0	5.8	2.9	1.7	5.3	101.1	2.7

資料: 日本 通商産業大臣 官房調査統計部, 「1993年 産業聯關表(延長表)」, 1997.

<表 IV-9>에서 보듯이 일본경제의 수입구조에서 흥미로운 점은 다음의 두 가지 현상이다. 첫째, 일본에서 中間需要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둘째, 소비에 있어서 高率의 관세율이 경공업제품에 집중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공업의 수입의존도(14%)는 상승하고 중공업(-3.4%)에서는 그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표에 나타난 수입구조의 변화가 엔화 가치가 빠르게平價切上되던 시기에 이루어졌고 또한 經常價格 基準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절대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高率의 관세율 등 경공업 消費財에 적용된 두꺼운 保護障壁으로 인하여 일본에서 당해 제품의 수입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산업발전은 당해 산업의 경쟁력에 의하여 확보되는 것이며 여기에 일본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消費財의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非效率의인 資源配分과 厚生減少의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식의 자금자축형 경제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가 의문시된다.

<表 IV-9> 日本의 輸入依存度 變化推移(1990~1993)

(單位: %)

IO25品目	輸 入				輸 出	生 産
	中間需要	消 費	投 資			
농림수산물	-2.8	-3.0	-1.8	1.8	0.0	2.1
광 산 품	-6.8	-6.0	692.6	-	0.1	6.3
경 공 업	0.2	-1.0	1.4	-1.0	-0.2	-0.8
중 공 업	-1.2	-1.3	-3.4	0.5	1.4	1.0
기 타	-0.4	-0.7	0.0	0.0	-0.4	-0.1
교 역 재	-1.3	-2.0	-0.2	0.3	0.8	0.9
계	-1.0	-1.3	-0.4	-0.3	-0.2	0.4

資料: 日本 通商産業大臣 官房調査統計部, 「1993年 産業聯關表(延長表)」, 1997.

지금까지 대만과 일본의 수입의존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국가는 각기 다른 형태의 輸入構造를 지니고 있는데 대만의 경우 中間需要

뿐만 아니라 소비에서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持續的인 貿易黑字를 기록하고 있어 높은 수입의존도가 무역적자의 주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대만은 俞正鎬의 主張처럼 값싼 수입재를 활용하여 절약된 국내 자원을 수출품생산에 투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自給自足型 産業構造를 유지하여 온 일본에서는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지극히 낮고 소비에서의 수입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취약산업인 경공업을 보호하기 위한, 두꺼운 關稅障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소비재의 수입의존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2년부터 1993년까지 평균관세율이 인하되고 均等關稅率體制가 도입된 이후, 중공업 중간재와 투자재의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하락하였고 消費財와 輕工業 中間材의 輸入依存度는 상승한 바 있다. 중공업에서 관세율이 인하되고 均等관세율체제가 대체로 잘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업제품의 국산화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특히 기계·기기류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돋보였다. 반대로 경공업에서는 수입증가에 따른 調整關稅로 인하여 산업간 관세율이 差等化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의존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경공업의 경우 대외경쟁력의 약화 등 각종 요인으로 인하여 경공업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1982년 이후 관세율의 全般的 引下가 그 중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반면 중공업에서는 均等關稅率體制의 導入으로 촉발된 자원이동이 중공업의 중간재와 투자재산업으로 집중되어 당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관세율정책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市場機能에 의한 자원배분으로 인한 중간재와 완제품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입자유화를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야말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最

小限의 前提條件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경제의 수출구조가 점차 중공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선진국과의 무역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對先進國 貿易赤字는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1996년에는 그 적자폭이 약 414억달러에 달하는 등 적자폭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¹⁸⁾. 그런데 당분간은 우리 경제가 資本集約的인 중공업과 중간재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하루빨리 증진되어 선진제품과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바람직한 산업정책이란 제한된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제의 균살을 제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일이다. 사실 限定된 資源이 效率的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命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위성이 간과되고 회복불능의 斜陽產業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산요소가 이들 산업에 묶여 있도록 하는 被動的인 보호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보호정책의 당위성은 제한된 국가자원이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데 있다.

향후에는 WTO협정의 발효로 차별적인 補助金政策이 금지되지만 관세율정책의 產業別 差等化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세정책이 갖는 戰略的 產業政策(strategic industrial policy)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관세율정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면 개별산업의 보호보다는 국가전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관세율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均等關稅率體制의 基調를 유지하되 特定產業에 대한 限時的 保護를 예외적으로 수행하고 대만과 같이 輸入代替의인 支援政策은 지양함으로써 국내자원이 수출산업과 발전 가능성이 있

18) 先進國과의 貿易赤字는 1994년에 203억달러를 기록한 후 291억달러(1995년)와 414억달러(1996년)에 달하는 등 매년 그 폭이 약 100억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는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시장체제가 어느 정도 정립된 경제에서는 경제적 왜곡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정부지원보다는 시장기능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市場機能의 活性化에 중점을 두는 양상을 띠는 것은 매우 時宜適切한 정책운동이며 관세 정책도 이러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뒷받침한다는 원칙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V. 實效關稅率(1994年)과 關稅率政策

1. 概要

第Ⅲ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과 1988년 두차례에 걸친 第1, 2次 關稅率引下豫示制를 통하여 平均關稅率을 7.9%로 引下하고 產業別로도 均等關稅率體制를 채택한 바 있다. 이는 輸入財에 대한 關稅率 引下를 통하여 內需產業의 競爭力을 향상시키고 政府主導의 產業保護政策에서 탈피하여 市場機能에 의한 資源配分으로 效率的인 經濟成長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 경공업에서의 잦은 調整關稅와 割當關稅의 運用은 產業間 또는 加工度別 均等關稅率을 差等化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경공업에서는 產業間 實行關稅率의 平均은 199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 偏差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관세율인하예시제의 시행 이후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수입이 급증하는 경공업제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율을 인상은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대응방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彈力關稅制度의 持續的인 活用은 均등관세율체제를 약화시키고 가공도별 관세율 격차도 증가시켜 實效關稅率의 產業間, 加工度別 隔差를 增幅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逆關稅를 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 輸入品の 國內價格이 상승하고 수입재와 경쟁관계에 있는 國產品의 價格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이 경우 만약 中間材價格이 一定하다면 국산품 생산으로 창출되는 附加價值는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국내자

원이 당해 산업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런데 完製品에 대한 保護效果는 原料를 포함한 輸入中間材에 대하여 關稅가 부과될 경우, 이로 인한 生産費用의 引上效果로 국산 完제품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정도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完제품에 대한 실질적 보호효과도 약화되게 마련이며 따라서 자원이동의 규모도 변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名目關稅率로는 특정 산업에 관한 실질적 보호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자원의 움직임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제 보호효과를 추정하려면 중간재로 투입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동시에 감안하여야 한다.

‘實效關稅率’(effective rate of protection)은 中間材에 부과되는 關稅의 效果를 고려하여 完제품가격에서 투입재가격을 차감한 附加價値가 關稅賦課를 前後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고 그 변화를 比率로 數値化한 指數이다¹⁾. 이러한 의미에서 實效關稅率은 전체 關稅率構造와 한 나라 經濟의 投入-產出構造를 동시에 감안하여 비교적 정확한 관세의 보호 정도를 산업별로 파악하고자 개발된 指數이다. 또한 실효관세율은 보호의 정도가 부가가치의 변화율로 나타나 생산효과에 대한 변화를 암시하여 준다. 즉, 실효관세율은 관세율구조의 변화로 야기되는 생산요소의 보수수준의 변동과 이로 인한 국내자원의 이동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本章에서는 관세율인하예시제가 종료된 1994년 당시 각종 彈力關稅를 감안한 實行關稅率과 韓國銀行의 1993년 產業聯關表를 이용하여 1994년 IO75산업별 實效關稅率을 추정한다. 이를 통하여 균등관세율체제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이 어느 정도 實質的 保護側面에서 產業別 差等化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 보호

1) 따라서 實效關稅率은 관세부과에 따른 附加價値의 增減率을 추정하여 자원의 이동을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完製品의 消費와 中間材의 生産은 각각 이들 수입품에 부과된 名目關稅率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完제품의 生産량은 이들 名目關稅率과 供給曲線의 彈力性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산업으로 국내자원이 유입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효보호율의 추정을 통하여 관세율인하예시제를 평가하고 관세율정책 운용현황을 검토하는 것이 본장의 목적이다.

2. 實效關稅率의 概念: 理論的 檢討

가. 實效關稅率의 定義

實效關稅率이란 주어진 關稅率의 構造體系로 인하여 特定 產出物의 附加價値가 증가하는 比率을 의미한다. 따라서 輸入制限의인 非關稅障壁은 고려하지 않으나 정책입안시에는 이러한 성격의 무역장벽이 수입재의 국내가격을 상승시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農業 등에서는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적용으로 국내의 가격차가 관세 및 각종 수입비용을 포함한 가격보다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러한 非關稅障壁을 감안한 實效保護率(1990年)은 兪正鎬 外(1993)에서 매우 심도있게 검토된 바 있다. 本稿에서는 관세율인하예시제가 종료된 1994년 당시 전반적 관세율체계의 조정으로 인한 보호 정도의 산업별 격차를 검토하는 데 연구의 주목적이 있으므로 上記의 實效保護率을 추정하지 않고 관심의 대상을 關稅率政策에 한정하기로 한다²⁾.

實效關稅率의 定義를 兪正鎬 外(1993)처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의 식 (1)과 같다. 여기서 z_j 는 j 産業의 實效關稅率, V_j 는 關稅賦課以後의 單位當 附加價値를 의미하고 별표(*)로서 自由貿易體制下의 附加價値를 구별하여 V_j^* 로 假定하면 實效關稅率은 관세부과를 전후한 附加價値의 變化率을 의미한다. 附加價値는 총생산액에서 원

2) 각종 무역장벽 이외에도 완제품에 대한 보조금은 국내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중간재에 대한 소비세는 반대의 효과를 유발하므로 이를 감안해야 실제 보호수준을 알 수 있다(Grubel and Johnson, 1967).

재료비와 감가상각비, 조세비용 등을 제외한 노동, 자본 등 基礎 生産要素에 제공되는 報酬의 總合을 의미한다. 實效關稅率 理論에서는 일반적으로 生産要素의 國家間 移動이 불가능하다고 假定하므로 결국 關稅부과로 인한 부가가치의 증대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 生産要素의 所有主에 대한 報酬의 增加를 뜻한다.

$$z_j = \frac{V_j - V_j^*}{V_j^*} \quad (1)$$

實效關稅率을 추정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假定은 關稅의 賦課를 전후하여 中間材 投入係數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³⁾. 환언하여 j 라는 財貨 한 單位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中間材 또는 原料 i 의 規模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Q_{ij}/Q_j 인데 상기의 가정은 모든 i 와 j 에 대하여 $Q_{ij}/Q_j = Q_{ij}^*/Q_j^*$ 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다. 이는 결국 關稅賦課로 인한 相對價格의 變化, 換率變動 등을 고려하여 實效保護率을 측정하는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部分均衡의인 分析方式을 전제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假定이다. 이 밖에도 關稅를 부과하는 경제가 小規模여서 수출입 제품의 가격은 해외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고 輸入을 중단할 정도의 高關稅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실효관세율 추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러한 가정하에 實效關稅率 z_j 를 名目關稅率과 投入係數로 표시하려면 關稅부과를 전후한 附加價値의 變化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自由貿易下에서의 단위당 부가가치 V_j^*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begin{aligned} V_j^* &= \frac{1}{Q_j^*} (P_j^* Q_j^* - \sum_i P_i^* Q_{ij}^*) = P_j^* (1 - \sum_i \frac{P_i^*}{P_j^*} \frac{Q_{ij}^*}{Q_j^*}) \\ &= P_j^* (1 - \sum_i a_{ij}^*) \end{aligned} \quad (2)$$

3) 다만 勞動·資本 등 기초 生産요소들간의 대체는 인정한다.

여기서 P^* 와 Q^* 는 각각 자유무역시 재화 i 와 j 의 국내가격(CIF 가격)과 생산(투입)량을 의미하며 a_{ij}^* 는 원(W)으로 환산된 中間材 投入係數, 즉 j 라는 완제품 1원어치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中間材 i 의 投入額($P_i^*Q_{ij}^*/P_j^*Q_j^*$)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재화 i 와 j 에 부과된 名目關稅率을 각각 t_i, t_j 라고 한다면 관세가 부과된 이후의 부가가치는 아래 식 (3)과 같은데 세번째 等號에서는 특히 物理的 投入係數가 不變이라는 가정($Q_{ij}/Q_i = Q_{ij}^*/Q_i^*$)과 함께 모든 재화 i 와 j 에 대하여 국내가격은 CIF價格보다 관세만큼 높다는 사실, 즉 $P^* = P^*(1+t)$ 라는 가정이 필요하다⁴⁾.

$$\begin{aligned} V_j &= \frac{1}{Q_j} (P_j Q_j - \sum_i P_i Q_{ij}) = P_j (1 - \sum_i \frac{P_i}{P_j} \frac{Q_{ij}}{Q_j}) \\ &= P_j (1 + t_j) [1 - \sum_i \frac{P_i^* (1 + t_i)}{P_j^* (1 + t_j)} \frac{Q_{ij}^*}{Q_j^*}] \\ &= P_j^* [1 + t_j - \sum_i a_{ij}^* (1 + t_i)] \end{aligned} \quad (3)$$

식 (2)와 (3)을 식 (1)에 대입하여 j 산업의 實效關稅率 z_j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z_j = \frac{P_j^* [1 + t_j - \sum_i a_{ij}^* (1 + t_i)]}{P_j^* (1 - \sum_i a_{ij}^*)} - 1 = \frac{t_j - \sum_i a_{ij}^* t_i}{1 - \sum_i a_{ij}^*} \quad (4)$$

식 (4)는 實效關稅率을 측정하거나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基本等式(basic equality)이다. 이 식에서 分母는 완제품 1원어치에 내재되어 있는 부가가치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附加價值

4) 이러한 假定은 非關稅障壁에 의하여 국내가격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物理的 投入係數가 불변인 이상 관세율체계에 따른 '實效關稅率'을 측정하는 데에는 上記의 가정이 아무런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지 않는다. 만약 각종 무역장벽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t 를 관세율이 아닌 保護率로 해석하면 된다.

는 自由貿易下에서도 零의 값보다 크다고 가정한다⁵⁾. 마찬가지로 分子에서 첫번째 항은 완제품에 부과된 명목관세로 인한 販賣價格의 引上率을, 그리고 두번째 항은 중간원료에 대한 관세로 인한 生産費用의 增加率(완제품 1원당)를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實效關稅率 α 는 주어진 관세율체제로 인하여 완제품 한 단위당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 (4)를 통하여 實效關稅率과 名目關稅率 그리고 生産構造와의 關係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추후에 산업별 실효관세율의 비교시 실효관세율의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논의이다. 첫째, 중간재와 완제품의 관세율이 같다면($t_i = t_j$, 모든 i), 즉 가공단계 별로도 均等關稅率體制가 성립한다면 실효관세율은 명목관세율과 같을 것이다. 둘째, 差等關稅率體制처럼 완제품의 관세율이 중간재 관세율보다 높으면 실효관세율은 완제품 관세율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처럼 關稅率體制가 傾斜를 이루어 소비재생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증가가 매우 크게 되면 원료나 중간재산업보다는 소비재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중간재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t_i = 0$, 모든 i), 실효관세율 α 는 명목관세율 t 보다 클 것이며 중간재비중이 증가할수록(보호해야 할 부가가치가 감소할수록) 실효관세율도 상승한다. 넷째, 완제품 관세율이 중간재 관세율보다 큰 상황에서($t_j > t_i$), 중간재비중이 증가하면 실효관세율도 같이 상승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실효관세율이 하락한다. 이는 위의 식에서 보듯이 실효관세율이

5) 만약 자유무역하에서 부가가치가 零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당해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관세율체제로 인하여 문체의 제품이 국내생산된다면 이때 실효관세율은 분자와 분모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갖게 되어 實效關稅率은 陰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보호체계가 실제로는 유효하지만 피상적으로는 마치 당해 산업이 실효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兪正鎬 外).

상승하려면 분모가 증가하는 비율이 분자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커야 하기 때문이다.

나. 實效關稅率의 調整

實效關稅率을 실제 추정할 때는 非交易財도 고려하는데 이는 一般均衡理論上 관세율구조가 변화할 때 非交易財와 交易財의 需要와 供給의 代替性에 따라 非交易財의 價格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Corden은 어떤 교역재에 적용되는 관세가 변화할 때 해당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非交易財의 附加價値도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실효 관세율의 추정시 감안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Balassa는 비교역재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교역재가격의 상승만이 비교역재의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rden과 Balassa방식에 따른 실효관세율 추정을 동시에 수행하기로 한다. 자료는 관세청에서 제공한 1994년 실행관세율을 기반으로 한국은행의 199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IO75부문 산업의 실효관세율을 추정한다. 교역재 생산에 투입되는 비교역재를 어떻게 처리하여 실효관세율을 수식화하는가는 兪正鎬 外(1993)의 II장 2절(p. 2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 따로 이를 소개하지 않는다. 다만 兪正鎬 外(1993)를 인용하여 Corden과 Balassa방식에 따른 실효관세율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Corden式 實效關稅率 : z_j

$$\begin{aligned} 1 + z_j^c &= \frac{VA_j^c}{VA_j^{*c}} \\ &= \frac{1 - \sum_i a_{ij} - \sum_m \sum_i r_{im} a_{mj}}{\frac{1}{1+t_j} - \sum_i a_{ij} \frac{1}{1+t_i} - \sum_m \sum_i r_{im} a_{mj} \frac{1}{1+t_i}} \end{aligned}$$

상기의 수식에서 $\sum_m \sum_i r_{im} a_{mj}$ 는 비교역재 m 을 통하여 직·간접적

으로 교역재 j 에 투입되는 모든 교역재의 투입계수의 합을 의미하며 $\sum_i a_{ij}$ 는 국내가격(관세포함)을 기준한 모든 교역재들의 투입계수의 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Corden방법에 의하면 어떤 교역재의 부가가치는 제품 한 단위당 생산가격에서 직접 사용된 교역재비용과 비교역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입된 교역재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Corden이 생각하는 교역재 j 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j 財의 生産에 직접 참여하는 生産要素들에 대한 保護뿐만 아니라 j 財의 生産에 소요되는 非交易財의 生産에 直·間接적으로 참여한 모든 生産要素들에 관한 保護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兪正鎬 外, 1993, p. 29)

이에 비하여 Balassa에 의거한 실효관세율은 j 財의 生産에 직접 참여하는 生産要素들에 대한 保護만을 측정한다. 다만 j 財의 生産에 소요되는 非交易財에도 교역재가 투입되게 마련이므로 관세부과에 따른 교역재의 가격인상은 비교역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Balassa式에서는 非交易財에 直·間接적으로 투입되는 交易財의 價格上昇만이 非交易財의 價格을 引上시킨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Balassa는 교역재에 대한 명목적인 보호가 교역재생산에 사용되는 비교역재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를 보호하는 효과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Balassa의 가정에 의거한 실효관세율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식과 같다.

㉠ Balassa式 實效關稅率 : z^B_j

$$1 + z^B_j = \frac{VA_j^B}{VA_j^{*B}}$$

$$= \frac{1 - \sum_i a_{ij} - \sum_m a_{mj}}{\frac{1}{1+t_j} \sum_i a_{ij} \quad \frac{1}{1+t_j} \sum_m \sum_i r_{im} a_{mj} \quad \frac{1}{1+t_j} - \sum_m r_{vm} a_{mj}}$$

상기의 수식에서는 $\sum_m a_{mj}$ 는 j 에 투입된 모든 비교역재 m 의 투입계수의 합이며 $\sum_m r_{vm} a_{mj}$ 는 교역재 j 를 1단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

된 비교역재 m 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모든 비교역재의 부가가치 합을 의미한다.

상기의 두 식을 이용하여 Balassa와 Corden의 差異點을 比較하여 보면 $\sum_m a_{mj} = \sum_m (r_{vm} + \sum_i r_{im}) a_{mj}$ 이므로 Balassa식은 Corden식과 비교할 때 분모와 분자에서 $\sum_m r_{vm} a_{mj}$ 을 동시에 빼어 주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Balassa식 실효관세율은 Corden식보다 ‘항상’ 과대 평가된다. 그 원인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완제품의 주어진 관세율 t_j 가 보호해야 할 附加價值는 Corden식에 비하여 Balassa식이 $\sum_m r_{vm} a_{mj}$ 만큼 적으므로 주어진 관세율체계하에서는 Balassa에 따른 실효관세율이 항상 Corden의 실효관세율보다 크게 된다.

3. 實效關稅率 推定時의 問題點

가. 實效關稅率 指定時의 誤差

이렇게 推定된 實效關稅率은 實質 實效關稅率보다 過大 또는 過小하게 측정될 수 있는바 이의 원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의 한계상 모든 세부산업의 실효관세율을 구할 수 없으므로 諸産業을 그 성격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적용하여야 할 完製品 또는 中間材의 實行關稅率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추정된 실효관세율은 실질 실효관세율보다 과대 또는 과소하게 평가될 수 있다.

製品別 關稅率을 輸入額으로 加重한 實行關稅率을 사용할 경우, 통합된 산업에 속하는 산업들의 國內生産과 完製品의 關稅率이 正의 相關關係를, 中間材 投入比重과 中間材의 關稅率이 負의 相關關係를, 그리고 輸入額과 關稅率이 負의 相關關係를 보이면 推定値는 實質實效關稅率을 過小評價한다(Basevi, 1971). 또한 관세가 부과된 후 관측되는 中間投入係數 a_{ij} 를 사용함에 있어서 中間材들 사이에서 中間材의 代替가 가능하다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간재의 사용은 증가하고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수입중간재의 사용은 감소

한다.

이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 이후의 中間材 平均關稅率($\sum a_{ij}t_i$)은 자유무역체제하에서 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게 되므로 推定値는 實質 實效關稅率을 過大評價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다른 한편으로는 觀測되는 投入係數는 中間材에서 勞動 등 基礎生産要素로의 代替를 반영하므로 중간재 비중은 하락하고 附加價値는 상승하여 추정치는 실질실효관세율을 過小評價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추정된 실효관세율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은 중간재 투입계수 a_{ij} 가 關稅뿐만 아니라 非關稅障壁에 따른 중간재 투입내역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만약 관세가 높은 물품의 비관세장벽이 클 경우 실효관세율이 실질 실효관세율을 過大評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주된 관심이 비관세장벽보다는 관세율체제에 있고 또한 자유무역하에서의 투입계수를 관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기의 문제점들은 실효관세율을 추정하는 어떤 연구에서도 지적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약 조건들이다. 본 연구는 輸入額을 加重値로 하는 實行關稅率을 IO75 部門 産業에 적용하였는데, 이것은 上記의 誤差가 상호작용하여 最終誤差가 最小化되리라는 假定이 암묵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나. 産業聯關表에서의 間接稅 除去

1994년 實效關稅率을 추정하기 위하여 韓國銀行의 「1993년 産業聯關表(延長表) 概要」를 사용하여 中間材와 輸入中間材 投入係數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산업연관표는 여러 間接稅와 輸入商品稅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는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수출에 공여되는 수입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와 기타 간접세는 關稅還給制度에 의하여 면제되므로 실효관세율 추정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어떤 중간재에 부과된 간접세를 제거하지 않으면 生産費用에서 당해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중하게 산정되어 일반적으로 實效關稅率을 過大評價할 수 있다(Corden,

1971)⁶⁾. 이러한 間接稅의 調整問題는 兪正鎬 外(1993, 제 V 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지 않고 다만 간접세의 제거방법에 있어서 兪正鎬 外(1993)와의 차이점만 논의하기로 한다.

1994년 산업별 각종 조세의 납부액 자료를 획득할 수 없었으므로 兪正鎬 外(1993)에 수록된 1988년 자료를 이용하여 附加價値稅와 其他 間接稅의 産業別 配分을 추정하였다. 그런데 韓國銀行에 따르면 附加價値稅는 애초 國產中間材 去來表에서 공제되어 발표되므로 이를 일단 최종수요에서 제거한 후 추산된 기타 간접세율로 중간재, 최종수요, 수출제품을 나누어 기타 간접세를 제거하였다. 輸入商品稅도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되 국산교역재의 생산을 위하여 直·間接적으로 투입된 수입품 중 輸出용으로 쓰여진 경우 관세환급제도에 따라 간접세를 면제받으므로 이 부분을 제거하는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特別消費稅와 酒稅의 경우에는 수출용 투입부분이 면제되나 이를 제거하기가 어려워 기타 간접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종 간접세를 제거하고 새로이 國產·輸入中間材 投入係數를 작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실효관세율을 추정한다.

한편 兪正鎬 外(1993)에서는 산업연관표상의 투입-산출액의 평가준이 國內價格과 國境價格, 즉 自由貿易價格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내가격으로 통일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輸出과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間接輸出은 關稅還給의 惠澤으로 국산과 수입투입을 막론하고 국경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국내가격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 즉, 수출을 위하여 쓰여지는 국산중간재의 경우 관세환급이 제공되는 同種同質의 輸入財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 판매가격이 국경가격이어야 경쟁관계가 성립한다. 반면 국내용으로 사용된 국산재는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재와

6) 일반적인 경우는 완제품에 적용된 관세율이 중간재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세를 포함한 국내가격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張槿鎬·金珍洙(1997)에 의하면 國產材의 生産函數(production function)에 따라 국산재가격은 수출에 제공되는 여부를 떠나서 내국세를 포함한 국내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고 아니면 국경가격으로 거래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곡선이 어느 점에서 교차되는가에 따라서 국산중간재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술한 대로 수출에 공여되는 국산재는 관세가 환급되는 수입중간재 가격보다 높게 거래될 수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 소비되는 국산재라도 그 생산비용이 낮을 경우에는 한계수요가 국경가격 이상으로 국산재가격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 생산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수입중간재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의 생산에 쓰여지고 따라서 국산재가격은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된다. 물론 수입중간재에는 관세 등이 환급되므로 산업연관표상 평가액이 국경가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관세환급제도가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 1997년 7월 이전에는 금융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평가액이 자유무역가격으로 환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환언하면 관세환급제도도 일종의 관세감면제도로 볼 수 있다. 상기한 이유로 인하여 국경 또는 국내가격으로 산업연관표를 재조정하는 작업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조정을 생략하기로 한다.

4. 實效關稅率 推定結果

가. IO75 産業分類別 實效關稅率 推定值

<表 V-1>은 IO75산업 중 55개 交易財産業의 實效關稅率을 Corden式으로 추정된 결과를 제시한 표이다. 이 표에서 제시된 實行

關稅率은 完製品 j 에 실제로 부과된 관세율로서 輸入額을 加重平均한 數值이다.

한편 中間材 實行關稅率은 j 에 투입되는 中間材의 加重平均 關稅率(投入係數 加重)을 의미한다.

실효관세율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식 (4)에서 보듯이 대략 완제품에 부과된 실행관세율이 높을수록, 중간재 관세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중간재 투입비중이 클수록(보호해야 할 부가가치가 작을수록), 실행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상승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z_j = \frac{t_j - \sum_i a_{ij} \cdot t_i}{1 - \sum_i a_{ij}} \quad (4)$$

한 예로서 作物産業의 경우, 한 단위의 작물이 생산되었을 때 부가가치가 82.3%인데 관세만 고려한다면 작물의 국내가격은 국제가격보다 6.2% 높고 국내생산시 중간재의 관세가 약 0.7%이므로 실행보호는 대략 $(0.062 - 0.007) / 0.823 = 0.067$ 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작물의 경우에는 중간투입재에 부과된 관세율이 낮은 반면 주어진 완제품 관세율이 보호해야 할 부가가치는 크므로 실행관세율이 실행관세율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實效關稅率 全體 平均은 實行關稅率 全體 平均보다 1~2% 높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加工度別 差等關稅率體制를 시행하여 실행관세율이 중간재 관세율을 대략 2배 정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交易財 全體의 平均 實效關稅率은 8.0%이며 제조업은 9.0% 그리고 음·식료품을 제외한 제조업은 7.2%로 하락하는데 그 이유는 빵, 과자 및 국수류가 27.8%, 기타 식료품이 23.4% 그리고 음료품이 50.9%의 높은 실행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분적으로 축산 및 양잠, 정곡 및 제분, 담배, 기타 수송기계 등에서는 중간재 관세율이 완제품보다 높아 역관세현상이 보이는 품목들도

있고 수산가공품이나 의복 및 장신품처럼 비교적 중간재 관세율이 높은 품목들도 있다.

<表 V-1> 1994年 IO75部門 實效關稅率 : Corden

(單位 : %)

IO75產業	實 行 關 稅 率	實 效 關 稅 率	中 間 材 實 行 關 稅 率	中 間 材 投 入 比 重
交易財 全體平均(標準偏差)	6.8(5.0)	8.0(9.1)	3.3(1.7)	51.9(19.1)
製造業 全體平均(標準偏差)	7.3(4.9)	9.0(9.1)	3.6(1.4)	57.5(13.5)
飲·食料品 除外 製造業 "	6.3(2.1)	7.2(4.6)	3.4(1.1)	57.3(10.6)
1. 作物	6.2	6.7	0.7	17.7
2. 畜産 및 養蠶	5.6	-5.7	7.9	71.0
3. 農業 서비스	0.0	-2.1	1.9	22.4
4. 林産物	2.8	2.7	0.4	8.5
5. 水産物	15.2	18.9	1.7	26.5
6. 石炭	1.0	-0.1	1.2	18.2
7. 原油 및 天然가스	1.9	1.9	0.0	0.0
8. 金屬鑛石	1.0	-0.6	1.6	25.5
9. 非金屬鑛物	2.8	2.1	1.0	16.5
10. 肉類 및 酪農品	10.5	21.3	4.1	67.9
11. 水産加工品	15.5	18.5	8.3	60.4
12. 精穀 및 製粉	5.3	-4.0	5.7	92.2
13. 製糖	4.8	4.3	3.5	70.3
14. 빵,菓子 및 곡수類	15.1	27.8	4.7	59.1
15. 기타 食料品	13.0	23.4	4.8	62.8
16. 飲料品	32.5	50.9	4.5	38.5
17. 담배	0.0	-1.3	1.2	18.9
18. 纖維絲	7.2	8.7	4.5	69.6
19. 纖維織物	11.3	17.6	4.7	60.7
20. 纖維製品	8.6	8.9	5.0	59.8
21. 衣服 및 裝身品	8.0	4.3	6.4	60.7
22. 가죽 및 毛皮製品	5.9	3.5	4.6	60.3
23. 製材 및 木材品	8.9	15.3	3.4	62.4

<表 V-1>의 繼續

(單位: %)

IO75産業	實 行 關 稅 率	實 效 關 稅 率	中 間 材 實 行 關 稅 率	中 間 材 投 入 比 重
24. 家具	8.2	8.5	4.5	57.0
25. 펄프 및 종이	4.3	3.4	2.9	58.6
26. 印刷出版	1.1	-1.7	2.2	45.4
27. 有機化學 基礎·中間製品	7.1	11.3	3.5	67.2
28. 合成樹脂 및 合成고무	7.6	8.7	4.7	67.2
29. 無機化學基礎製品	6.3	7.8	2.5	50.1
30. 化學纖維	6.6	6.3	4.8	71.3
31. 化學肥料 및 農藥	3.4	-1.9	4.2	70.4
32. 醫藥品 및 化粧品	7.3	7.3	3.1	42.3
33. 기타 化學製品	6.8	7.1	3.9	59.1
34. 石油製品	2.6	3.2	1.6	69.2
35. 石炭製品	5.0	16.0	1.1	72.9
36. 고무製品	7.5	8.1	4.0	56.4
37. 플라스틱製品	7.7	8.4	4.3	59.4
38. 유리 및 陶磁器	8.1	9.7	2.4	40.0
39. 시멘트 및 시멘트製品	5.4	6.4	2.3	51.3
40. 기타 窯業 및 土石製品	7.5	9.7	2.0	42.2
41. 製鐵 및 製鋼	2.3	0.2	2.3	76.8
42. 製鋼 1次製品	6.9	15.5	3.1	73.8
43. 非鐵金屬 및 1次製品	4.3	4.7	2.6	63.1
44. 金屬製品	6.0	5.6	3.6	55.9
45. 一般産業用機械	6.1	5.9	3.3	53.3
46. 特殊産業用機械	6.2	6.1	2.4	37.5
47. 컴퓨터 및 事務用機械	7.5	10.2	3.2	57.5
48. 電氣機械 및 裝置	6.4	7.2	3.3	56.4
49. 家庭用 電氣電子機器	7.4	10.4	3.5	62.0
50. 通信機器	6.9	8.4	2.8	50.3
51. 電子機器部分品	4.8	3.7	3.0	52.6
52. 精密機器	5.7	5.7	1.9	32.5
53. 自動車	8.0	8.7	4.1	54.6
54. 기타 輸送機械	1.2	-3.2	2.9	53.3
55. 기타 製造業製品	7.8	8.5	3.1	43.4

註: 實行關稅率은 關稅負擔額을 輸入額으로 나눈 數值이며, 中間材 關稅率은 各 産業部門 中間材 投入係數를 該當産業 實行關稅率로 곱한 數值인.

資料: 關稅廳 電算資料.

韓國銀行, 「1993年 産業聯關表(延長表)」, 1996.

實效關稅率 全體 平均은 實行關稅率 全體 平均보다 1~2% 높은 데 이는 우리나라가 加工度別 差等關稅率體制를 시행하여 실행관세율이 중간재 관세율을 대략 2배 정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交易財 全體의 平均 實效關稅率은 8.0%이며 제조업은 9.0% 그리고 음·식료품을 제외한 제조업은 7.2%로 하락하는데 그 이유는 빵, 과자 및 국수류가 27.8%, 기타 식료품이 23.4% 그리고 음료품이 50.9%의 높은 실효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분적으로 축산 및 양잠, 정곡 및 제분, 담배, 기타 수송기계 등에서는 중간재 관세율이 완제품보다 높아 역관세현상이 보이는 품목들도 있고 수산가공품이나 의복 및 장신품처럼 비교적 중간재 관세율이 높은 품목들도 있다.

한편 中間材 關稅率의 標準偏差는 1.7에 달하여 완제품(5.0)보다 産業別 關稅率 隔差가 작다. 이는 원료나 중간재에 저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조정관세 등이 주로 완제품인 소비재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實效關稅率의 標準偏差는 9.1로서 실효관세율로 본 산업별 격차는 실행관세율에 기준한 수치(5.0)보다 거의 2배에 달한다. 따라서 완제품에 적용된 관세율을 기준한 名目的 保護는 實質的 保護水準을 誤導할 수 있고 실질적 보호가 산업별로 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효관세율이란 주어진 관세율체제로 인하여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비율(자유무역 대비)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보다는 국내자원의 이동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보호가 실행관세율로 관측되는 수치보다는 더 많이 산업별로 격차가 나고 평균적 수치도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관세율체계는 자원이동에도 명목적 수치가 암시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어떤 산업에 더 많은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효관세율의 高低에 따라 諸産業을 분류한 것이 <表 V-2>이다. <表 V-2>를 통하여 대략 우리나라 관세율체계가 어느 산업으로 자원을 유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다.

55개 교역재 중 11개 품목이 5% 이하의, 그리고 22개 품목이 5~10%의 보호를 받고 있다. 20%를 초과하는 품목 4개는 전부 음·식료품이며 10~20%의 실효보호를 누리고 있는 품목은 9개 품목에 달한다. 이 표에서 특이한 점은 기타 제조업제품을 포함한 IO산업 18개 경공업제품 중에서 5~10%의 실질적 보호율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작물과 섬유사, 섬유직물, 가구와 기타 제조업제품의 5개 품목에 불과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실효보호가 10%를 초과하거나 또는 5% 이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효관세율에 관한 한 경공업에서는 관세율구조에 따른 실질적 보호조치가 양극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에 비하여 중공업에서는 IO산업 28개 품목 중에서 17개의 산업이 실효관세율이 5~10%에 몰려 있는 것이 경공업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實效被害를 입는 품목도 9개에 달하고 있다⁷⁾. <表 V-1>에 따르면 중간재 관세율이 완제품보다 높아 被害를 입는 산업은 축산 및 양잠(-5.7%), 정곡 및 제분(-4.0%), 기타 수송기계(-3.2%), 농업 서비스(-2.1%), 화학비료 및 농약(-1.9%) 등의 순서이다. 實行關稅率에 비하여 實效關稅率이 증가한 산업은 27개 부문으로 제일 많고 실행·실효관세율이 서로 비슷한 경우는 12개 부문($\pm 0.5\%$ 의 격차를 기준할 때), 감소하는 경우는 7개에 달하는데 이 중 2개 품목이 섬유·가죽제품으로 의복 및 장신품과 가죽 및 모피 제품류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실효관세율이 실행관세율보다

7) 단, 이는 자유무역하에서 부가가치가 負의 값을 갖고, 관세의 부과로 부가가치가 正의 값을 갖는 산업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각기 3.7%, 2.4% 낮아 중간재인 섬유직물 등에 부과된 조정관세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고 제철 및 제강 그리고 전자기기 부분품은 각각 2.1%, 1.1% 정도 실효관세율이 낮다. 한편 실효관세율이 10% 이상인 품목은 주로 음·식료품이나 경공업제품인데 이들은 주로 완제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이 높은 품목들이다. 농림수산물 중 축산 및 양잠은 -5.7%의 實效被害를 보고 있는 반면 수산물은 18.9%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는 수산물의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은 1.7%로 낮은 반면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15.2%이기 때문이다. 광산품은 주로 原資材이므로 실효관세율이 낮다.

그러나 음·식료품의 경우 제당과 역관세현상이 두드러지는 정곡 및 제분(-4.0%)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10% 이상의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섬유 및 가죽제품은 의복 및 장신구와 가죽 및 모피제품에 대한 실효보호가 낮은 대신 섬유직물은 17.6%의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종이·나무제품도 製材 및 木材品이 15.3%의 보호를 받고 가구는 8.5%의 보호율을 향유하고 있다.

이처럼 경공업에서는 완제품에 대한 기본관세율 8%에 비하여 높은 실행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제Ⅲ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음·식료품에 관한 예외적인 높은 관세율과 섬유제품이나 기타 목재제품에 대한 調整關稅 때문이다.

음·식료품에 대한 고관세는 일부나마 농림수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율과 輸入制限措置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관세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실효관세율이 평균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 산업이 원료에 대한 관세장벽을 이유로 관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실효관세율이 非關稅障壁을 감안하지 않으므로 만약 수입제한조치로 음·식료품 원료의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섬유제품의 경우 섬유직물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으로서 상당한 대외경쟁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산 등의 값싼 수입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으로 조정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의류산업에서는 6.4%의 높은 중간재 관세율을 적용받아 완제품에 대한 8.0%의 실행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실효관세율(4.3%)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섬유산업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다.

중공업에서는 화학제품의 경우 화학비료 및 농약(-1.9%)이 피해를 입고 있는 대신 유기화학 기초·중간제품이 11.3%의 보호를 받고 나머지 제품은 6% 내지 8%의 보호를 받고 있다. 중간재에 가까운 석유제품에 비하여 석탄제품(16.0%)은 관세율체제로 혜택을 입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요업 및 토석제품에서도 낮지 않은 실효관세율을 나타낸다. 제1차 금속은 제강 1차제품이 15.5%의 보호를 받으나 제철 및 제강은 0%에 가까운 보호를 받고 있다. 일반기계에서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가 약 10%의 보호를 받으나 일반·특수용 산업기기(5.9%, 6.1%)가 음·식료품을 제외한 제조업 전체평균(7.2%)보다 낮은 실효보호를 받고 있다. 전기 및 전자기계에서는 소비재인 가정용 전기 및 전자기기는 10.4%의 높은 보호를 받고 있으나 전자기기 부분품은 낮은 보호를 받고 있다. 이밖에 정밀기계는 평균보다 낮은 5.7%의 보호를 받고 있고 자동차(8.7%)에 비하여 선박 등을 포함하는 기타 수송기계는 -3.2%의 實效被害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중공업의 경우 제Ⅳ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완제품에 대한 균등관세율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어 실효관세율도 대체로 평균적인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석탄제품이나 제강 1차제품 등 일부 품목에서는 실효관세율이 15%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이 낮은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0%를 웃돌아 주어진 실행관세율이 보호해야할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表 V-2> 1075 交易財產業의 實効關稅率 分布

(單位: 개, %)

	20 초과	10 ~ 20	8 ~ 10	5 ~ 8	0 ~ 5	0 이하
1. 農林水產品		5. 水産物		1. 作物	4. 林産物	2. 畜産 및 養蠶 3. 農業 서비스
2. 礦産品					7. 原油 및 天然가스 9. 非金屬 鑛物	6. 石灰 8. 金屬鑛石
3. 飲·食料品	10. 肉類 및 酪農品 14. 빵, 菓子 및 곡수類 15. 기타 食料品 16. 飲料品	11. 水産加工品			13. 製糖	12. 精穀 및 製粉 17. 醬梅
4. 纖維·가죽製品		19. 纖維織物	18. 纖維絲 20. 纖維製品		21. 衣服 및 裝身品 22. 가죽 및 毛皮製品	
5. 종이·나무製品		23. 製材 및 木材品	24. 家具		25. 펄프 및 종이	
6. 化學製品		27. 有機化學 基礎·中間製品	28. 合成樹脂 및 合成고무 36. 고무製品 37. 플라스틱製品	29. 無機化學基礎製品 30. 化學纖維 32. 醫藥品 및 化粧品 33. 기타 化學製品		31. 化學肥料 및 農藥
7. 石油·石炭製品		35. 石炭製品			34. 石油製品	
8. 窯業·土石製品			38. 유리 및 陶磁器 40. 기타 窯業 및 土石製品	39. 시멘트 및 시멘트製品		
9. 第1次金屬		42. 製鋼 1次製品			41. 製鐵 및 製鋼 43. 非鐵金屬 및 1次製品	
10. 金屬製品				44. 金屬製品		
11. 一般機械		47. 컴퓨터 및 事務用機械		45. 般産業用機械 46. 特殊産業用機械		
12. 電氣 및 電子機械		49. 家庭用電氣電子機器	50. 通信機器	48. 電氣機械 및 裝置 52. 精密機器	51. 電子機器部分品	
13. 精密機械						
14. 輸送機械				53. 自動車		
15. 其他製造業製品			55. 기타 製造業製品			54. 기타 輸送機械 26. 印刷出版
小 計	4	9	15	7	11	9

資料: 韓國銀行 및 關稅廳 電算資料.

나. Balassa 방식에 의한 實效關稅率 推定值

한편 Balassa 방식에 의한 실효관세율은 <表 V-3>에 나타나 있다. 이론상 Corden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Balassa 방식에 의한 실효관세율은 참고로 첨부한 것이다.

<表 V-3> 1994年 IO75部門 實效關稅率 : Balassa

(單位 : %)

IO75産業	實 行 關 稅 率	實 效 關 稅 率	中 間 材 實 行 關 稅 率	中 間 材 投 入 比 重	非 交 易 財 的 附 加 價 值 投 入 比 重
交易材 全體平均(標準偏差)	6.8(5.0)	12.0(14.1)	3.3(16.7)	62.5(20.2)	10.6(3.6)
製造業 全體平均(標準偏差)	7.3(4.9)	13.8(14.4)	3.6(1.4)	68.7(12.9)	11.1(3.1)
飲 食 料 品 除 外 製 造 業 *	6.3(2.1)	10.6(7.3)	3.4(1.1)	68.6(10.4)	11.3(2.7)
1. 作物	6.2	7.0	0.7	20.9	3.2
2. 畜産 및 養蠶	5.6	-7.8	7.9	79.2	8.2
3. 農業 서비스	0.0	-2.4	1.9	32.3	9.9
4. 林産物	2.8	2.7	0.4	10.5	2.1
5. 水産物	15.2	22.7	1.7	36.8	10.4
6. 石炭	1.0	-0.1	1.2	31.4	13.3
7. 原油 및 天然가스	1.9	1.9	0.0	0.0	0.0
8. 金屬鑛石	1.0	-0.7	1.6	39.9	14.4
9. 非金屬鑛物	2.8	2.5	1.0	29.6	13.1
10. 肉類 및 酪農品	10.5	40.3	4.1	80.3	12.4
11. 水産加工品	15.5	36.4	8.3	76.9	16.4
12. 精穀 및 製粉	5.3	-6.0	5.7	95.0	2.8
13. 製糖	4.8	6.3	3.5	79.2	8.9
14. 啤, 菓子 및 곡수類	15.1	46.5	4.7	72.0	12.9
15. 기타 食料品	13.0	38.7	4.8	74.8	11.9
16. 飲料品	32.5	71.9	4.5	50.4	11.9
17. 담배	0.0	-1.4	1.2	22.6	3.7
18. 纖維絲	7.2	15.2	4.5	81.6	12.0
19. 纖維織物	11.3	27.8	4.7	73.0	12.3
20. 纖維製品	8.6	12.9	5.0	71.2	11.5
21. 衣服 및 裝身品	8.0	6.3	6.4	72.5	11.9
22. 가죽 및 毛皮製品	5.9	5.2	4.6	73.0	12.7
23. 製材 및 木材品	8.9	26.0	3.4	75.7	13.4

<表 V-3>의 繼續

(單位: %)

1075産業	實 行 關 稅 率	實 效 關 稅 率	中 間 材 實 行 關 稅 率	中 間 材 投 入 比 重	非 交 易 財 的 附 加 價 值 投 入 比 重
24. 家具	8.2	12.4	4.5	69.4	12.4
25. 펄프 및 종이	4.3	5.0	2.9	71.3	12.7
26. 印刷出版	1.1	-2.3	2.2	59.7	14.3
27. 有機化學 基礎·中間製品	7.1	17.3	3.5	77.4	10.2
28. 合成樹脂 및 合成 고무	7.6	14.8	4.7	79.6	12.4
29. 無機化學 基礎製品	6.3	12.4	2.5	67.4	17.3
30. 化學纖維	6.6	12.7	4.8	84.8	13.5
31. 化學肥料 및 農藥	3.4	-3.1	4.2	82.4	12.0
32. 醫藥品 및 化粧品	7.3	11.0	3.1	60.3	18.0
33. 기타 化學製品	6.8	10.4	3.9	71.4	12.3
34. 石油製品	2.6	3.7	1.6	73.3	4.1
35. 石炭製品	5.0	24.0	1.1	80.7	7.8
36. 고무製品	7.5	11.1	4.0	67.4	10.9
37. 플라스틱製品	7.7	11.4	4.3	69.1	9.6
38. 유리 및 陶磁器	8.1	12.3	2.4	51.8	11.8
39. 시멘트 및 시멘트製品	5.4	9.3	2.3	65.5	14.2
40. 기타 窯業 및 土石製品	7.5	13.5	2.0	57.0	14.8
41. 製鐵 및 製鋼	2.3	0.4	2.3	86.8	10.0
42. 製鋼 1次製品	6.9	25.5	3.1	82.7	8.9
43. 非鐵金屬 및 1次製品	4.3	7.1	2.6	75.0	11.9
44. 金屬製品	6.0	7.6	3.6	66.9	11.0
45. 一般産業用機械	6.1	7.4	3.3	62.4	9.1
46. 特殊産業用機械	6.2	6.9	2.4	44.2	6.6
47. 컴퓨터 및 事務用機械	7.5	12.9	3.2	65.4	7.9
48. 電氣機械 및 裝置	6.4	9.5	3.3	66.4	10.0
49. 家庭用 電氣電子機器	7.4	15.7	3.5	73.5	11.5
50. 通信機器	6.9	11.0	2.8	61.2	11.0
51. 電子機器部分品	4.8	4.8	3.0	62.7	10.1
52. 精密機器	5.7	6.5	1.9	41.0	8.5
53. 自動車	8.0	10.9	4.1	62.9	8.3
54. 기타 輸送機械	1.2	-4.1	2.9	64.4	11.1
55. 기타 製造業製品	7.8	11.1	3.1	55.7	12.3

註: 實行關稅率은 關稅納付額을 輸入額으로 나눈 數值이며, 中間材 關稅率은 各 産業部門 中間材 投入係數를 該當産業의 實積關稅率으로 곱한 數值임.

資料: 關稅廳 電算資料.

韓國銀行, 「1993년 産業聯關表(延長表) 概要」, 1996.

전술한 바와 같이 Corden은 완제품 생산에 투입된 비교역재에서 교역재 부분만 중간재로 간주하는 반면 Balassa는 완제품 생산에 투입된 비교역재 전체를 중간재로 간주한다. 따라서 Balassa식에서는 주어진 實行關稅率이 보호하여야 할 附加價值가 Corden식에 비하여 Balassa식이 적기 때문에 實效關稅率이 크게 추정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表 V-3>에서 보듯이 실행 및 중간재 관세율은 Corden식과 동일하나 중간재 투입비중이 Balassa식에서는 Corden식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이 대부분인 데서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비교역재의 부가가치 비중(표의 마지막 열)이 클수록 Balassa식의 실효보호율을 절대값은 Corden식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5. 實效關稅率로 본 關稅率政策

가. 實效關稅率의 意味

수입제품에 대한 關稅는 일반적으로 輸入減少와 國內生産의 增大를 위하여 부과된다. 그런데 완제품에 대한 소비는 名目關稅率에 의하여 결정되는 반면 국내생산은 實效關稅率의 上昇으로 촉진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실효관세율은 附加價値의 變化率을 측정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생산요소의 이동이 원활하다면 실효관세율을 증대시키는 특정 산업의 관세율조정은 당해 산업의 생산을 촉진한다. 實效關稅率의 重要性은 전체 關稅率構造와 한 나라 經濟의 投入-產出構造를 동시에 감안할 때 비로소 정확한 관세의 보호정도를 산업별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산업에 대한 實質的 保護水準은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과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 그리고 중간재 투입비중(또는 부가가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효과에 대한 변화와 국내자원의 이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실효관세율의 추정을 기반으로 關稅率構造를 調整할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逆關稅現象 등의 기현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또한 關稅率政策에 따른 國內資源의 誘引體系를 거시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 실효관세율의 추정이 산업보호 및 무역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다.

앞 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加工度別 差等關稅率構造를 유지하고 있어 實效關稅率이 名目關稅率보다 높은 편이다. 그리고 實效關稅率의 產業別 隔差는 실행관세율에 기준한 격차에 비하여 대략 2배에 가까워 완제품에 적용된 관세율을 기준한 名目的 保護보다는 실질적 보호가 산업별로 더 큰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명목적 실행관세율에 기반한 정책변화는 국내자원의 이동을 오도할 수 있음을 실효관세율의 추정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表 V-4>에서 보듯이 55개 교역재 중 33개 품목이 10% 이하의 실질적 보호를 받고 있다. 10%를 초과하는 보호를 누리고 있는 품목 13개 중 20% 이상의 품목은 전부 음·식료품이며 이외에도 수산품과 섬유직물, 목제품 등 10% 이상의 보호를 받는 경공업 제품이 7개 품목이고 중공업제품에서는 유기화학제품과 제강 1차제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가정용 전기전자기기의 4개 품목이 있다. 특히 輕工業에서는 關稅率構造에 따른 實質的 保護가 매우 높거나 아니면 5% 이하의 또는 피해를 입고 있는 兩極化現象이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대부분의 중공업제품은 실효관세율이 평균치에 몰려 있는 것이 경공업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축산 및 양잠, 정곡 및 제분 등 逆關稅現象이 나타나는 품목도 9개에 달한다.

<表 V-4> 1次産業·輕工業·重工業의 實效關稅率 分布

(單位: 개)

	20% 초과	10~20%	5~10%	0~5%	0% 이하
1차산업	0	1	1	3	4
경공업	4	3	4	4	3
중공업	0	5	17	4	2
계	4	9	22	11	9

資料: 韓國銀行 및 關稅廳 電算資料.

경공업에서 전체 18개 품목 중 7개 품목이 높은 실효보호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음·식료품과 섬유제품 그리고 기타 목제품에 대한 高關稅 때문이다. 중공업의 경우 대체로 균등관세율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어 전체 28개 품목 중 17개 품목이 평균적인 실효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세정책은 이들 경공업제품과 유기화학제품, 제강 1차제품, 컴퓨터와 사무용기기, 가정용 전기전자기기로 국내자원이 이전되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중 중공업제품들은 정부가 관세를 통하여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효보호가 높은 것이 아니라 중간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효관세율이 높은 것이며 이처럼 실효관세율은 투입-산출구조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하여 실효관세율 5% 이하나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는 제당, 의복 및 장신품, 전자기기 부분품, 정곡 및 제분, 화학비료, 기타 수송기계산업 등은 관세율체제로 인하여 자원유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편이다. 이들 대부분의 제품은 완제품에 비하여 중간재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第Ⅲ章에서 논의된 것처럼 우리나라 關稅率構造는 관세율인하에 시제의 실시 이후 均等關稅率體制로 전환한 바 있다. 다만 음·식료품에 관한 高關稅와 섬유, 목제품 등에 대한 調整關稅로 인하여 경공업에서 균등관세율정책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이는 第Ⅳ章의 輸入構造의 變化에서 보듯이 高費用構造와 所得增大로 인한 輸出減少와 輸入擴大 등 경공업산업의 급속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공업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자주 인상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실효관세율도 음·식료품과 섬유직물, 수산물 등에서 높은 실효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공업에서는 消費財와 中間材의 輸入依存度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공업에서는

균등관세율체제에 따라 실효보호율이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中間材와 投資材의 輸入依存도가 감소하고 消費財에서도 그 의존도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關稅率政策은 대략 均等關稅率體系를 그대로 유지하여 지금까지의 수입구조 변화에 부응하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세한 조정을 수행하는 기초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關稅率調整은 우선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고 많은 부분 중간재로 투입되는 原料의 關稅를 無稅化하거나 하향 조정하고 세부 작업을 통하여 필요하다면 의복 및 장신품, 펄프 및 종이, 전자기기 부분품과 같은 낮은 실효관세율을 나타내는 품목과 화학비료 및 농약이나 정곡 및 제분 등 역관세현상이 나타나는 품목들은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중간재에 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IO 統合 25部門 實效關稅率 推定值

貿易構造와 實效關稅率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IO75개 부문의 실효관세율을 IO 통합 25부문으로 재분류하는데 그 加重值로서 各產業의 附加價值를 이용한다.

<表 V-5>는 각종 관세율과 輸出入構造를 統合產業別로 분류한 것이다. 여기서 수입비중은 국내생산에 대비한 수입으로 자급도를, 그리고 간접수출비중은 중간재로서 수출에 이용된 비율을 의미한다.

음·식료품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수입제품의 많은 부분이 중간재보다는 소비(약 34%)에 사용되기 때문이며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간접적 수출비율도 큰 섬유·가죽제품도 중공업에 비하면 8.6%의 높은 실효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역시 중공업 수입재에 비하여 중간재로 이용되고 있는 비중은 적은 편이다.

<表 V-5> 實行·實效關稅率과 輸出入構造

(單位: %)

IO 產業	實行關稅率 (標準偏差)	輸入 比重	輸入財中 中間材 投入比率	實效 關稅率 (標準偏差)	間接 輸出 比重	直·間接 輸出 比重
交易財	6.8(5.0)	21.8	92.7	8.0(9.1)	6.6	25.8
製造業	7.3(4.9)	18.8	91.2	9.0(9.1)	7.0	27.1
飲·食料品 除外 製造業	6.3(2.1)	20.1	93.4	7.2(4.6)	7.0	30.2
1. 農林水產品	6.3	16.1	88.8	5.3	2.1	5.2
2. 鑛山品	1.8	358.1	100.0	1.0	3.8	6.1
3. 飲·食料品	11.6	9.3	65.9	18.9	1.6	5.1
4. 纖維·가죽製品	8.3	11.1	85.3	8.6	12.0	59.4
5. 종이·나무製品	6.5	20.1	95.5	8.7	5.4	10.2
6. 化學製品	7.4	21.9	96.0	7.4	10.7	26.9
7. 石油·石炭製品	2.6	19.6	88.1	8.6	9.1	20.1
8. 窯業·土石製品	7.7	6.4	88.0	8.9	6.1	10.0
9. 第1次 金屬製品	4.6	18.9	100.0	7.0	11.0	25.6
10. 金屬製品	6.0	6.9	90.1	5.6	4.4	23.2
11. 一般機械	6.3	40.8	96.2	7.2	5.1	23.1
12. 電氣 및 電子機器	5.4	25.8	95.5	7.2	6.8	47.9
13. 精密機器	5.7	107.6	81.5	5.7	7.8	37.9
14. 輸送機器	3.3	10.7	98.1	2.9	1.3	24.9
15. 其他製造業製品	6.9	11.0	40.3	3.6	4.5	24.6

註: 1. 輸入比重은 輸入額/生産額임.

2. 中間材 投入比率, 直·間接輸出比重, 輸入比重은 1993年 數值임.

3. 實效關稅率은 Corden식 數值임.

資料: 關稅廳 電算資料.

韓國銀行, 「1993년 産業聯關表(延長表) 概要」, 1996.

화학제품은 수출과 수입비중이 높고 실행 및 실효관세율도 서로 같다. 석유·석탄제품은 실행관세율이 낮고 수입비중도 수출보다 큰 반면 실효관세율은 8.6%로 실행관세율의 3배에 달하는데 이는 석탄제품의 중간재 관세율이 1.1%로 석탄제품의 실효관세율이 16%에 달하기 때문이다(석유제품은 3.2%). 금속제품은 수입비중(6.9%)으로 볼 때 자금도가 높고 간접 수출비중도 높지만 실효관세율

은 낮다. 반면 자급도가 낮은 일반기계나 정밀기기는 간접 수출비중이 낮다. 국내생산에 비하여 수입비율이 큰 전기 및 전자기기(14.1%)는 실행관세율이 5.4%인 반면 수출비율은 2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효관세율은 7.2%로 실행관세율보다는 높으나 이는 제조업 평균에 불과하다. 수송기기의 경우 輸出比重이 12.3%로 輸出寄與度가 높으나 실효보호는 2.9%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IO75부문의 기타수송기계(선박포함)가 낮은 실행관세율(1.2%)과 실효피해(실효보호율 -3.2%)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다. 産業別 輸出入 樣相과 關稅率

<表 V-6>은 이를 IO75 細分類産業으로 분류한 것으로 상기의 작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그리고 實效關稅率은 Corden식에서 추정된 수치이다. 實行關稅率과 輸入比重·中間材 投入比率의 相關關係係數(correlation coefficient)는 각각 -0.20, -0.34인 반면 실효관세율과 직접 그리고 간접수출은 -0.06, -0.04로 거의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加工段階別로 관세율의 高低가 정해져 있는 구조인데 산업별로 이를 상세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농림수산품의 경우 統合産業 구분으로는 수입비중은 높으나 중간재 투입비율은 중간에 속하고 直·間接 輸出比重은 낮는데 實效關稅率은 實行關稅率에 비하여 5.3%로 1% 낮다. <表 V-6>의 세분류에 따르면 축산 및 양잠은 수입비중이 크고 중간재투입은 중간이나 間接輸出은 적은 편이 아니므로 실행관세율을 인상하여 실효관세율을 -5.7%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 ② 광산품의 경우 중간재 투입비율이 100%에 달하여 실행관세율은 1.8%이다.
- ③ 음·식료품은 통합산업으로는 수입비중, 중간재 투입비율, 直

· 間接 輸出比重이 낮아 實行·實效關稅率이 높다. <表 V-6>의 세분류에 따르면 수산가공품은 수입비중과 중간재 투입이 낮으나 실효관세율은 높아 수출은 많은 편이다. 정곡 및 제분과 제당을 비교할 때 실행관세율은 비슷하지만 후자의 경우 수입비중과 중간재투입이 높고 실효관세율은 4.3%로 수출이 11.5%에 달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實效被害를 보고 있어 수출비중은 매우 낮다.

- ④ 섬유·가죽제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輸入比重과 中間材 投入比率이 낮고 수출은 많으며 이에 따라 實行·實效關稅率은 8%에 달한다. 세분류에 의하면 纖維絲는 중간투입이 많아 관세율이 낮아야 하는데 간접수출이 많으므로 국내생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약 8%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의복 및 장신품은 完製品으로 實行關稅率은 거의 10%에 달하나 中間材 平均關稅率이 6.4%로 實效關稅率은 4.3%에 불과하다. 그러나 직접수출은 50%에 육박하여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다.
- ⑤ 종이·나무제품은 輸入比重과 中間投入이 높아 實行關稅率은 낮은 편이지만 세분류에 따르면 製材 및 木材品은 중간투입과 수입비중이 家具보다 많으므로 家具보다 實行關稅率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製材 및 木材品이 1.5% 높고 실효보호는 그 크기가 거의 두 배에 달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 ⑥ 화학제품은 수출비중이 수입보다 약간 높고 중간투입률은 96%에 달하는데 實行·實效關稅率은 7.4%로 동일하다. 세부적으로는 화학비료 및 농약은 원재료로 낮은 실적관세율을 적용받아 약간의 實效被害를 보고 있으나 수출은 수입에 비하여 그 비중이 크며 의약품과 화장품은 완제품으로 적용 관세율은 8%이나 실효관세율은 이보다 낮고 수출비율도 매우 낮다.
- ⑦ 석유·석탄제품은 實行關稅率(2.6%)은 매우 낮으나 實效關稅

率は 높다(8.6%). 이는 석탄제품의 중간재 평균관세율이 낮아 실효관세율은 16%에 달하는 데 비하여 석유제품은 수입비중이 높아 실적관세율이 낮고 이에 따라 실효보호는 낮으나 수출비중은 높으므로 석유제품의 중간재 투입률이 82%로 약간 낮아 실행관세율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

- ⑧ 요업 및 토석제품은 實行·實效關稅率이 제조업 전체 평균과 비슷하나 기타 요업·토석제품은 94.4%의 중간투입률에도 불구하고 8.5%와 9.7%의 實行·實效保護를 받고 있다.
- ⑨ 第1次 금속제품은 100%의 中間投入率로 4.6%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7%의 실효보호로 25.6%의 수출을 이룩하고 있다. 제철 및 제강은 2.3%의 관세를 적용받으나 보호는 쯤에 가깝고 제강 1次製品은 실효관세율이 실행관세율에 비하여 두 배보다 큰 15.5%의 보호를 받고 있다.
- ⑩ 금속제품은 높은 附加價値로(55.9%)로 인하여 適用關稅率보다 實效關稅率이 낮다. 그러나 수출은 수입비중보다 4배 정도 많다.
- ⑪ 일반기계는 輸入依存度가 높아 관세율도 낮은 편에 속하며 컴퓨터 및 사무용기계는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實效保護率도 10%에 육박하여 수출도 생산량의 절반인 49.8%에 달한다.
- ⑫ 전기 및 전자제품은 수출입비중이 높아 實行關稅率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實效保護는 높다. 전자기기 부분품은 수입비중이 높아 실적관세율도 낮고 실효보호도 낮으나 67.6%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가정용 전기전자기기는 낮은 수입의존도로 適用關稅率이 높고 실효보호도 높아 輸出比重도 크다.
- ⑬ 정밀기기는 輸出入 比重이 높고 이에 따라 관세율도 낮다.
- ⑭ 수송기계는 낮은 輸出入 比重으로 8.5%가 넘는 實行·實效關稅率을 유지하는 반면 선박 등 기타 수송기계가 37.2%의 수입비중으로 겨우 0.7%의 실행관세율을 유지하여 -3.7%의 피

해를 입고 있어 높은 輸出比重(63.7%)을 고려할 때 실행관세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 ⑮ 이 밖에 기타 제조업 제품은 實行關稅率에 비하여 낮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는 인쇄출판이 낮은 실행관세율(1.4%)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表 V-6> 1994年 關稅率과 1993年 輸入用途 및 直·間接輸出

(單位: %)

IO 産業	實行 關稅率	輸入 比 重	中間材 投入比率	實 效 關稅率	輸 出 比 重	直·間接 輸出比重
1. 作物	5.9	14.8	66.0	6.7	0.7	1.8
2. 畜産 및 養蠶	6.1	51.6	87.9	-5.7	0.4	13.5
3. 農業 서비스	0.0	0.0	100.0	-2.1	0.0	0.7
4. 林産物	2.8	125.4	88.1	2.7	8.9	10.5
5. 水産物	11.3	8.8	33.2	18.9	16.3	21.8
6. 石炭	1.0	357.5	100.0	-0.1	0.0	3.5
7. 原油 및 天然가스	1.3	0.0	100.0	1.9	0.0	0.0
8. 金屬鑛石	1.0	3,041.9	100.0	-0.6	37.7	44.4
9. 非金屬鑛物	3.6	11.7	100.0	2.1	2.1	5.8
10. 肉類 및 酪農品	9.4	18.0	34.6	21.3	1.5	3.7
11. 水産加工品	11.7	7.5	16.7	18.5	25.8	26.1
12. 精穀 및 製粉	5.4	0.9	23.3	-4.0	0.7	2.2
13. 製糖	5.3	58.2	90.6	4.3	11.5	14.5
14. 빵,菓子 및 국수類	17.1	2.6	19.8	27.8	4.3	5.6
15. 기타 食料品	13.0	10.4	61.9	23.4	4.2	5.6
16. 飲料品	32.8	4.6	39.4	50.9	1.5	4.1
17. 담배	0.0	4.5	5.6	-1.3	0.9	1.3
18. 纖維絲	7.8	19.3	99.9	8.7	16.2	59.3
19. 纖維織物	11.1	11.5	97.9	17.6	56.6	72.5
20. 纖維製品	10.0	6.1	33.8	8.9	46.7	49.6
21. 衣服 및 裝身品	9.6	4.4	5.6	4.3	47.8	48.8
22. 가죽 및 毛皮製品	7.4	10.3	57.9	3.5	57.3	58.6
23. 製材 및 木材品	10.5	37.6	97.4	15.3	2.7	7.3
24. 家具	9.0	2.2	30.0	8.5	2.5	3.5
25. 필프 및 종이	4.7	17.6	96.3	3.4	6.8	14.4
26. 印刷出版	1.4	4.2	18.3	-1.7	2.0	6.0

<表 V-6>의 繼續

(單位: %)

IO 産業	實 行 關稅率	輸 入 比 重	中間財 投入比率	實 效 關稅率	輸 出 比 重	直·間接 輸出比重
27. 有機化學 基礎·中間製品	7.5	42.6	100.0	11.3	20.0	35.1
28. 合成樹脂 및 合成고무	8.3	20.5	100.0	8.7	31.8	43.9
29. 無機化學基礎製品	6.9	38.0	100.0	7.8	6.8	33.4
30. 化學纖維	7.1	6.4	100.0	6.3	16.2	32.9
31. 化學肥料 및 農藥	4.0	11.9	99.9	-1.9	13.5	15.8
32. 醫藥品 및 化粧品	8.1	8.5	41.4	7.3	2.9	3.8
33. 기타 化學製品	7.6	49.5	98.0	7.1	22.5	36.5
34. 石油製品	2.2	20.5	81.9	3.2	11.7	21.4
35. 石炭製品	4.9	1.8	82.6	16.0	2.2	4.8
36. 고무製品	8.0	6.7	92.2	8.1	35.4	47.5
37. 플라스틱製品	8.5	7.0	93.1	8.4	9.7	22.2
38. 유리 및 陶磁器	9.1	16.2	90.9	9.7	5.3	29.5
39. 시멘트 및 시멘트製品	5.6	0.8	100.0	6.4	1.7	1.8
40. 기타 窯業 및 土石製品	8.5	9.4	94.4	9.7	8.8	13.9
41. 製鐵 및 製鋼	2.7	18.2	100.7	0.2	0.9	15.6
42. 製鋼 1次製品	7.3	8.4	100.0	15.5	20.8	28.9
43. 非鐵金屬 및 1次製品	5.0	61.2	100.7	4.7	16.5	31.8
44. 金屬製品	7.0	6.4	90.1	5.6	18.8	23.2
45. 一般産業用機械	6.3	31.5	95.4	5.9	9.1	16.7
46. 特殊産業用機械	6.8	50.7	99.0	6.1	14.6	18.8
47. 컴퓨터 및 事務用機械	8.0	28.7	65.9	10.2	49.8	50.4
48. 電氣機械 및 裝置	7.0	29.9	97.8	7.2	19.0	27.8
49. 家庭用 電氣電子機器	8.8	3.4	20.8	10.4	37.7	38.3
50. 通信機器	6.5	19.4	67.9	8.4	31.3	33.1
51. 電子機器部分品	5.2	39.9	99.9	3.7	55.8	67.6
52. 精密機器	6.0	99.9	81.5	5.7	29.1	36.9
53. 自動車	8.9	4.3	64.4	8.7	14.2	15.6
54. 기타 輸送機械	0.7	37.2	92.0	-3.2	62.6	63.7
55. 기타 製造業製品	8.7	16.1	55.5	8.5	39.8	44.9

註: 實效關稅率은 Corden식 數值임.

資料: 關稅廳 電算資料.

韓國銀行, 「1993年 産業聯關表(延長表) 概要」, 1996.

VI. 要約 및 結論

1.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지난 1983년과 1988년 정부는 第1, 2次 關稅率引下豫示制를 시행하여 관세율을 인하하고 均等關稅率體制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수입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통하여 內需産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均等관세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아직 加工度에 따라서 差別的인 關稅率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동일한 加工段階에서는 産業間 關稅率 隔差가 크게 존재하지 않고 관세율도 大幅的으로 引下된 바 있다. 이와 함께 WTO협정으로 양자간 혹은 다자간 관세율협상이 진행되면서 상당수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양허된 바 있다.

그러나 산업정책으로서 관세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상존한다. 우선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이 평균관세율만을 제한하고 있고 매 3년마다 관세양허의 수정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WTO협약은 特定的인 補助金政策을 금지하고 있고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각종 수입규제가 例外없는 關稅化로 이행될 예정이다. 또한 관세정책은 調整關稅나 反덤핑關稅 등 彈力關稅制度와 原產地表示規定과 關稅評價制度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소유하고 있어 관세정책에 따라 국제무역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관세정책의 정당성은 動態的 比較優位論에 입각한 산업보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경우 시장의 不完全性으로 인하여 外部經濟를 촉발하는 成長主導 產

業이 국내에 확립되지 못하면 이때의 社會的 厚生費用은 관세부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비용을 능가할 수 있다. 즉, 시장과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外部效果를 內在化할 수 있는 財產權 確立 등의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한 개도국에서는 관세를 포함한 보호정책이 잠재적인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보호정책이 信號效果를 동반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상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관세장벽을 유지하는 이유는 성장산업을 스스로 발전하도록 비효율적인 시장체제를 개선시키는 경제정책이 高費用政策이거나 제도적 요인으로 당분간 실현가능한 정책이 아니므로 보호정책이 過渡期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보호정책은 저렴하고 품질 좋은 수입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성장을 감퇴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다만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오른 국가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國內 尖端産業을 육성하는 정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올바른 정책방향은 보호정책이 아닌 制度的 效率性을 보완하는 정책일 수도 있다. 이러한 뜻에서 관세정책도 市場失敗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수단 중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보호정책은 시장제도의 불완전성을 개선하는 여타의 정책에 비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관세정책은 그 특성상 少數의 利益集團에 대하여 부당한 혜택을 공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제주체가 생산적인 경제활동보다는 비생산적인 정치적 로비에 몰두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여지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개편 배경에는 정부 스스로가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對內外的 公正競爭體制를 마련함으로써

써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자율적인 민간경제의 발전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개편원칙은 加工段階와 國産化 可能性에 따라 差等化하여 비경쟁원료는 1%, 경쟁원료는 3% 그리고 국산화근관 품목 중 일차가공품은 5%, 이외 중간재 및 공산품은 8%의 관세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가보호와 國內自立度의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關稅率引下豫示制가 終了된 1994년 우리나라 平均 名目關稅率은 7.9%로 수렴되어 선진국의 평균관세율보다 대략 1~2% 정도 높고 平均 實行關稅率(關稅徵收額/輸入額)은 4.4%(1995년)에 불과하여 미국·EU(3.3%), 일본(3.4%), 대만(4.9%)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평균관세율은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다.

第Ⅲ章에 따르면 關稅率引下豫示制 시행 이후 중공업에서는 실행관세율이 상당히 하락하여 HS10單位를 기준하면 중공업의 加重平均 關稅率(關稅額/輸入額)은 1990년의 7.8%에서 1994년 5.5%로 하락하였고 重工業 關稅率間의 標準偏差도 1990년의 4.3%에서 1994년에는 3.3%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나 關稅率引下豫示制의 基本原則이 중공업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경공업에서는 음·식료품에 대한 高關稅와 조정관세로 第2次 關稅率引下豫示制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HS품목의 加重平均 關稅率은 1994년에 8.8%에 달하여 중공업보다 약 3.3% 정도 높은 평균관세율을 유지하였다. 특히 경공업에서의 산업간 관세율의 標準偏差는 중공업과는 달리 1990년의 7.8%에서 1994년의 10.6%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加工段階別로 보면 공산품의 경우,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실시되기 직전인 1982년 당시 原料, 中間材, 完製品에 각각 약 11%, 22%, 26%의 관세율이 부과되던 것이 1994년에는 원료에 평균 2.8%, 중간재는 7.0% 그리고 완제품에는 7.1%의 名目關稅率을 유지함으로써

關稅率 隔差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특히 중간재와 완제품간의 관세율은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中間材와 완제품 산업에 대한 차별적 관세율 정책을 철폐하였다. 외국의 경우 대만은 1988년 이후 관세율 5% 이하의 중간수입재에 대한 환급을 불허하고 있으며, 일본은 1989년 당시 석유를 제외한 工產品에서 完製品의 單純平均 實行關稅率이 5.4%였던 반면 半加工品의 평균관세율은 5.9%로서 반가공품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더 높았다. 자원이동을 촉발하는 요인들 가운데 相對價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일본이 중간재와 완제품에 비교적 균등한 관세율을 적용한 것은 의미 있는 정책이다.

關稅率引下豫示制 실시 이후 우리나라 대부분 산업에서 加重平均 關稅率과 單純平均 關稅率의 隔差가 감소하고 있다. 원래 수입원자재에 대한 낮은 관세율로 단순평균 관세율은 가중평균치보다 高率인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평균관세율의 격차가 1990년 당시 4.1%에서 1994년 2.8%로 줄어들었다. 경공업과 중공업에서도 그 차이가 각각 3.5%, 2.9%에서 1.7%, 1.5%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수입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이러한 상황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加工度別 關稅率 隔差의 감소로 인하여 이들 두 평균관세율의 간격도 같이 좁혀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第2次 關稅率引下豫示制의 施行으로 加工度에 따른 差等 關稅率體制가 실제로 어느 정도 약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調整關稅,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割當關稅 등이 매우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들 彈力關稅는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수입급증이나 해외가격의 급변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관세로써 여과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들 탄력관세가 만성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치적 로비에 의하여 시행된다면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추구하고 있는 產業別 均等關稅와 關稅引下의 基本原則이 저해될 수 있다. 조정관세가 만성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이로 야기되는 관세율구조의 왜곡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中間材産業으로의 자원이동이 저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공업에 대한 산업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暫定關稅로써 이를 수용하고 한정적인 보호에 대한 政府意志를 확고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위한 보호가 기본관세율의 변경으로 시행될 경우, 이러한 성격의 정부지원은 斜陽産業에 대한 永久的인 보호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국내기업이 생산적인 활동을 영위하기보다는 정치적 로비에 의한 현상유지를 기대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소득증대와 고비용구조에 따른 消費財 輸入增加로 경공업에서 關稅負擔率이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경공업 수입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動機는 대부분 斜陽産業에 대한 一時的 保護라기보다는 政治的 配慮에 있다. 이러한 성격의 보호정책은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수입재의 가격상승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전된다는 면에서 간편한 정책수단이기도 하지만 보호가 慢性化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관세율인하예시제로 음·식료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공업제품에서 8%의 기본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利益集團의 형성으로 均等關稅率 중심의 정책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構造調整을 위한 한시적인 暫定關稅의 運用을 제외한 여타의 관세율 조정이 半永久化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한편 본고의 第V章에서는 전체 關稅率構造와 우리나라 經濟의 投入-產出構造를 동시에 감안한 實效關稅率을 추정하였다. 關稅가 일반적으로 輸入減少와 國內生産의 增大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입은 名目關稅率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반면 국내생산은 實效關稅率에 따라 증대될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생산요소의 이동이

원활하다면 실효관세율을 인상하는 관세율조정은 국내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효관세율의 추정을 기반으로 關稅率構造를 調整할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逆關稅現象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또한 關稅率政策에 따른 國內資源의 誘引體系를 거시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 실효관세율의 추정이 산업보호 및 무역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완제품에 적용된 실행관세율을 기준한 名目的 保護보다는 실질적 보호가 산업별로 더 큰 차이가 나서 그 격차가 약 2배에 가깝다. 따라서 명목적 실행관세율에 기반한 정책변화는 국내자원의 이동을 오도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55개 교역재 중 10%를 초과하는 보호를 누리고 있는 품목 13개 중 음·식료품, 수산물, 섬유작물 등 경공업제품이 7개 품목이고 중공업제품에서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가정용 전기전자기기 등 5개 품목이 있다. 특히 輕工業에서는 關稅率構造에 따른 實質的 保護가 매우 높거나 아니면 5% 이하의 또는 피해를 입고 있는 兩極化現象이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중공업의 경우 대체로 균등관세율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어 전체 28개 품목 중 17개 품목이 평균적인 실효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축산 및 양잠, 정곡 및 제분 등 逆關稅現象이 나타나는 품목도 9개에 달한다.

상기의 논의에 의하면 우리나라 관세정책은 위에서 언급된 7개 경공업제품과 5개 중공업제품으로 국내자원이 이전되도록 誘引體系를 마련해 주고 있다. 다만 이 중 중공업제품들은 정부가 관세를 통하여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효보호가 높은 것이 아니라 중간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효관세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실효관세율이 5% 이하나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는 제당, 의복 및 장식품 등 1차 산업을 제외한 13개 품목은 관세율체제로 인하여 자원유입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편이다. 경공업제품에서 실효관세율이 높은 품목들은 음·식료품에 관한 高關稅와 섬유, 목제품 등에 대한

調整關稅로 인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공업에서는 消費財와 中間材의 輸入依存도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공업에서는 均等관세율체제에 따라 실효보호율이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中間材와 投資材의 輸入依存도가 감소하고 消費財에서도 그 의존도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關稅率政策은 均等關稅率體系를 그대로 유지하여 지금까지의 수입구조 변화에 부응하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세한 조정을 수행하는 기초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關稅率調整은 우선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고 많은 부분 중간재로 투입되는 原料의 關稅를 無稅化하거나 하향 조정하고 세부 작업을 통하여 역관세현상이 나타나는 품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평균관세율은 關稅率引下豫示制 시행 이후 약 16% 인 하되었고 加工度別 關稅率 隔差도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非競爭 一次加工品(5%)을 제외한 중간재와 완제품의 명목관세율은 각각 7.0%, 7.1%로 양 품목간의 관세율 격차가 0.1%밖에 되지 않아 적어도 명목적인 보호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中間材産業이 취약한 우리나라 産業構造上 中間材産業으로의 資源配分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자원의 이동이 中間材와 完製品의 相對的 保護水準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均等關稅率體制가 도입된 이후, 중공업 中間材와 投資材의 輸入依存도가 상당히 하락하였고 消費財와 輕工業 中間材의 수입의존도는 상승한 바 있다. 第四章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공업에서 관세율이 인하되고 均等관세율체제가 대체로 잘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업제품의 국산화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특히 기술집약적인 기계·기기류 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돋보였다. 경공업의 경우 소득증대와 대외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1982년 이후 관세율의 전반적 인하로 인하여 수입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조경관세가 경공업 수입품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공업내 산업간 관세율이 차등화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재에 대한 수입규제로 單純加工의 소비재생산이 촉진되었고 間接的인 수입의존도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소비재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국내자원이 內需充足을 위한 低附加價値의 소비재생산에 투입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는데 이러한 뜻에서 소비재수입을 반드시 지양할 필요는 없다.

중공업에서는 均等關稅率體制의 導入으로 촉발된 資源移動이 重工業의 中間材와 投資財產業으로 집중되어 당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간재와 비교되는 완제품 관세율의 상대적 인하는 장기적으로 국내자원이 완제품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중간재산업으로 이전할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원론적으로는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중간재의 수입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完製品에 대한 同時間的이고도 大幅的인 관세율 인하는 국내자원을 중간재산업으로 유인하는 ‘一般均衡의 效果’를 촉발하여 輸入中間材의 관세율이 인하되기 전보다 中間材의 수입의존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현행 관세율정책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으로 인한 중간재와 완제품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입자유화를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야말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前提條件이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히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이를 止揚해야 할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國產中間材에 비하여 값싸고 효율적인 輸入中間材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성과 국산제품의 대외경쟁력이 증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성격의 經濟的 特化가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무역정책이란 제한된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 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그 정당성이 존재한다.

2. 結論

第II章에서 논의한 대로 經濟成長의 動因을 분석하는 成長論에서도 輸入代替의인 산업정책보다는 産業의 特化와 이에 따른 關連적인 무역확대가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한 요인이 되며 높은 수입의존도를 억제하기 위한 貿易障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자원의 효율적 운용방법으로서 값싼 수입재가 국산재를 대체할 수 있다면 한정된 국내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산업활동에 투입됨으로써 성장이 제고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自由貿易體制의 導入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尖端産業으로의 特化를 자동적으로 保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自由貿易下에서 저개발국가들이 현재 比較優位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가능성이 없는 非尖端産業이나 발전의 견인차로 알려진 中間材를 비교적 덜 사용하는 산업으로 특화한다면 저개발국가들은 장기적으로 低成長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성장잠재력을 가진 산업이 미래의 이윤을 담보로 투자를 유치할 수 없거나 外部經濟가 존재하고 재산권 확립이 미흡한 경우에만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불완전하거나 각종 경제 및 사회제도가 완숙하지 않은 저개발국가에서 비교적 보호정책의 수요가 크기 마련인데 이러한 보호정책이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정책에 비하여 차선의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정책운용이 요구된다.

경제성장과 관련한 상기의 논의는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 환경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輸出中心의, 그리고 選別的 輸入制限政策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점차 중공업위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선진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성장단계상 우리나라는 당분간 資本集約的인 産業과 中間材産業에 성장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루카스가 이야기하는 국내 첨단산업이 선진국 수

출품목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첨단산업이 선진국산업과 경쟁단계에 도달하였을 때 바람직한 무역정책이란 제한된 국내자원이 이들 산업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즉 市場體制의 強化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균관세율을 인하하고 中間材와 完製品에 관세율을 均等하게 賦課하는 정책은 국내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재를 활용하여 절약된 국내자원을 수출품 생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당연한 명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이 간과되고 회복불능의 斜陽産業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산요소가 사양산업에 묶여 있도록 하는 被動的인 보호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보호정책의 당위성은 제한된 국가자원이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산업지원을 위한 관세정책은 보조금에 비하여 次善의 政策이다. 다만 WTO협정에 따라 特定補助金이 금지 또는 상계되는 상황에서는 관세정책이 産業政策的 役割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양산업에 대한 보호가 전술한 바와 같이 성장산업에 대한 '相對的 被害'를 의미한다는 뜻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관세율 인상은 제한적인 조치이어야 한다. 만약 관세율정책을 통한 구조조정 등 정부지원이 정히 필요한 부문이 있다면 限時的인 보호정책의 限界를 정부가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뜻에서 保護撤廢를 '豫示化'할 수 있는 暫定關稅가 바람직하다. 잠정관세를 통하여 정부가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지원하되 이러한 도움이 一回的 措置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향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비생산적인 로비활동에 의존하기보다는 실물경제활동에 힘을 다할 것이다.

UR협상으로 우리나라의 平均 讓許關稅率이 8.2%로 인하되어 이 범위내에서 관세율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관세율정

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면 8.2%의 평균관세율을 보존하는 수준에서 개별산업의 보호보다는 국가전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관세율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戰略的 産業政策 (strategic industrial policy)으로서의 관세정책은 斜陽産業의 보호보다는 有望産業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이 또한 매우 선별적으로 운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는 정부가 성장산업을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輸入依存度의 變化로 볼 때 관세율인하에시제의 시행 이후 국내자원은 技術과 資本集約的인 기계·기기류산업으로 이동하여 왔다. 시장기능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적인 자원이동이며 따라서 관세율정책도 상기의 변화에 부응하고 일관적인 경제정책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현행의 均等關稅率體制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WTO協定 발효 이후 국가간 각종 무역장벽의 철폐로 수입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이와 함께 수출증대도 가능하다. 이러한 무역질서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관세정책이 단순한 수입억제보다는 국산화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장기적으로도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한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폐함으로써 有望産業의 實質的 保護를 강화하고 또한 국내소비재 시장을 적절히 개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내수충족에 투입되었던 국내자원이 수출산업에 유입되고 수입품과의 경쟁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국제경쟁력이 확보된다. 우리 경제의 수출구조가 중공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선진국과의 무역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對先進國 貿易赤字는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1996년에는 그 적자 폭이 약 414억달러에 달하는 등 적자 폭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런데 당분간은 우리 경제가 자본집약적인 중공업과 중간재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하루빨리 증대되어 선진제품과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바람

직한 산업정책이란 제한된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제의 균살을 제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일이다.

상기의 논의를 종합하면 자원의 효율적 운용방법으로서 값싼 수입재가 국산재를 대체할 수 있다면 限定된 國內資源이 생산적인 산업활동에 투입됨으로써 경제발전이 제고된다. 다만 성장의 중요한 동인인 첨단산업이 선진국제품과 경쟁관계에 있고 시장의 不完全性으로 인하여 당해 산업이 시장기능을 통하여 발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들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UR협상으로 平均關稅率引上이 제한된 현 시점에서 관세율 정책도 被動的인 斜陽産業의 保護에 편향되지 말고 보다 능동적으로 尖端産業과 中間材産業이 육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第II章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시장체제가 어느 정도 정립된 경제에서는 왜곡을 항상 수반하는 정부지원보다는 시장기능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성장정책이다. 그러므로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시작, 종료된 1984년부터 1994년까지 평균관세율이 인하되고 均等關稅率體制가 導入된 결과, 국내자원이 첨단산업인 증공업의 중간재와 투자재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이들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 經濟企劃院, 『WTO 출범에 대비한 우리의 정책대응』, 1994.
- _____, 『UR국별 이행계획서 의결』, 1994.
- 關稅廳 評價協力局, 『세계무역기구 협정문』, 1995.
- 관세심의위원회, 재정경제원 보도자료.
-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 _____, 전산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金珍洙·安鍾錫,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구조의 개편방향』, 연구 보고서 94-03, 한국조세연구원, 1994.
- 金昌男, 『일본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정책연구 92-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 산업별 최종 협정 내용과 대응전략』, 1994.
- 大韓貿易振興公社, 『일본의 통상정책』, 1990.
- 朴相泰, 『관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정책보고서 96-04, 한국조세연구원, 1996.
- 柳在元, 『전환기의 대만경제 - 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정책자료 94-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俞正鎬, 『韓·臺·日의 輸入依存構造 比較』, 연구보고서 95-02, 한국개발연구원, 1995.
- 俞正鎬·洪聖薰·李在鎬, 『산업보호와 유인체계의 왜곡 - 1990년 명목 및 실효보호율 추정』, 연구보고서 93-02, 한국개발연구원, 1993.

- 俞鎮宇, 『일본의 무역장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李元暎, 『한국경제의 산업무역모형』, 연구보고서 92-08, 한국개발연구원, 1992.
- 李俊求, 「수출촉진을 위한 최적관세의 이론」, 『경제학연구』, (33) 1985. 12, pp. 47~60.
- 張槿鎬, 「경제성장과 정부운영에 관한 일고: 제도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경제학회, 1997.
- 張槿鎬·金珍洙, 「관세 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 財務部 關稅局, 「관세율정책운용실적 및 방향」, 1991.
- _____, 「외국의 관세제도」, 1992
- 한국은행, 전산자료
- 通商産業部·大韓商工會議所, 「WTO 협정해설」, 1995.
- 韓國銀行, 「1990년 산업연관표(Ⅱ)」, 1993.
- _____, 「1990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 1993.
- _____, 「1993년 산업연관표」, 1996.
- 韓國銀行 調査第2部, 「80-85-90년 점속불변산업연관표 작성개요」, 1994.
- 韓弘烈,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특징과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 日本 通商産業大臣 官房調査統計部, 「1993年 産業聯關表(延長表)」, 1997.
- OECD, 「개도국에 대한 UR의 영향」, 1994.
- Cassen, Robert and Sanjaya Lall, "Lessons of East Asian Development,"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Vol. 10, 1996, pp. 326~334.
- Ciccone, Antonio and Kiminori Matsuyama, "Start-Up Costs and Pecuniary Externalities as Barriers to Economic Develop-

- 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9, 1996, pp. 33~59.
- _____, "Start-up Costs and Pecuniary Externalities as Barriers to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9, 1996, pp. 33~59.
- Corbo, Vittorio, "Trade Reform and Uniform Import Tariffs: The Chilean Experience," AEA Papers and Proceedings, May 1997, pp. 73~77.
- Corden, W. M., *The Theory of Protection*, Clarendon Press · Oxford, 1971.
- De Long, J. Bradford and Lawrence H. Summers, "Equipmen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May 1991, pp. 445~502.
- Field, Alfred J. and Edward M. Graham, "Is There a Special Case for Import Protection for the Textile and Apparel Sectors Based on Labour Adjustment?," *The World Economy*, Vol. 20, No. 2, March 1997, pp. 137~157.
- GATT,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U.S.A.*, November 1991.
- Gawande, Kishore, "US Non-tariff Barriers as Privately Provided Public Goo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4, 1997, pp. 61~81.
- Grossman, Gene M. and Elhanan Helpman, "Rent Dissipation, Free Riding, and Trade Policy,"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0, 1996. pp. 795~803.
- Grubel, Herbert G. and Harry G. Johnson, *Effective Tariff Protection*, Geneva, 1971.
- Harberger, Arnold C., "Reflections on Uniform Taxation," *Reflections of Uniform Taxation*, pp. 75~89.

- Krueger, 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4, June 1974, pp. 291~303.
- Lane, Philip R., "Trade Specialization, Endogenous Innovation and Growth,"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 11, No. 4, 1996, pp. 492~509.
- Lee, Jong-Wha, "Capital Goods Import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8, 1995, pp. 91~110.
- _____, "Government Intervention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NBER Working Papers No. 5060, March 1995.
- Lucas, Jr., Robert E., "Making a Miracle," *Econometrica*, Vol. 61, No. 2, March 1993, pp. 251~272.
- Osang, Thomas and Alfredo Pereira, "Import Tariffs and Growth in a Small Open Econom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0, 1996, pp. 45~71.
- Panagariya, Arvind, "How Should Tariffs Be Structured?," Policy, Research, and External Affairs Working Papers 353, February 1990.
- Singleton, Ross C., "Competition Policy for Developing Countries: A Long-Run, Entry-Based Approach,"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ol. XV, April 1997, pp. 1~11.
- Succar, Patricia, "The Need for Industrial Policy in LDC's - A Re-Statement of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28, No. 2, June 1987.

<附表 1> IO75 交易財産業 加重平均 關稅率 變化推移
(1990~1994)

(單位：%)

IO75品目	1990	1991	1992	1993	1994
농림수산물	4.1	7.7	6.0	5.5	6.3
작물	4.0	9.3	6.4	5.9	6.2
축산 및 양잠	5.8	6.6	6.4	6.1	5.6
임산물	2.5	2.6	3.0	2.7	2.8
수산물	10.6	9.8	10.1	11.3	15.2
광산물	4.1	1.1	1.1	1.3	1.8
석탄	1.0	1.0	1.0	1.0	1.0
석유 및 천연가스	5.0	1.0	1.0	1.3	1.9
금속광석	1.0	1.0	1.0	1.0	1.0
비금속광물	3.5	4.0	3.7	3.6	2.8
경공업	9.6	10.5	10.3	9.2	8.8
육류 및 낙농품	8.0	10.1	9.9	9.4	10.5
수산가공품	10.0	9.6	10.3	11.7	15.5
정곡 및 제분	5.2	5.5	5.5	5.4	5.3
제당	3.4	8.5	8.0	5.3	4.8
빵, 과자 및 국수류	13.9	13.4	20.3	17.1	15.1
기타식료품	13.0	14.0	14.0	13.0	13.0
음료품	37.2	36.7	37.7	32.8	32.5
담배	0.0	0.0	0.1	0.0	0.0
섬유사	9.2	9.0	9.2	7.8	7.2
섬유직물	12.5	12.3	10.8	11.1	11.3
섬유제품	13.1	12.8	11.9	10.0	8.6
의복 및 장신품	14.8	14.6	12.4	9.6	8.0
가죽 및 모피제품	9.8	10.0	9.2	7.4	5.9
목재 및 나무제품	12.3	12.1	12.0	10.5	8.9
목재가구	10.4	12.2	10.9	9.0	8.2
펄프 및 종이	4.7	5.3	5.0	4.7	4.3
인쇄출판	2.2	2.1	1.6	1.4	1.1
기타제조업제품	12.1	12.2	10.9	8.7	7.8

<附表 1>의 繼續

(單位: %)

IO75品目	1990	1991	1992	1993	1994
중공업	7.8	7.8	6.8	5.9	5.5
유기화학 기초·중간제품	8.4	8.7	8.9	7.5	7.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1.5	11.6	10.0	8.3	7.6
무기화학 및 기초제품	9.0	8.9	8.3	6.9	6.3
화학섬유	9.0	9.0	8.8	7.1	6.6
화학비료 및 농약	4.6	5.0	4.5	4.0	3.4
의약품 및 화장품	12.0	11.5	9.7	8.1	7.3
기타화학제품	11.1	10.7	9.3	7.6	6.8
석유제품	3.2	1.6	2.0	2.2	2.6
석탄제품	4.7	4.6	4.7	4.9	5.0
고무제품	11.4	11.6	9.4	8.0	7.5
플라스틱제품	11.9	11.8	10.3	8.5	7.7
유리 및 도자기	12.8	12.4	10.9	9.1	8.1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1.5	1.4	4.5	5.6	5.4
기타요업 및 토석제품	12.3	10.3	10.5	8.5	7.5
선철 및 조강	2.0	2.1	2.5	2.7	2.3
철강 1차제품	6.7	6.6	7.7	7.3	6.9
비철금속 괴 및 1차제품	6.2	6.0	5.9	5.0	4.3
금속제품	10.4	9.8	8.7	7.0	6.0
일반산업용기계	10.4	9.4	8.1	6.3	6.1
특수산업용기계	10.6	9.9	8.1	6.7	6.2
컴퓨터 및 사무용기계	11.0	11.0	9.9	8.0	7.5
전기기계 및 장치	10.3	9.9	8.2	7.0	6.4
가정용 전자전기기	8.2	15.0	12.9	8.8	7.4
통신기기	6.5	7.8	6.9	6.5	6.9
전자기기 부분품	4.5	5.7	4.8	5.2	4.8
정밀기기	9.2	8.6	7.2	6.0	5.7
자동차	11.1	12.7	11.2	8.9	8.0
기타운송기계	0.9	0.5	0.9	0.7	1.2
교역재 전체	7.3	7.1	6.3	5.6	5.5

註: 교역재 전체의 품목에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 기타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 관세청 전산자료.

<附表 2> IO75 交易財產業 實行關稅率의 單純平均과 標準偏差의 變化推移

(單位: 개, %)

	品目數		單純平均		標準偏差		最高값		最低값	
	1990	1994	1990	1994	1990	1994	1990	1994	1990	1994
농수산물	428	479	13.2	13.5	12.8	16.5	121.2	102.9	0	0
작물	186	209	15.0	15.0	13.9	17.0	50.4	101.5	0	0
축산 및 양잠	52	54	10.8	8.8	9.9	9.1	29.9	30.8	0	0
임산물	82	87	8.1	8.2	10.2	14.4	40.0	102.8	0	0
수산물	108	129	15.1	16.6	12.7	18.3	121.2	102.9	0	0
광산물	151	152	4.3	2.7	2.5	1.3	12.9	8.2	0	0.5
석탄	5	7	0.8	1.0	0.4	0.0	1.0	1.0	0	1.0
석유 및 천연가스	12	11	4.8	2.2	2.7	0.9	9.9	4.9	1.0	1.0
금속광석	22	22	1.0	1.0	0.3	0.2	1.5	2.0	0	0.5
비금속광물	112	112	5.0	3.1	2.1	1.1	12.9	8.2	0.2	0.6
경공업	2,693	2,800	13.1	10.5	7.8	10.6	53.9	103.3	0	0
육류 및 낙농품	132	136	13.5	15.5	11.9	13.6	40.1	41.0	0	0
수산가공품	85	114	15.5	18.1	8.4	17.6	45.8	103.3	0	0
정곡 및 재분	15	21	7.5	4.6	4.0	3.1	12.9	8.3	0	0
제당	10	11	10.0	14.9	5.3	18.6	18.9	61.7	3.4	3.1
빵, 과자 및 국수류	32	31	12.1	9.8	3.4	9.6	15.9	61.4	0	6.6
기타식료품	273	305	20.1	19.4	14.1	17.6	51.2	102.3	0	0
음료품	59	69	31.1	26.9	17.2	16.2	53.9	51.5	0	0
담배	8	9	0.0	9.1	0.0	18.0	0.0	41.0	0	0
섬유사	265	263	9.4	7.3	3.4	3.4	13.0	46.1	0	0
섬유직물	362	356	12.5	8.9	1.4	4.7	13.5	40.9	0.5	4.2
섬유제품	324	333	13.4	8.2	3.1	3.6	18.4	50.2	0	0
의복 및 장신품	183	188	13.9	7.8	3.6	0.9	16.2	9.0	0	0
가죽 및 모피제품	218	210	11.0	7.2	4.5	1.5	16.1	10.1	0	1.9
목재 및 나무제품	135	148	11.5	9.0	2.4	10.5	15.0	102.6	2.0	2.0
목재가구	31	31	11.1	8.2	2.8	0.1	13.0	8.4	2.8	7.8
펄프 및 종이	184	185	11.1	7.3	3.8	2.0	15.6	8.4	0	0.4
인쇄출판	37	39	3.7	2.3	5.8	3.5	14.7	8.2	0	0
기타제조업제품	340	351	11.6	8.7	3.6	9.3	16.7	74.0	0	0

<附表 2>의 繼續

(單位: 개, %)

	品目數		單純平均		標準偏差		最高값		最低값	
	1990	1994	1990	1994	1990	1994	1990	1994	1990	1994
중공업	5,582	5,717	10.7	7.0	4.3	3.3	71.9	103.7	0	0
유기화학 기초·중간제품	625	645	11.0	7.6	3.0	2.0	17.7	40.4	0	0.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01	103	12.1	7.9	1.9	0.9	13.1	8.5	0.8	1.3
무기화학 및 기초제품	362	375	11.1	7.3	3.5	2.1	18.8	13.6	0	0
화학섬유	43	40	9.6	7.4	3.3	1.9	12.8	8.3	0	1.4
화학비료 및 농약	24	34	10.2	7.1	2.4	2.5	13.0	8.6	0.9	0
의약품 및 화장품	244	247	12.3	7.5	3.4	3.1	18.3	41.0	0	0
기타화학제품	438	445	11.6	7.6	3.2	2.2	19.8	20.5	0	0
석유제품	9	70	9.9	6.2	7.1	2.4	54.5	8.2	0	0
석탄제품	11	12	3.4	3.9	2.1	2.0	5.0	5.1	0	1.0
고무제품	96	96	11.0	7.9	3.5	6.1	13.2	62.9	0	0
플라스틱제품	138	136	12.1	7.9	1.9	1.5	18.0	18.5	0.9	2.9
유리 및 도자기	148	142	13.0	9.0	2.3	6.7	16.0	41.2	0	0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15	15	9.5	7.2	5.0	1.6	13.0	8.2	0	3.9
기타요업 및 토석제품	132	132	11.9	7.4	2.7	1.7	21.0	8.3	1.9	0.1
선철 및 조강	59	62	4.1	3.8	2.6	2.0	10.0	8.2	0	0
철강 1차제품	236	238	9.2	7.1	4.4	1.8	54.5	8.2	0	0
비철금속과 및 1차제품	268	277	8.5	5.3	4.8	2.7	45.7	18.1	0	0
금속제품	360	372	11.2	7.3	3.6	4.1	19.0	75.5	0	0
일반산업용기계	315	318	10.1	6.3	4.9	3.4	30.6	42.8	0	0
특수산업용기계	565	563	11.2	7.2	4.9	1.4	71.9	16.1	0	0.1
컴퓨터 및 사무용기계	64	71	10.7	7.1	3.7	1.7	22.7	9.8	0	0.6
전기기계 및 장치	308	302	10.9	6.5	5.6	3.0	69.7	29.8	0	0
가정용전자 및 전기기기	124	111	11.8	7.8	4.3	9.5	18.8	103.7	0.5	0.1
통신기기	80	84	8.0	5.8	4.4	2.5	14.6	8.2	0	0
전자기기 부분품	113	117	8.9	7.3	3.7	4.8	17.4	46.2	0.1	0.1
정밀기기	425	470	10.3	6.8	3.5	3.2	18.7	50.5	0	0
자동차	109	117	12.6	7.1	5.8	2.8	26.6	10.4	0	0
기타운송기계	110	123	5.2	3.3	5.7	3.3	17.5	10.3	0	0
교역재 전체	8,903	9,198	11.4	8.3	6.3	7.7	71.9	103.7	0	0

註: 교역재 전체의 품목에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 기타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 관세청 전산자료.

<附表 3> IO75 交易財產業 關稅率, 還給率, 實質關稅負擔率의
變化推定

(單位: 億圓, %)

IO75品目	1990					1993				
	關稅 徵收 額	關 稅 率	推定 還給 額	還 給 率	實質 關稅 負擔 率	關稅 徵收 額	關 稅 率	推定 還給 額	還 給 率	實質 關稅 負擔 率
농림수산물	1,319	4.1	296	0.9	3.2	2,168	5.5	394	1.0	4.5
작물	822	4.0	210	1.0	2.9	1,397	5.9	278	1.2	4.7
축산 및 양잠	133	5.8	46	2.0	3.8	150	6.1	70	2.8	3.2
농업 서비스	0	0.0	0	-	-	0	0.0	0	-	-
임산물	185	2.5	20	0.3	2.2	281	2.8	21	0.2	2.5
수산물	179	10.6	19	1.1	9.5	339	11.3	24	0.8	10.5
광산물	2,680	4.1	804	1.2	2.9	1,445	1.3	380	0.3	1.0
석탄	51	1.0	15	0.3	0.7	138	1.0	30	0.2	0.8
원유 및 천연가스	2,449	5.0	733	1.5	3.5	1,078	1.3	270	0.3	1.0
금속광석	87	1.0	35	0.4	0.6	115	1.0	50	0.4	0.6
비금속광물	93	3.5	21	0.8	2.7	114	3.6	30	0.9	2.6
경공업	6,014	9.6	2,911	4.6	5.0	8,282	9.2	2,358	2.6	6.6
육류 및 낙농품	986	8.0	506	4.1	3.9	1,141	9.4	530	4.4	5.0
수인가공품	76	10.0	2	0.3	9.7	165	11.7	6	0.4	11.3
정곡 및 제분	17	5.2	1	0.2	5.0	19	5.4	1	0.3	5.1
제당	98	3.4	23	0.8	2.6	151	5.3	22	0.8	4.5
빵, 과자 및 곡수류	53	13.9	2	0.6	13.3	123	17.1	3	0.4	16.7
기타 식료품	539	13.0	25	0.6	12.4	987	13.0	51	0.7	12.4
음료품	359	37.2	60	6.2	31.0	501	32.8	73	4.8	28.1
담배	0.2	0.0	0	0.0	0.0	0	0	0	0.0	0.0
섬유사	555	9.2	423	7.0	2.2	713	7.8	496	5.4	2.4
섬유직물	917	12.6	595	8.1	4.4	1,136	11.1	527	5.1	5.9
섬유제품	328	13.1	89	3.6	9.6	383	10.0	89	2.3	7.7
의복 및 장신품	91	14.8	2	0.2	14.5	149	9.6	2	0.1	9.5
가죽 및 모피제품	576	9.8	381	6.5	3.3	524	7.4	310	4.3	3.0
목재 및 목제품	563	12.3	40	0.9	11.5	1,203	10.5	86	0.7	9.7
목재가구	30	10.4	0.6	0.2	10.2	52	9.0	0	0.0	9.0
펄프 및 종이	454	4.7	105	1.1	3.6	516	4.7	113	1.0	3.6
인쇄출판	13	2.2	1	0.2	2.0	13	1.4	3	0.3	1.1
기타제조업제품	358	12.1	37	1.3	10.9	507	8.7	47	0.8	7.9

<附表 3>의 繼續

(單位: 億圓, %)

1075品目	1990					1993				
	關稅徵收額	關稅率	推定還給額	還給率	實質關稅負擔率	關稅徵收額	關稅率	推定還給額	還給率	實質關稅負擔率
중공업	25,896	7.8	4,975	1.5	6.3	25,569	5.9	6,872	1.6	4.3
유기화학 기초·중간제품	2,096	8.5	935	3.8	4.7	1,871	7.5	972	3.9	3.6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902	11.5	343	4.4	7.1	798	8.3	348	3.6	4.7
무기화학 및 기초제품	444	9.0	128	2.6	6.4	464	6.9	169	2.5	4.4
화학섬유	144	9.1	82	5.2	3.9	120	7.1	72	4.3	2.8
화학비료 및 농약	39	4.6	2	0.3	4.3	50	4.0	5	0.4	3.5
의약품 및 화장품	407	12.0	34	1.0	11.0	496	8.1	32	0.5	7.5
기타화학제품	1,604	11.1	599	4.2	7.0	1,655	7.6	623	2.9	4.7
석유제품	637	3.2	90	0.5	2.7	593	2.2	189	0.7	1.5
석탄제품	7	4.7	2	1.5	3.2	12	4.9	5	1.9	3.0
고무제품	160	11.4	26	1.8	9.6	152	8.0	37	1.9	6.0
플라스틱제품	401	11.9	101	3.0	8.9	449	8.5	139	2.6	5.8
유리 및 도자기	389	12.8	74	2.4	10.4	393	9.1	105	2.4	6.7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23	1.5	0.5	0.0	1.5	29	5.6	0.5	0.1	5.5
기타 요업 및 토석제품	256	12.3	47	2.3	10.0	182	8.5	44	2.0	6.4
선철 및 조강	191	2.0	75	0.8	1.2	435	2.7	183	1.1	1.6
제강 1차제품	1,234	6.7	263	1.4	5.3	1,109	7.3	151	1.7	5.7
비철금속 및 1차제품	1,169	6.2	353	1.9	4.3	1,251	5.0	467	1.9	3.1
금속제품	599	10.4	64	1.1	9.2	568	7.0	92	1.1	5.9
일반산업용 기계	2,716	10.4	232	0.9	9.5	2,246	6.3	255	0.7	5.6
특수산업용 기계	4,818	10.6	128	0.3	10.3	3,417	6.8	102	0.2	6.5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	972	11.0	191	2.2	8.8	966	8.0	165	1.4	6.7
전기기계 및 장치	1,489	10.3	264	1.8	8.5	1,513	7.0	352	1.6	5.4
가정용전기 및 전자기기	289	8.2	58	1.6	6.5	333	8.8	73	1.9	6.9
통신기기	250	6.5	11	0.3	6.3	412	6.5	28	0.4	6.1
전자기기 부분품	1,965	4.5	708	1.6	2.9	3,186	5.2	798	1.3	3.9
정밀기기	1,641	9.2	92	0.5	8.7	1,666	6.0	124	0.4	5.6
자동차	897	11.2	74	0.9	10.2	1,017	8.9	243	2.1	6.8
기타수송기계	159	0.9	0.7	0.0	0.9	191	0.7	2	0.0	0.7
교역재 전체	35,909	7.3	8,986	1.8	5.5	37,464	5.6	10,004	1.5	4.1

註: 추정환급액은 환급을 신청한 수출기준이며 교역재 중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추정치임.

資料: 張槿鎬·金珍洙, 『관세 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附表 4> 日本의 關稅率構造(1989)

(單位: %)

GATT tariff study 카테고리	法定稅率		實行稅率	
	單 純	加 重	單 純	加 重
01 피혁	12.5	4.6	13.9	4.0
02 고무	2.8	0.7	1.9	0.6
03 목재	5.5	0.5	4.1	0.3
04 펄프, 지 및 판지	3.2	2.1	2.5	0.9
05 섬유	10.3	6.1	9.0	5.1
06 광물성 생산물 및 비료	2.6	2.0	1.9	1.1
07 귀금속	4.4	1.9	3.1	0.8
08 원광 및 금속	4.9	1.5	3.5	1.4
09 석탄 및 천연가스	2.6	0.2	2.2	0.2
10 화학제품	5.2	4.6	4.2	3.8
11 비전기기계	3.7	3.7	1.8	1.4
12 전기기계	3.2	2.6	0.8	0.4
13 수송장비	3.4	2.1	1.6	1.5
14 교습용 또는 실험용 기구, 사진 및 광학기구 및 시계	3.5	2.5	1.6	1.0
15 신발 및 여행용품	24.2	16.5	26.9	15.6
16 사진 및 영사기기	4.1	4.1	3.7	3.8
17 가구	4.7	4.8	3.4	3.6
18 악기, 녹음 및 재생기구	3.5	1.8	1.5	0.8
19 완구류	4.1	2.0	3.2	1.4
20 예술품, 수집품	0.0	0.0	0.0	0.0
21 총기, 탄약, 탱크 및 기타 군수장비	13.3	18.4	9.4	12.0
22 사무용 기구	4.6	4.8	3.6	3.8

<附表 4>의 繼續

(單位: %)

GATT tariff study 카테고리		法定稅率		實行稅率	
		單 純	加 重	單 純	加 重
23	제조용품	5.6	3.9	4.2	3.3
24	식료품	19.5	17.3	16.8	11.7
25	곡 물	9.7	8.2	2.3	0.2
26	동물 및 동물제품	11.2	16.0	8.8	14.8
27	채유종 및 유지제품	4.8	0.4	4.3	0.3
28	채소류, 절화	3.5	1.1	2.9	0.9
29	음료수 및 주류	27.6	25.6	23.7	20.0
30	낙농품	35.5	38.2	25.5	25.7
31	어류, 어패류	8.7	5.9	7.7	5.8
32	담배	27.7	65.1	5.2	0.0
33	기타 축산물	1.2	0.8	0.9	0.2
34	기타 채소류 농산물	3.4	0.8	3.6	0.7
98	전농산물	14.7	13.3	12.1	6.6
98.01	1차산물	6.4	5.8	5.6	3.0
98.02	반가공품	20.8	11.0	19.2	10.6
98.03	가공품	20.7	26.7	16.5	12.6
99	전공산물(석유 제외)	6.7	2.8	5.3	1.9
99.01	원자재(석유 제외)	1.3	0.4	0.9	0.1
99.02	반가공품	6.9	3.3	5.9	2.8
99.03	완제품(석유 제외)	7.1	3.8	5.4	2.4

註: 1. 법정세율은 양허세율에 근거하여 계산하였으며 양허되지 않은 품목은 일반세율에 근거하여 계산하였음.

2. 가중평균은 GSP수혜국을 제외한 MFN대상국으로부터의 1988년 수입에 근거하여 계산하였음.

資料: 大韓貿易振興公社(譯), 『日本の 通商政策』, 1990.

俞鎮守, 『日本の 貿易障壁』,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附表 5> IO75 交易財產業 總內需 輸入依存度 推移

(單位：%)

IO75品目	1980	1985	1990	1993
농림수산물	11.8	11.2	13.0	13.7
작물	10.1	10.9	13.1	12.7
축산 및 양잠	3.6	3.9	3.4	5.4
농업서비스 임산물	0.0	0.0	0.0	0.0
임산물	49.3	38.4	50.7	58.3
수산물	3.2	5.0	8.6	9.5
광산품	70.7	72.5	73.8	79.0
석탄	31.2	52.3	55.9	83.0
석유 및 천연가스	99.8	96.3	99.0	98.3
금속광석	79.0	95.9	85.0	98.5
비금속광물	15.6	19.9	13.8	11.3
경공업	7.0	7.7	10.9	11.8
육류 및 낙농품	11.0	13.3	19.7	15.4
수산가공품	0.2	0.4	6.3	9.3
정곡 및 제분	3.0	0.2	0.8	0.9
제당	53.4	39.0	42.4	40.1
빵, 과자 및 국수류	0.1	0.2	3.0	2.6
기타식료품	6.7	4.6	7.9	9.9
음료품	0.8	1.3	3.7	4.5
담배	0.0	0.0	3.2	4.4
섬유사	6.5	9.6	14.5	18.4
섬유직물	8.0	9.9	16.1	20.9
섬유제품	7.5	6.5	8.4	10.3
의복 및 장신품	0.4	2.5	6.7	7.9
가죽 및 모피제품	17.8	19.8	15.4	19.5
목재 및 나무제품	3.3	9.7	20.3	28.2
목재가구	0.8	3.2	2.3	2.2
펄프 및 종이	22.3	18.9	18.2	15.9
인쇄출판	4.7	3.9	4.2	4.0
기타제조업제품	24.2	18.9	18.0	21.3

<附表 5>의 繼續

(單位: %)

IO75品目	1980	1985	1990	1993
중공업	29.7	26.1	23.1	20.7
유기화학 기초·중간제품	45.0	49.6	44.9	34.3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34.4	30.7	24.4	23.0
무기화학 기초 제품	13.4	24.8	27.8	28.4
화학섬유	5.8	5.9	6.3	7.0
화학비료 및 농약	3.7	10.1	9.0	12.8
의약품 및 화장품	6.3	5.6	7.5	8.2
기타화학제품	36.2	41.8	38.9	38.6
석유제품	11.2	16.8	26.7	18.7
석탄제품	2.3	2.4	0.9	1.8
고무제품	10.2	12.6	10.1	9.6
플라스틱제품	7.7	6.7	7.2	7.2
유리 및 도자기	14.7	22.2	14.5	14.4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0.1	0.1	3.3	0.8
기타 요업 및 토석제품	15.1	15.5	12.0	9.6
선철 및 조강	22.5	11.6	12.9	15.5
철강 1차 제품	16.7	19.8	15.5	9.5
비철금속 괴 및 1차 제품	30.7	34.4	41.0	42.0
금속제품	17.8	15.5	8.4	7.4
일반산업용기계	64.2	34.1	28.8	25.5
특수산업용기계	73.4	53.8	47.4	37.0
컴퓨터 및 사무용기계	83.2	79.8	53.8	36.5
전기기계 및 장치	39.8	37.4	26.8	26.9
가정용 전자 및 전기기기	19.9	13.4	8.2	5.2
통신기기	44.7	34.1	19.3	21.3
전자기기 부분품	50.8	55.6	48.7	49.2
정밀기기	66.0	65.7	59.7	59.1
자동차	13.8	9.9	4.7	4.6
기타 운송기계	68.6	33.1	38.5	5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4	0.7	2.5	4.3
부동산	0.3	0.3	0.1	0.4
사업서비스	1.1	1.6	6.8	10.6
사회 및 개인 서비스	4.1	4.6	5.3	7.0
사회서비스	0.0	0.0	0.0	0.2
기타서비스	1.3	1.0	1.7	4.2
기타	3.2	2.6	2.0	1.9
교역재 전체	21.0	20.3	20.9	20.4
전산업	13.2	12.6	12.9	12.2

註: 총내수 수입의존도 = 수입액 / 국내수요

資料: 한국은행, 「80-85-90년 점속불변산업연관표 작성개요」, 1994.

_____, 「1993년 산업연관표(연장표) 개요」, 1996.

<附表 6> IO75 交易財產業 中間材 輸入依存度 推移

(單位：%)

IO75品目	1980	1985	1990	1993
농림수산물	14.8	15.1	18.3	18.5
작물	12.4	14.6	18.9	18.4
축산 및 양잠	3.7	4.8	3.6	4.8
농업서비스 임산물	0.0	—	—	—
임산물	55.9	45.4	63.0	66.0
수산물	2.2	9.4	13.9	15.6
광산품	71.5	73.1	76.3	79.1
석탄	31.4	49.0	57.3	77.8
석유 및 천연가스	100.0	100.0	100.0	100.0
금속광석	84.4	91.4	97.1	98.0
비금속광물	16.3	20.3	15.9	11.2
경공업	12.6	13.4	15.0	16.9
육류 및 낙농품	51.4	37.2	41.5	31.9
수인가공품	0.1	1.4	9.6	21.4
정곡 및 제분	0.1	1.5	2.3	1.9
제당	67.7	49.6	47.7	43.0
빵, 과자 및 국수류	0.0	0.0	3.1	1.9
기타식료품	9.2	5.1	8.8	12.2
음료품	1.1	2.0	4.4	6.7
담배	0.0	0.0	0.0	0.6
섬유사	6.7	9.4	14.5	18.7
섬유직물	9.3	10.8	16.0	20.9
섬유제품	5.0	13.3	13.8	15.3
의복 및 장신품	1.2	6.9	1.1	3.5
가죽 및 모피제품	39.4	32.8	20.2	28.6
목재 및 나무제품	3.3	9.5	19.8	27.3
목재가구	1.9	2.0	2.7	1.3
펄프 및 종이	21.4	19.4	17.7	16.3
인쇄출판	5.2	3.8	2.0	3.4
기타제조업제품	27.2	24.7	10.9	12.9

<附表 6>의 繼續

(單位: %)

IO75品目	1980	1985	1990	1993
중공업	25.1	24.5	22.4	20.3
유기화학 기초·중간제품	47.8	49.5	44.5	34.0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35.1	30.7	24.5	23.0
무기화학 기초 제품	16.2	26.0	27.2	28.1
화학섬유	5.9	5.6	6.2	7.2
화학비료 및 농약	3.8	10.1	8.9	12.9
의약품 및 화장품	12.3	12.6	14.3	14.4
기타화학제품	40.6	43.1	37.3	37.8
석유제품	11.7	16.6	25.6	19.3
석탄제품	4.9	6.2	1.5	2.2
고무제품	12.2	12.5	9.7	9.4
플라스틱제품	8.9	5.2	6.5	7.1
유리 및 도자기	15.0	21.2	11.9	12.5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0.1	0.1	3.3	0.8
기타 요업 및 토석제품	15.4	15.5	12.1	10.1
선철 및 조강	21.5	10.9	12.5	14.2
철강 1차 제품	17.3	19.9	15.6	9.0
비철금속 피 및 1차 제품	33.0	33.7	40.5	40.6
금속제품	19.0	15.6	8.6	7.6
일반산업용기계	57.8	31.5	27.7	24.9
특수산업용기계	26.4	30.4	23.6	16.2
컴퓨터 및 사무용기계	59.7	66.4	41.5	25.6
전기기계 및 장치	32.1	34.0	25.1	24.4
가정용 전자 및 전기기기	27.3	21.2	16.9	11.5
통신기기	62.2	64.1	47.2	32.1
전자기기 부분품	51.8	55.4	48.8	48.5
정밀기기	63.4	55.3	40.2	40.2
자동차	30.2	19.2	7.5	8.8
기타 운송기계	69.6	46.7	42.0	48.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	1.0	4.6	7.7
부동산	0.5	0.4	0.1	0.1
사업서비스	1.4	1.6	7.2	11.3
사회 및 개인 서비스	11.4	7.7	1.8	3.0
사회서비스	-	-	-	0.0
기타서비스	4.4	5.3	6.2	9.1
기타	8.9	6.5	4.2	4.2
교역재 전체	24.2	23.8	23.4	23.1
전산업	19.7	18.7	17.7	17.2

註: 중간재 수입의존도 = 중간재 수입액 / 중간재 국내수요

資料: 한국은행, 「80-85-90년 집속불변산업연관표 작성개요」, 1994.

_____, 「1993년 산업연관표(연장표) 개요」, 한국은행, 1996.

<附表 7> IO75 交易財産業 消費財 輸入依存度 推移

(單位: %)

IO75品目	1980	1985	1990	1993
농림수산물	3.5	1.9	3.5	4.8
작물	3.6	1.9	2.9	3.6
축산 및 양잠	0.5	0.3	5.7	9.1
농업서비스 임산물	—	—	—	—
임산물	7.3	14.3	12.6	13.5
수산물	3.8	0.7	3.5	6.3
광산물	0.0	0.8	-0.2	-0.3
석탄	—	—	—	—
석유 및 천연가스	—	—	—	—
금속광석	—	—	—	—
비금속광물	0.0	0.8	-0.2	-0.3
경공업	2.5	1.7	5.2	5.9
육류 및 낙농품	1.9	4.9	7.7	7.3
수산가공품	0.2	0.2	5.6	6.8
정곡 및 제분	3.5	0.0	0.4	0.6
제당	0.0	0.0	0.5	0.6
빵, 과자 및 국수류	0.1	0.2	2.9	2.8
기타식료품	4.8	3.3	6.0	7.1
음료품	0.6	0.8	2.5	3.1
담배	0.0	0.0	3.5	4.4
섬유사	3.6	0.1	6.9	8.4
섬유직물	0.6	0.1	5.4	3.0
섬유제품	7.8	1.5	5.3	7.4
의복 및 장신품	0.3	2.2	7.2	8.0
가죽 및 모피제품	0.4	0.9	4.5	5.2
목재 및 나무제품	-5.2	54.5	45.5	34.6
목재가구	0.3	6.9	3.3	3.8
펄프 및 종이	2.9	5.9	47.1	7.3
인쇄출판	3.2	4.0	8.8	5.5
기타제조업제품	16.0	15.2	25.9	30.4

<附表 7>의 繼續

(單位: %)

IO75品目	1980	1985	1990	1993
중공업	3.3	6.7	8.5	6.7
유기화학 기초·중간제품	10.5	-	-	-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0.0	0.0	-	0.0
무기화학 기초 제품	-	-	-	-
화학섬유	-	-	-	-
화학비료 및 농약	0.0	50.5	43.9	62.7
의약품 및 화장품	3.1	0.6	3.1	3.7
기타화학제품	16.6	30.3	77.6	71.0
석유제품	1.6	19.4	31.3	11.9
석탄제품	0.0	0.0	0.0	0.0
고무제품	2.8	10.4	15.6	8.8
플라스틱제품	2.3	15.9	12.2	7.7
유리 및 도자기	4.6	18.2	40.1	30.3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	-	-	-
기타 요업 및 토석제품	1.5	14.2	2.9	0.1
선철 및 조강	0.0	0.0	0.0	0.0
철강 1차 제품	-	-	-	-
비철금속 괴 및 1차 제품	0.0	0.0	0.0	0.0
금속제품	7.2	15.2	9.2	9.6
일반산업용기계	0.0	2.7	4.8	3.3
특수산업용기계	0.8	5.3	19.4	12.3
컴퓨터 및 사무용기계	59.5	36.3	53.2	23.9
전기기계 및 장치	0.3	35.6	34.0	33.5
가정용 전자 및 전기기기	6.1	12.0	6.1	4.1
통신기기	9.3	21.3	17.2	41.0
전자기기 부분품	0.0	0.0	14.4	16.0
정밀기기	21.2	22.2	41.2	31.7
자동차	0.1	0.0	0.7	0.6
기타 운송기계	0.5	0.5	2.3	2.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2	0.4	0.2	0.6
부동산	0.2	0.3	0.1	0.6
사업서비스	0.0	1.3	0.6	1.0
사회 및 개인 서비스	1.5	3.7	6.8	8.8
사회서비스	-	-	-	0.3
기타서비스	0.9	0.5	1.0	3.2
기타	0.6	1.0	1.4	1.1
교역재 전체	2.8	2.6	6.1	6.1
전산업	1.6	1.8	3.5	3.4

註: 소비재 수입의존도 = 소비재 수입액 / 소비재 국내 수요
 資料: 한국은행, 『80-85-90년 계속불변산업연관표 작성개요』, 1994.
 『1993년 산업연관표(연장표) 개요』, 1996.

<附表 8> IO75 交易財産業 投資財 輸入依存度 推移

(單位：%)

IO75品目	1980	1985	1990	1993
농림수산물	7.5	3.2	7.8	3.1
작물	0.0	0.0	0.0	0.0
축산 및 양잠	20.9	5.1	14.6	5.6
농업서비스 임산물	--	--	--	--
임산물	0.5	0.0	3.0	0.0
수산물	--	--	--	--
광산품	--	--	--	--
석탄	--	--	--	--
석유 및 천연가스	--	--	--	--
금속광석	--	--	--	--
비금속광물	--	--	--	--
경공업	10.2	3.4	3.7	7.7
육류 및 낙농품	--	--	--	--
수산가공품	--	--	--	--
정곡 및 제분	--	--	--	--
제당	--	--	--	--
빵, 과자 및 곡수류	--	--	--	--
기타식료품	--	--	--	--
음료품	--	--	--	--
담배	--	--	--	--
섬유사	--	--	--	--
섬유직물	--	--	--	--
섬유제품	32.2	9.6	8.8	8.7
의복 및 장신품	--	--	--	--
가죽 및 모피제품	--	--	--	--
목재 및 나무제품	--	--	--	--
목재가구	0.7	0.1	0.7	0.8
펄프 및 종이	--	--	--	--
인쇄출판	--	--	--	--
기타제조업 제품	20.3	6.3	8.3	28.6

<附表 8>의 繼續

(單位: %)

IO75品目	1980	1985	1990	1993
중공업	60.4	43.8	34.5	30.8
유기화학 기초·중간제품	-	-	-	-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	-	-	-
무기화학 기초 제품	-	-	-	-
화학섬유	-	-	-	-
화학비료 및 농약	-	-	-	-
의약품 및 화장품	-	-	-	-
기타화학제품	-	-	-	-
석유제품	-	-	-	-
석탄제품	-	-	-	-
고무제품	-	-	-	-
플라스틱제품	-	-	-	-
유리 및 도자기	-	-	-	-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	-	-	-
기타 요업 및 토석제품	-	-	-	-
선철 및 조강	0.0	0.0	0.0	0.0
철강 1차 제품	-	-	-	-
비철금속 괴 및 1차 제품	0.0	0.0	0.0	0.0
금속제품	21.6	15.6	6.3	4.4
일반산업용기계	71.5	42.8	33.0	29.0
특수산업용기계	79.6	60.4	55.0	44.8
컴퓨터 및 사무용기계	92.7	89.2	59.6	43.1
전기기계 및 장치	64.1	56.0	35.3	46.2
가정용 전자 및 전기기기	24.5	13.0	7.0	3.7
통신기기	37.1	22.1	10.5	15.7
전자기기 부분품	-	-	-	-
정밀기기	69.0	82.6	89.3	85.1
자동차	5.0	3.8	4.3	1.5
기타 운송기계	72.6	28.2	39.0	57.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	0.0	0.0	0.0
부동산	0.0	0.0	0.0	0.0
사업서비스	-	-	-	-
사회 및 개인 서비스	-	-	-	-
사회서비스	-	-	-	-
기타서비스	-	-	-	-
기타	0.0	0.0	0.0	0.0
교역재 전체	58.1	41.5	33.5	29.7
전산업	19.3	14.0	12.0	10.3

註: 투자재 수입의존도 = 투자재 수입액 / 투자재 국내수요
 資料: 한국은행, 『80-85-90년 계속불변산업연관표 작성개요』, 1994.
 『1993년 산업연관표(연장표) 개요』, 1996.

<국문요약>

열린 時代의 關稅率政策： 輸入構造의 變化와 우리나라 關稅率體系의 評價

張 槿 鎬

지난 1983년 이후 정부는 關稅率引下豫示制를 시행하였고 均等關稅率體制를 정립한 바 있다. 앞으로는 UR협약이 特定的인 補助金政策을 금지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가 '例外 없는 關稅化'로 이행될 예정이어서 산업정책으로서의 관세정책은 그 중요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관세정책은 市場失敗를 조정하는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서 여타의 정책에 비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關稅率引下豫示制가 終了된 1994년 우리나라 平均 名目關稅率은 7.9%로 수렴되어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중공업에서는 실행관세율이 상당히 하락하였고 관세율의 산업별 격차도 감소하였다. 다만 수입급증으로 경공업 평균관세율은 8.8%에 달하며 산업간 관세율의 標準偏差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加重平均과 單純平均 關稅率의 隔差도 감소하여 加工度別 關稅率 隔差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된 實效關稅率에 따르면 輕工業에서는 實質的 保護가 높거나 아니면 5% 이하이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兩極化 現象을 보였고 중공업의 경우 대체로 均등관세율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고 산업간 실효관세율도 10% 내로 수렴하였다. 중간재와 완제품 사이에는 관세율격차가 없으며 지난 1980년과 1993년 사이에 중공업 中間材와 投資財의 輸入依存도가 상당히 하락하였고 消費財와 輕工業 中間材의 수입의존도는 상승하였다.

올바른 정책이란 제한된 국내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며 사양산업이나 소비재산업에 대한 보호는 성장산업에 대한 '相對的 被害'를 의미한다. 따라서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추구하는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과 수입자유화를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는 올바른 정책이었다. 왜냐하면 기술집약적인 중간재산업과 완제품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前提條件이기 때문이다.

<Abstract >

Tariff Policy in Open Era: Changes in Import Composition and the Evaluation of Tariff Structure in Korea

Chang, Keunho

In 1983, the Korean government initiated two tariff reduction schedules in which annual reductions in average tariff rate are announced and a switch to an uniform tariff rate system are adopted. Tariff policy as an instrument of industrial policy is likely to maintain its importance in WTO era because, as a result of the UR, specific subsidies were prohibited and import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are to be 'tariffication without exception'. However, the tariff policy, unlike other policies aiming at correcting market failures, causes an inevitable distortion in resource allocation and this must be remembered.

After tariff reduction schedules were completed, the average tariff rate was reduced to a mere 7.9% in 1994 which is comparable with average tariff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In heavy manufacturing industries, applied tariff rate was fallen sharply and tariff gaps among different products were also closed. However, due to import surges, the average tariff rate in light industry maintained a relatively high level of 8.8% and tariff differences showed widening tendencies. But overall, tariff gaps of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 seemed to be tightene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ifference be-

tween weighted and simple average tariff rates were reduced.

According to the estimated 1994 effective tariff rates, there existed a polarization of effective protection in light industry where, for some sector, protection is strong while, for others, negative protection is revealed. In heavy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application of uniform tariff system underwent smoothly, bringing about 10 % or less effective rates regardless of industry type. There existed not much discernible tariff difference between intermediate and final product. This, in turn, seemed to have led to substantial decreases in the import dependence of intermediate product as well as that of investment goods during the period from 1980 to 1993, although, for the same period, the import dependence of consumer goods and intermediate product in light industry had increased.

An optimal policy dictates efficient uses of limited resources. Thus,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dustry and/or declining industry necessarily implies a 'relative harm' to competitive industries. In this sense, tariff reduction policy with harmonizing tariff rates which aimed at achieving the market resources allocation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through import liberalization was appropriate policy for the look an economy. It is because the balanced growth of technology-intensive intermediate product industry and finished product industry is a minimum requirement for achieving a developed economy.